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020.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sf.go.kr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020.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세원을 넓히고 과세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함
 - 과거 현금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탈세 등은 우리나라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는 공정 경제를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진작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투명한 현금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유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사업자,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함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분석, 조세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함

- **(동 제도의 개요)** 본 제도는 현금을 통한 B2C(Business To Customer) 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를 뒷받침하고자 200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신설된 제도이며, 시범 운영 등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됨
 - (현금영수증사업자) 결제정보처리 수수료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설치비 등 운영비용 보전을 통한 현금영수증제도 정착
 - (현금영수증가맹점)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비용 보전

- 현금영수증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에서 동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통해 제도의 개편 혹은 일몰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도의 전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계량 모형(기초통계분석, 이중차분모형, 사건분석)을 토대로 제도 변화의 효과를 추정하였고,

- 기존 문헌분석과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른 편익과 비용에 대한 추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소득이 포착되고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입 증가로 이어짐(과세표준의 양성화 효과)
 -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한 편익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입규모로 정의할 수 있음
 - 비용은 동 제도와 관련된 조세지출로 정의함
 1. 동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조세지출금액
 2. 동 제도에 의해 파생되는 조세지출로서, 동 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제도(「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금액임
 - 엄밀하게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행정비용, 납세협력 비용 등도 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만, 자료의 한계 등을 이유로 본고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함
- 편익 추정에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재정패널조사는 2008년 시작되어 현재 2017년까지 자료가 공개되어 있음
 - 재정패널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자세히 조사되었기 때문임
 - 재정패널조사는 현금영수증 사용 지출규모는 물론 신용카드 등의 지출규모 등도 조사하고 있어서, 동 제도의 직접적인 편익 추정과 간접적인 편익 추정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집계된 자료가 아닌 개별 미시자료라는 점은 실제 개인의 미시적 행동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비용 추정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사용하였으며, 조세지출 규모는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국세통계연보는 앞선 기초통계분석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그리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추정에 참고하기 위해 활용함

□ **(비용-편익 분석)** 추정된 편익과 비용을 토대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함

- 편익 추정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을 두 가지(10.2%, 14.5%)로 나누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두 가지의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제시함
- 연도별 편익과 비용 추정치를 비교하면, 1원의 조세지출은 2009년 약 1.63원에서 1.95원의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며, 2010년은 1.76~2.10원, 2011년은 1.62~1.94원, 2014년은 1.12~1.34원, 2017년은 1.56~1.86원으로 평가됨
- 이는 동 제도가 비용 대비 편익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량화된 수치로 평가했을 때 조세지출 규모 대비 평균적으로 더 큰 편익을 가져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중차분모형 분석)** 신용카드 거래건수와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 비교를 통한 분석과,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 거래와 5천~1만원의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 비교를 통한 분석을 시도함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 비교를 통한 이중차분모형 분석결과,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거래건당 지원 단가의 조정이 있었던 2013년, 2017년, 2018년에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는 제도의 변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조세지원 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금영수증 거래건수에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함
 - 따라서 조세지원 단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의미이며, 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온 이유의 추가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조세지원 규모의 변화가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한 결론으로 판단됨

-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 거래와 5천~1만원의 현금영수증 거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 2013년 제도 개편 이후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과 2018년의 제도 개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제도지원의 감소가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해 줌

□ (사건분석을 통한 강건성 검토)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강건성(robustness) 검토를 추가함

- 분석결과 조세지원 단가 변경이 있기 전에는 거래금액이 유의미하게 작은 경향이 있었으며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분석의 핵심은 조세지원 단가 변경이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인데, 효과의 추세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조세지원 정책이 현금영수증 거래금액 및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강건성 검토는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첫 번째, 동 제도의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거래가 이미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규모의 미세한 변화는 현금영수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
 -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동 제도의 도입은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에 상당히 많은 부분 기여했음을 추측해볼 수 있음
 - 두 번째, 추후 정책 시사점과 관련하여, 동 제도와 관련한 조세지출 규모의 축소 혹은 변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음
 - 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을 증가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편익 증가의 여력이 크지 않다면, 조세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타당성 분석) 현금영수증제도는 정착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정착 이후에는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표 양성화와 세수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함

-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동 조세특례제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소액거래에 대한 건당 공제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잘 정착되어 원활하게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 장기적으로는 소액거래에 대한 지원방식을 조정하거나, 유인이 적은 원인을 파악하여 추후 제도 이용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건당 공제방식은 적절하나, 건당 공제금액은 지속적인 원가 하락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재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조정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제도 개선방안)**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개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건당 지원 단가의 감소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음
- 추정결과, 단가 조정이 종이 발급의 경우 9.25원까지 하락하여도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정확한 원가 산정이 요구됨
- 또한 제도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으로는 우선적으로 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다만, 기타 비슷한 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할 수 있고,
 - 현재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 기존에 있었던 일몰기한을 다시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함으로써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추후 제도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제도의 효과가 높게 평가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액 현금영수증 기준금액 상한 설정 등의 여부는 일몰기한에 따른 효과성 평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 차

I. 서론	13
II.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현황	17
1. 동 제도 및 현금영수증 관련 개요	19
2. 현황 및 기초통계	28
III. 효과성 평가	37
1.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한 효과성 평가	39
2. 기초통계분석 및 이중차분모형 분석을 이용한 효과성 평가	58
3. 소결	72
IV. 타당성 분석	75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77
가. 정책 목적의 적절성	77
나. 정부 개입의 적절성	79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80
가. 현금영수증사업자	80
나. 현금영수증가맹점	82
3. 정책수단(지원방식)의 적절성	87
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 과정	87
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운영실적	90
다. 기초통계자료를 통한 정책 목표 달성 현황 파악	93
라. 요소별 정책 운영방식의 적절성	99
마. 정책수단의 적절성 종합	107

4. 유사 중복 제도	107
5. 소결	110
V. 제도 개선방안	113
VI. 결론	127
참고문헌	131
부 록	133

표 목 차

<표 II-1>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용어 설명	20
<표 II-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20
<표 II-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21
<표 II-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2
<표 II-5>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가맹점 비교	24
<표 II-6>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 변경사항	26
<표 II-7> 본 제도의 변천 과정	27
<표 II-8> 본 제도의 연도별 조세지출금액	28
<표 II-9> 업태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29
<표 II-10>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31
<표 II-11> 업태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32
<표 II-12>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현황	33
<표 II-13>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건수	35
<표 II-14>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금액	36
<표 III-1>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도별 과세표준 양성화 및 추가 소득세 세입 추정	41
<표 III-2>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도별 과세표준 양성화 및 추가 소득세 세입 추정	44
<표 III-3> 본 제도의 연도별 조세지출금액	46
<표 III-4> 신용카드 등 사용 관련 조세지출금액	47
<표 III-5> 비용 추정	49
<표 III-6> 연도별 소득공제 관련 조세지출금액 추정치	50
<표 III-7> 연도별 소득공제 관련 조세지출금액 추정치(정리)	53
<표 III-8>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세지출금액 추정	54
<표 III-9> 연도별 직접적·간접적 조세지출금액 추정치	55

<표 III-10> 비용-편익 분석	57
<표 III-11>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건수, 금액	60
<표 III-12> 제도 단가 변화가 거래금액에 미치는 영향	61
<표 III-13> 제도 단가 변화가 거래건수에 미치는 영향	62
<표 III-14> 제도 단가 변화가 거래건수에 미치는 영향	62
<표 III-15>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건수	64
<표 III-16>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금액	64
<표 III-17> 현금영수증제도 변화의 소액거래건수 효과	65
<표 III-18> 현금영수증제도 변화의 소액거래금액 효과	66
<표 III-19> 현금영수증제도 변화의 소액거래건수 효과	67
<표 III-20> 현금영수증제도 변화의 소액거래금액 효과	67
<표 III-21> 업태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68
<표 III-22> 소매업 및 병의원 가맹점수 효과	69
<표 III-23> 소매업 및 학원 가맹점수 효과	70
<표 IV-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현황	91
<표 IV-2> 납세자 유형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개인)	92
<표 IV-3> 납세자 유형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법인)	92
<표 IV-4>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	94
<표 IV-5>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	95
<표 IV-6> 부가가치세 징수실적	96
<표 IV-7> 과세인원 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추세	98
<표 IV-8> 계정분류분석법에 따라 산출된 건당 원가	103
<표 IV-9> 평균 사업비용의 증감(POS와 VAN)	106
<표 V-1> 현금영수증 건당 원가	116
<표 V-2> 현금영수증 실제 처리건수(POS와 VAN) 및 건당 원가	117
<표 V-3>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공제제도 인지 여부	123
<표 V-4>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공제제도 미인지 이유	124
<표 V-5>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및 조세지출 규모	125

그림 목 차

[그림 II-1] 현금영수증가맹점 추세	29
[그림 II-2]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평균 발급금액 추이	30
[그림 II-3]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건수기준)	34
[그림 II-4]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금액기준)	34
[그림 III-1] 비용-편익 추이	57
[그림 III-2] 거래금액 추이 비교	60
[그림 III-3] 거래건수 추이 비교	60
[그림 III-4] 소액현금영수증 거래건수	65
[그림 III-5] 소액현금영수증 거래금액	65
[그림 III-6] 소액현금영수증 거래건수	66
[그림 III-7] 소액현금영수증 거래금액	66
[그림 III-8] 소매업 및 병의원 가맹점	69
[그림 III-9] 소매업 및 학원 가맹점	69
[그림 III-10] 거래금액 효과 추이	71
[그림 III-11] 거래건수 효과 추이	71
[그림 IV-1] 현금결제 흐름도	81
[그림 IV-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비중	91
[그림 IV-3] 납세자 유형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비중	93
[그림 IV-4]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이	96
[그림 IV-5] 부가가치세 징수실적 추이	97
[그림 IV-6] 과세인원 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추세	97
[그림 IV-7] 연도별 실제 가동률(실제 처리건수/최대 처리 가능건수)	104
[그림 IV-8] 연도별 처리 가능건수	105
[그림 IV-9] 연도별 실제 처리건수	105
[그림 IV-10] 원가 항목별 추이	105

I. 서론



I. 서론

-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세원을 넓히고 과세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함
 - 과거 현금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탈세 등은 우리나라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는 공정 경제를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진작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투명한 현금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유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사업자,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함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분석, 조세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함

-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함께 동 제도 및 기타 유사 제도의 시행으로 과표 양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여러 제도를 운영해옴
 -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사업자, 가맹점은 물론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옴
 - 동 제도 외에 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있는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음

- 동 제도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으로 2005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으로 2008년에 각각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옴

-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조세지원 단가는 종이 발급 기준 2005년 22원, 2013년 18.7원, 2017년 17원, 2018년 12.5원 2019년 9.4원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 종이 미발급의 경우, 2005년 15.4원, 2013년 13.2원, 2017년 12.6원, 2018년 11.5원, 2019년 8.4원으로 꾸준히 감소함
 -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지원은 일몰 없이 진행되어 옴
 -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으로는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20원을 지원해 주며,
 - 2008년 도입 이후 2010년 말에 일몰이 예정되었으나, 2013년까지 1회 연장 이후 2020년 현재 일몰이 폐지된 상황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조세지원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현금영수증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과표를 양성화시키고 세원을 넓히기 위함임
- 따라서 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추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에서 동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통해 제도의 개편 혹은 일몰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도의 전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계량 모형(기초통계분석, 이중차분모형, 사건분석)을 토대로 제도 변화의 효과를 추정하였고,
 - 기존 문헌분석과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동 제도의 개요 및 현황을 기초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 제Ⅲ장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검토하고,
 - 제Ⅳ장에서는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 제Ⅴ장에서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 제Ⅵ장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함

Ⅱ.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현황



II.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현황

1. 동 제도 및 현금영수증 관련 개요

- **(동 제도의 개요)** 본 제도는 현금을 통한 B2C(Business To Customer) 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를 뒷받침하고자 200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신설된 제도이며, 시범 운영 등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됨
 - (현금영수증사업자) 결제정보처리 수수료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설치비 등 운영비용 보전을 통한 현금영수증제도 정착
 - (현금영수증가맹점)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비용 보전

-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에게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 등의 제출을 통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사업자를 말함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함
 - 이러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현금거래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용어는 <표 II-1>에 정리함

<표 II -1>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용어 설명

용어	설명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Idx=1003000000&tm3Idx=1003000000, 검색일자: 2020. 5. 28.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 이후 1회 발행 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였으나 현재는 과태료 대신 가산세를 적용하여 제재를 완화함

<표 II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내용
2010. 4.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신설
2014. 7. 1.	의무발행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원 → 10만원)
2014. 7. 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원 → 100만원, 연간 1,500만원 → 500만원)
2016. 1. 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원 → 50만원, 연간 500만원 → 200만원)
2019. 1. 1.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 1. 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보도자료, 2019. 12. 19.

-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는 소비자 상대 사업장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금융결제원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현금구매내역을 자동정산·취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법이 정한 부가세 공제혜택을 부여함

-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도 함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는 경우
 - 물품 구입비: 농축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 서비스비: 자동차 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 회계서비스 등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승용차 구입비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10년 4월 1일부터 지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초기에는 32개의 업종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시행했으나, 이후 업종이 추가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 기준 총 45개의 업종이 새로 추가됨
 - 도입 초기 업종을 보면 변호사, 회계사, 병원, 학원 등 고소득 업종을 위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유흥주점, 숙박업, 미용업, 운송업, 여러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들로 확대됨

〈표 II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종
2010. 4. 1.	32개 업종 신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음식점,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 7. 1.	4개 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 1. 1.	12개 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표 II -3〉의 계속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종
2015. 6. 2.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 7. 1.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 7. 1.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 1. 1.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 1. 1.	8개 업종 추가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 1. 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보도자료, 2019. 12. 19.

-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¹⁾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거래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표 II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 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1)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 1. 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보도자료, 2019. 12. 19.

<표 II -4>의 계속

구분	업종
3.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 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주: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다만,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2020. 2. 11. 개정)

-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표 II-4>와 같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업종이 추가되어 운용됨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함)이 추가됨
 - 그 밖의 업종에서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이 추가됨
 - 업종 구분에서 통신판매업이 추가되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함)이 추가됨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가맹점은 가입 대상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의무발행 기준금액인 10만원 미만일 경우 대부분 유사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으며, 가입 대상 및 기준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가맹점에 대한 제재가 더 추가됨

<표 II -5>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전문직·병의원 전체 • 기타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발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 의무 - (10만원 미만)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 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원 이상) 2019. 1. 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신고 포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거부 금액 × 20% <p>(지급한도)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급금액×20%(10만원 미만 거래 시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적용)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 1. 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보도자료, 2019. 12. 19.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국세청은 2007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를 도입함
 -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완전히 정착되고 사업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소비자가 추후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것을 당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주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짐
 - 가맹점 입장에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자진발급하면 소비자와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임
 - 학원·중개업소 등과 같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지 않고 당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함

- 제도 도입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에 도입되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2010년 2월 18일, 「소득세법」에는 2012년 1월 1일 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이 신설되어 운용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포함됨

- (동 제도) 본격적으로 동 과세특례 제도와 관련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된 변화는 <표 II-7>에 정리함

- 대부분의 변화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지원 단가 조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 거래건당 20원의 공제 혜택은 현재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어 있음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현금영수증 결제건당 12원을 기준으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함)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 (국세청고시 제2019-23호, 2019. 6. 12.) 종이 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 종이 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

〈표 II -6〉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 변경사항

연도	발급장치 설치건수	결제건수	
		종이 발급	종이 미발급
2005. 1.~2013. 6.	17,500원	22.0원	15.4원
2013. 7.~2017. 6.	17,500원	18.7원	13.2원
2017. 6.~2018. 3.	15,000원	17원	12.6원
2018. 4.~2019. 6.	삭제	12.5원	11.5원
2019. 7.~	삭제	9.4원	8.4원

-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세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여 현금영수증(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산출세액 한도)
- **(최저한세 적용)**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됨

〈표 II -7〉 본 제도의 변천 과정

별 개정	2003. 12. 30.	2006. 12. 30.	2007. 12. 31.	2008. 12. 26.	2010. 12. 27.	2013. 2. 28.	2014. 1. 1.	2017. 6. 12.	2018. 2. 13.
지원 대상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 추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현금영수증 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승인	좌동	좌동	국세청장이 승인 * 위원회 해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수혜요건	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②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좌동	③ 현금영수증 발급 * 5천원 미만 (전화망 승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건당 5,000원 이상	좌동	건당 1원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과세혜택	① 발급장치 설치 : 1건당 15,000원 (± 30%) ② 결제내역 전송 : 1건당 22원 (± 30%)	② 지급조서 결제도 현금영수증 결제와 동일한 과세혜택 제공	③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 건당 20원	명칭 변경 : 지급조서 → 지급명세서	좌동	② 1건당 18원 (± 30%)	좌동	좌동	② 1건당 12원 (± 30%)
공제 단가	① 17,500원 ② 오프라인 발급 : 22.0원 온라인 발급 : 15.4원	좌동	① 17,500원 ② 오프라인 발급 : 22.0원 온라인 발급 : 15.4원 ③ 20원	좌동	좌동	① 17,500원 ② 오프라인 : 18.7원 온라인 : 13.2원 * 자진(무기명) 포함 ③ 20원	좌동	① 15,000원 ② 오프라인 : 17원 온라인 : 12.6원 * 자진(무기명) 포함 ③ 20원	② 오프라인 : 9.4원 ¹⁾ 온라인 : 8.4원 ²⁾ * 자진(무기명) 포함 ③ 20원
일몰	-	-	가맹점: 2010년 말	좌동	2013년 말	-	삭제	-	-

주: 1)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2) 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26-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3 및 국세청고시의 연혁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태석 외(2017), p. 43 <표 I-4>를 참고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행정규칙/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2019-23,20190612\)](http://www.law.go.kr/행정규칙/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2019-23,20190612)), 검색일자: 2020. 5. 27.

2. 현황 및 기초통계

□ 본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표 II-8>과 같음

- 조세지출 규모는 2009년 1,191억원에서 2020년 561억원으로 50% 이상 줄었음
- 조세지출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조세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90% 이상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소득세 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약 0.3억원, 2015년에는 17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2017년에는 약 67억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약 48억원으로 추정됨
- 따라서 대부분의 조세지출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4년까지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표 II-8> 본 제도의 연도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09 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²⁾ (p)	2020 ²⁾ (p)
소득세	0.0	0.3	0.0	0.0	0.3	0.1	17.0	37.0	67	50	46	48
부가 가치세	1,191.0	924	1,085.0	1,121.0	999.0	676.0	655.0	699.0	660	563	493	513
소계	1,191.0	924.3	1,085.0	1,121.0	999.3	676.1	672.0	736.0	727	613	539	561

주: 1) 2009년 소득세 조세지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조세지출금액 구분의 오류가 확인되어 『조세지출 예산서』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값을 서로 바꿈

2) 2019년과 2020년은 전망값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은 <표 II-9>와 같음

- 업태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은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2018년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수는 330만명을 넘었으며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에 따라 증가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II-1]은 대표적인 업종인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에 대한 추세와 전체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의 추세임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증가는 이들 업종에서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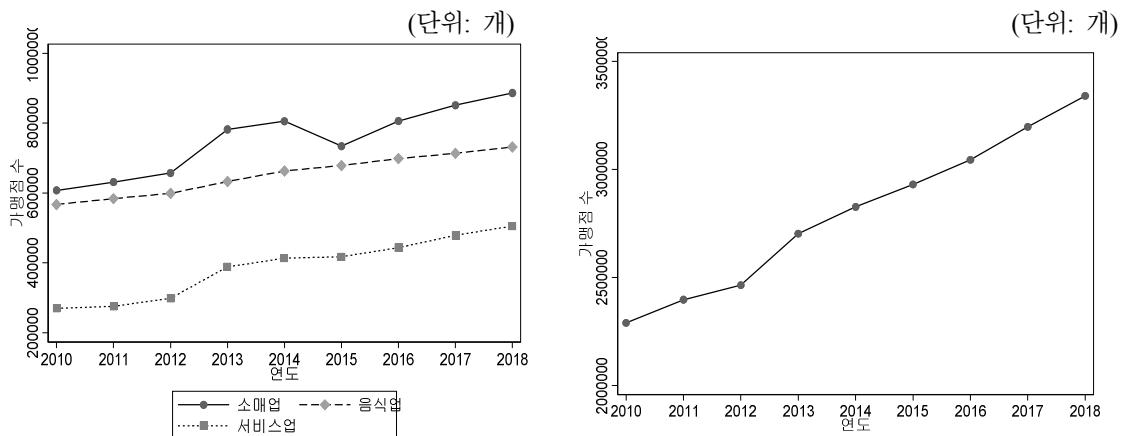
<표 II -9> 업태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단위: 명)

가맹점 업태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매업	607,633	631,336	657,229	781,971	805,515	734,063	805,918	851,188	886,211
음식업	567,133	583,922	599,019	632,974	663,057	678,628	698,422	713,645	731,484
숙박업	25,949	27,174	28,728	38,478	40,963	42,611	44,387	46,801	48,437
병의원	59,470	60,943	62,107	64,754	66,524	68,051	69,635	71,178	72,439
학원	102,725	107,165	109,768	127,056	130,166	131,988	136,993	144,219	151,444
전문직	32,285	36,939	36,054	43,217	65,797	69,471	49,173	51,753	53,354
서비스업	269,730	275,634	298,642	388,698	413,435	417,676	443,462	479,053	505,471
기타	625,305	674,727	673,327	625,781	641,550	788,705	796,771	839,473	891,859
총합	2,290,230	2,397,840	2,464,874	2,702,929	2,827,007	2,931,193	3,044,761	3,197,310	3,340,699

자료: 통계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1] 현금영수증가맹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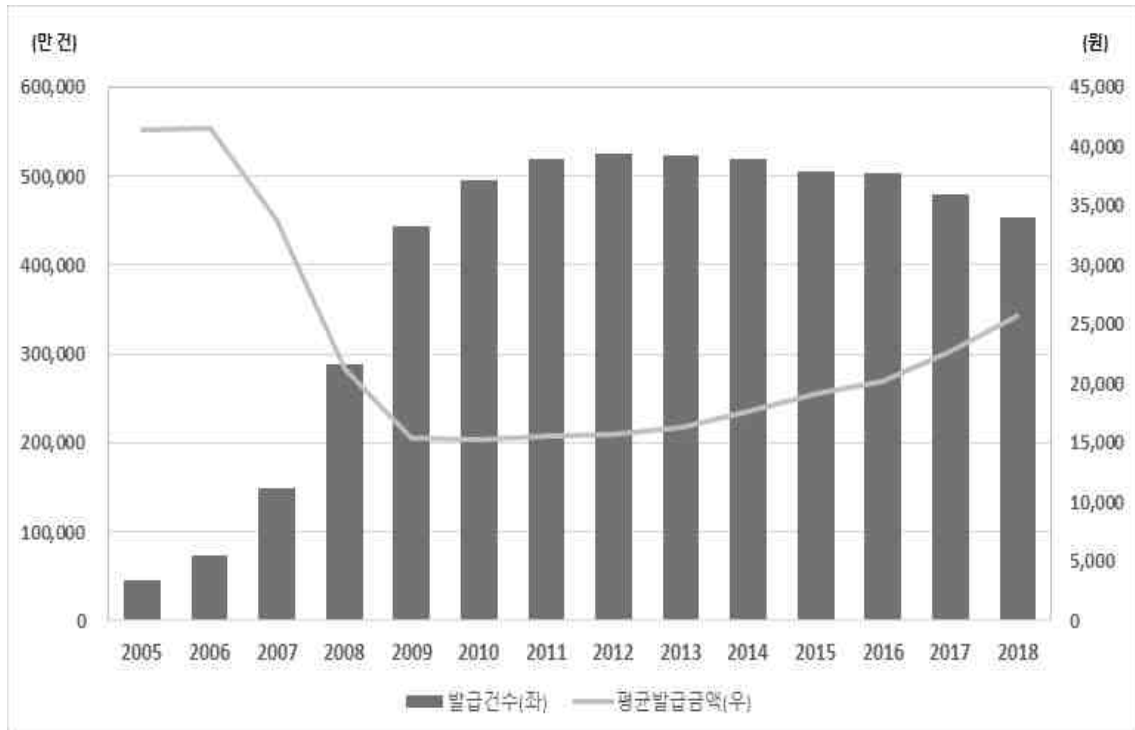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평균 발급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2] 및 <표 II-10>과 같음

- 현금영수증 발급은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주춤하였으며 최근에는 발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감소하는 이유는 2010년 이후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는 거래가 증가한 것을 한 이유로 들 수 있음
- 발급건수는 감소하지만, 현금영수증 평균 발급금액의 규모는 2009년 이후 근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발행건수는 2010년까지 61% 증가율을 보인 반면,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2.1% 증가에 그침

[그림 II -2]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평균 발급금액 추이

(단위: 만건,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10>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

연도	건수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전당 금액
2005	448,936	-	18,559,848	-	41,342
2006	737,748	64.3	30,626,609	65.0	41,514
2007	1,489,273	101.9	50,256,147	64.1	33,745
2008	2,889,925	94.0	61,555,892	22.5	21,300
2009	4,441,966	53.7	68,698,365	11.6	15,466
2010	4,951,522	11.5	75,956,526	10.6	15,340
2011	5,187,350	4.8	80,890,098	6.5	15,594
2012	5,257,101	1.3	82,388,996	1.9	15,672
2013	5,227,216	-0.6	85,515,208	3.8	16,360
2014	5,192,920	-0.7	91,946,468	7.5	17,706
2015	5,045,846	-2.8	96,546,379	5.0	19,134
2016	5,024,664	-0.40	101,257,671	4.90	20,152
2017	4,792,949	-4.60	108,655,286	7.30	22,670
2018	4,530,850	-5.50	116,463,906	7.20	25,705
연평균 증가율 (2005~2010)		61.6		32.6	-
연평균 증가율 (2010~2015)		2.1		4.9	-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 p. 60 <표 IV-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업태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1>과 같음

- 주요 업태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분포를 살펴보면 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비중이 50%를 넘어 가장 많이 차지함
- 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가맹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는 기타 업종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됨
- <표 II-10>에서도 살펴봤듯이 현금영수증가맹점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거래건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더 증가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II -11> 업태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가입자수	소매업	음식· 숙박업	병의원	학원	전문직	서비스업	기타
2005	1,144,193	317,503	403,924	-	-	-	206,800	215,966
	(100.0)	(27.7)	(35.3)	-	-	-	(18.1)	(18.9)
2006	1,401,111	389,870	454,137	-	-	-	321,925	235,179
	(100.0)	(27.8)	(32.4)	-	-	-	(23.0)	(16.8)
2007	1,725,485	496,110	509,101	-	-	-	393,450	326,824
	(100.0)	(28.8)	(29.5)	-	-	-	(22.8)	(18.9)
2008	1,918,681	538,496	543,191	-	-	-	447,927	389,067
	(100.0)	(28.1)	(28.3)	-	-	-	(23.3)	(20.3)
2009	2,118,586	571,703	571,126	58,017	96,876	29,275	257,038	534,551
	(100.0)	(27.0)	(27.0)	(2.7)	(4.6)	(1.4)	(12.1)	(25.2)
2010	2,290,230	607,633	593,082	59,470	102,725	32,285	269,730	625,305
	(100.0)	(26.5)	(25.9)	(2.6)	(4.5)	(1.4)	(11.8)	(27.3)
2011	2,397,840	631,336	611,096	60,943	107,165	36,939	275,634	674,727
	(100.0)	(26.3)	(25.5)	(2.5)	(4.5)	(1.5)	(11.5)	(28.1)
2012	2,464,874	657,229	627,747	62,107	109,768	36,054	298,642	673,327
	(100.0)	(26.7)	(25.5)	(2.5)	(4.5)	(1.5)	(12.1)	(27.3)
2013	2,702,929	781,971	671,452	64,754	127,056	43,217	388,698	625,781
	(100.0)	(28.9)	(24.8)	(2.4)	(4.7)	(1.6)	(14.4)	(23.2)
2014	2,827,007	805,515	704,020	66,524	130,166	65,797	413,435	641,550
	(100.0)	(28.5)	(24.9)	(2.4)	(4.6)	(2.3)	(14.6)	(22.7)
2015	2,931,193	734,063	721,239	68,051	131,988	69,471	417,676	788,705
	(100.0)	(25.0)	(24.6)	(2.3)	(4.5)	(2.4)	(14.2)	(26.9)
2016	3,044,761	805,918	742,809	69,635	136,993	49,173	443,462	796,771
	(100.0)	(26.5)	(24.4)	(2.3)	(4.5)	(1.6)	(14.6)	(26.2)
2017	3,197,310	851,188	760,446	71,178	144,219	51,753	479,053	839,473
	(100.0)	(26.6)	(23.8)	(2.2)	(4.5)	(1.6)	(15.0)	(26.3)
2018	3,340,699	886,211	779,921	72,439	151,444	53,354	505,471	891,859
	(100.0)	(26.5)	(23.3)	(2.2)	(4.5)	(1.6)	(15.1)	(26.7)

주: 1. () 안은 비중

2. '-'은 통계생산 없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살펴보면 <표 II-12> 및 [그림 II-3]과 같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음. 2010년에서 2018년 동안 발급금액은 총 75조원에서 116조원으로 약 54%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6%임
 - 2010년에서 2018년 동안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업태는 숙박업으로 2010년 4,716억원에서 2018년 2조 4천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함
 - 다음으로 큰 증가폭을 보인 업태는 서비스업 분야로 2010년 3조 8천억원에서 2018년 10조 7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함
 -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발급금액 증가율은 2014년에 가장 높았는데(약 7.5%), 이는 2014년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조치로 인한 것으로 해석됨

<표 II - 12>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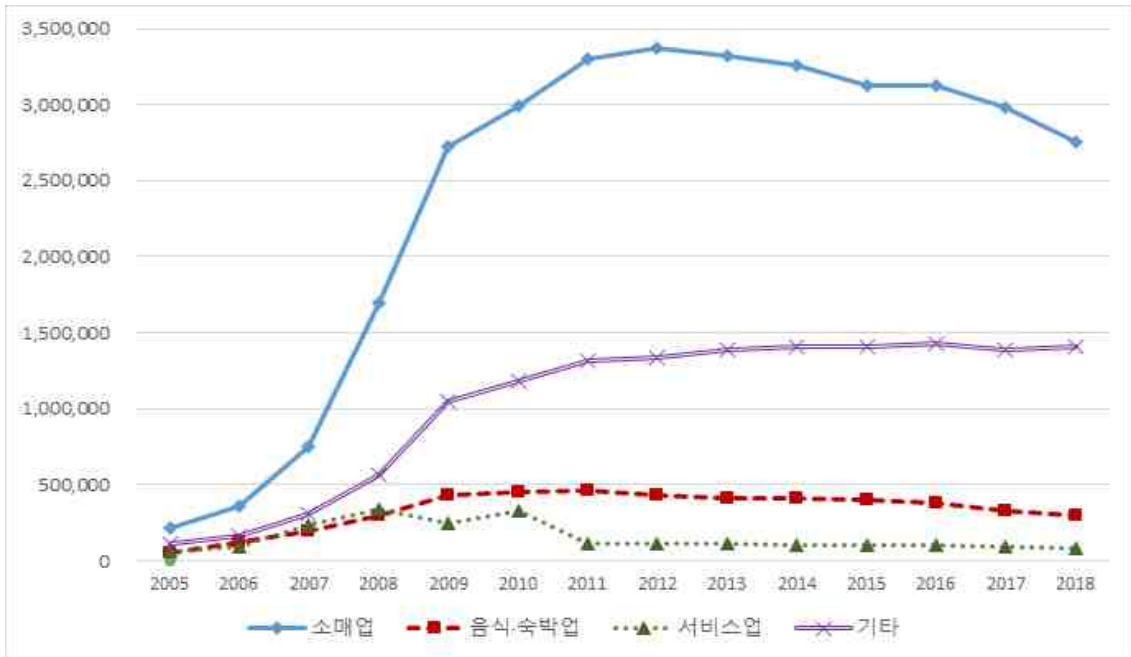
(단위: 억원)

가맹점 업태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매업	300,821	323,600	324,571	322,199	328,963	340,854	349,360	384,567	418,860
음식업	75,276	75,983	75,370	72,644	75,571	75,081	71,911	67,087	65,519
숙박업	4,716	7,156	7,161	7,433	9,169	9,176	11,198	20,034	24,021
병의원	51,952	49,476	50,959	56,162	61,837	63,151	65,391	66,089	66,689
학원	16,743	17,592	19,228	20,016	21,571	24,481	26,499	27,497	28,778
전문직	21,527	25,099	25,977	26,289	27,162	32,071	38,879	38,830	40,387
서비스업	38,614	49,681	50,727	54,497	61,776	84,321	94,694	113,574	107,404
기타	249,916	260,314	269,898	295,913	333,416	336,330	354,644	368,876	412,981
총합	759,565	808,901	823,890	855,152	919,465	965,464	1,012,577	1,086,553	1,164,639

자료: 통계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 -3]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건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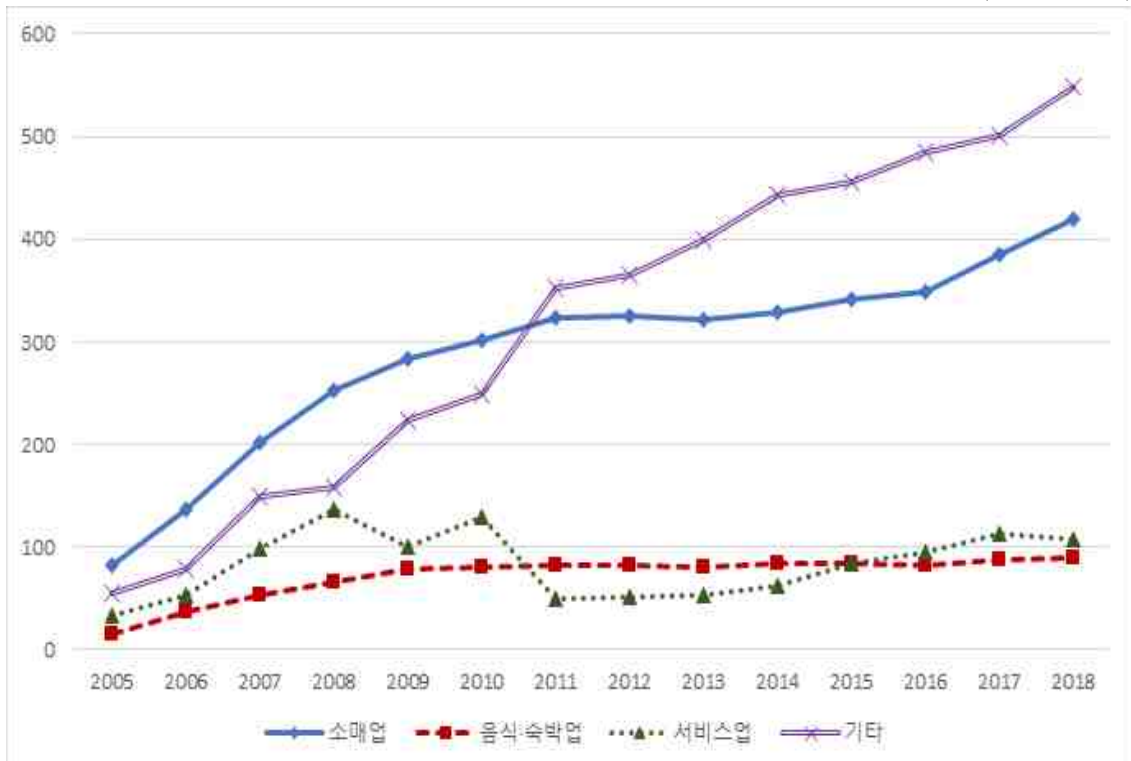
(단위: 천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4]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현황(금액기준)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표 II-13>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건수를 보여줌

- 발급금액별 분포를 살펴보면,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은 2009년 51%, 2014년 53%, 2018년 4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함
-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시행된 2014년 이후로는 1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거래가 약 1천만건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증가율을 고려하면 10만~30만원 구간의 2014년 이후 증가율이 5만~10만원 구간의 증가율보다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 -13>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건수

(단위: 천건)

발급금액	2009	2010	2011	2012	2013
0~1천원	379,187	420,193	417,081	405,655	379,622
1천~3천원	1,318,232	1,531,025	1,654,065	1,701,690	1,688,440
3천~5천원	578,636	679,052	718,442	733,665	747,653
5천~1만원	822,438	900,396	924,472	911,396	906,220
1만~3만원	879,225	933,376	957,619	977,390	984,380
3만~5만원	238,255	244,134	261,288	266,000	262,313
5만~10만원	140,191	148,369	153,502	155,984	153,349
10만~30만원	67,557	73,061	77,643	80,414	78,414
30만~50만원	8,843	10,412	10,813	11,417	12,326
50만원 이상	9,402	11,504	12,425	13,490	14,499

발급금액	2014	2015	2016	2017	2018
0~1천원	358,632	357,334	358,865	337,258	318,846
1천~3천원	1,648,586	1,235,894	1,222,280	1,157,879	1,043,603
3천~5천원	725,574	1,002,103	996,832	934,945	857,456
5천~1만원	918,195	940,710	948,412	901,129	836,477
1만~3만원	1,001,831	966,711	932,512	880,293	869,199
3만~5만원	261,657	255,528	266,079	272,901	280,251
5만~10만원	160,828	162,129	166,189	169,792	178,520
10만~30만원	88,805	93,685	98,739	101,039	106,060
30만~50만원	13,238	14,239	15,553	16,423	17,437
50만원 이상	15,574	17,513	19,203	21,290	23,00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표 II-14>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총금액의 분포를 보여줌

- 발급금액은 5천원에서 1만원 구간과, 50만원 이상 구간에서 금액이 크게 나타났음
- 5천원에서 1만원 구간은 발급 건수가 많아서 총금액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50만원 이상 고액 거래의 경우 거래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금액이 크기에 따라 총발급금액 규모 역시 크게 계산됨

<표 II - 14>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금액

(단위: 억원)

발급금액	2009	2010	2011	2012	2013
0~1천원	2,250	2,499	2,505	2,495	2,350
1천~3천원	25,495	29,294	31,669	33,138	32,971
3천~5천원	21,725	25,374	26,796	27,640	27,766
5천~1만원	54,323	59,550	60,963	60,600	60,447
1만~3만원	143,448	152,365	158,464	164,620	168,251
3만~5만원	85,771	87,573	93,202	94,288	94,373
5만~10만원	90,302	95,171	98,316	97,729	98,587
10만~30만원	98,706	106,368	112,806	112,864	117,804
30만~50만원	30,523	35,782	37,141	37,418	40,513
50만원 이상	134,441	165,589	187,040	193,097	212,091

발급금액	2014	2015	2016	2017	2018
0~1천원	2,226	2,212	2,180	2,035	1,864
1천~3천원	31,744	21,108	20,766	19,619	17,753
3천~5천원	27,245	40,144	39,865	37,248	34,103
5천~1만원	61,175	66,207	66,876	63,394	58,869
1만~3만원	171,568	164,092	157,166	148,053	145,723
3만~5만원	94,349	92,367	96,792	100,153	103,690
5만~10만원	103,696	104,599	107,545	109,736	114,777
10만~30만원	132,060	139,451	147,729	152,113	159,081
30만~50만원	46,376	49,850	54,611	58,013	61,573
50만원 이상	249,026	285,434	319,047	396,187	467,20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Ⅲ. 효과성 평가



Ⅲ. 효과성 평가

- 본 절에서는 동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함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효과성을 추정하며,
 - 기초통계분석 및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한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추가적으로 효과성을 검토하며,
 - 사건분석을 통해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함
 - 다만,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현금영수증제도 전반에 걸친 분석이며, 자료의 한계로 사업자 부문과 가맹점 부문을 구분한 별도의 비용-편익 분석은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음

1.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한 효과성 평가

- 비용-편익 분석은 각 연도별 현금영수증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동 제도 관련 비용 대비 편익을 추정하는 것임
 - 비용-편익 분석은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함
 -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 판단에 객관화된 수치의 결과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음
-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른 편익과 비용에 대한 추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소득이 포착되고,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입 증가로 이어짐(과세표준의 양성화 효과)
 -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한 편익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입규모로 정의할 수 있음
 - 비용은 동 제도와 관련된 조세지출로 정의함
 1. 동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조세지출금액
 2. 동 제도에 의해 파생되는 조세지출로서, 동 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제도(「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조

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 지출금액임

- 엄밀하게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행정비용, 납세협력 비용 등도 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만, 자료의 한계 등을 이유로 본고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함
- 편익 추정에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재정패널조사는 2008년 시작되어 현재 2017년까지 자료가 공개되어 있음
 - 재정패널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자세히 조사되었기 때문임
 - 재정패널조사는 현금영수증 사용 지출규모는 물론 신용카드 등의 지출규모 등도 조사하고 있어, 동 제도의 직접적인 편익 추정과 간접적인 편익 추정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집계된 자료가 아닌 개별 미시자료라는 점은 실제 개인의 미시적 행동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비용 추정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사용하였으며, 조세지출 규모는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국세통계연보는 앞선 기초통계분석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그리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추정에 참고하기 위해 활용함
- (편익 추정)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른 편익은 과표 양성화 효과임
- 과표 양성화 효과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입임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어 소득탈루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새롭게 확보되는 세원을 효과로 추정할 수 있음
 - 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은 판매자의 현금수입이 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탈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정치를 새롭게 포착되는 세원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편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동 제도의 편익 추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

○ 우선 기초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 III-1>을 검토함

- <표 III-1>은 재정패널조사 응답자의 현금영수증 1인당 평균 사용금액임
- 현금영수증 1인당 평균 사용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로 평균 사용 금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1인당 평균 사용금액은 2007년 402만원, 2012년 332만원에서 2013년에는 149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는 약 170만원 수준임
- 2013년에 이전 연도에 비해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급감한 이유는 이태석 외 (2017)에서도 밝혔듯이, 재정패널조사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가구원에 대해서만 조사한 반면, 2013년 이후는 근로소득자이지만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원도 포함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현금영수증 금액 조사 대상 인원이 증가하여, 1인당 평균 사용액은 감소하게 됨
- 하지만 현금 영수증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2013년 이후의 표본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II-1>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도별 과세표준 양성화 및 추가 소득세 세입 추정

(단위: 만원, 명, 억원)

연도	현금영수증 1인당 평균사용액	근로소득자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	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액1	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액2	부가가치세 세입 추정액
2007	402.4	5,110,390	205,642	20,975.5	29,818.1	24,265.8
2008	375.6	5,676,031	213,192	21,745.6	30,912.8	25,156.7
2009	352.8	6,529,707	230,368	23,497.5	33,403.4	27,183.4
2010	348.4	7,319,903	255,025	26,012.6	36,978.6	30,092.9
2011	337.3	7,377,669	248,849	25,382.6	36,083.1	29,364.2
2012	332.5	7,519,433	250,021	25,502.1	36,253.1	29,502.5
2013	149.7	14,745,306	220,737	22,515.2	32,006.9	26,047.0
2014	158.9	15,832,554	251,579	25,661.1	36,479.0	29,686.3
2015	161.4	16,218,776	261,771	26,700.6	37,956.8	30,889.0
2016	158.2	17,022,694	269,299	27,468.5	39,048.4	31,777.3
2017	170.3	16,772,027	285,628	29,134.1	41,416.1	33,704.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II-1>의 현금영수증 1인당 평균사용액은 재정패널조사 표본에 해당하는 통계이며, 이를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로 대응시키기 위해서 재정패널조사의 횡단면 가중치 정보를 활용함
 - 재정패널조사에는 각 응답자마다 재정패널조사에서 부과한 횡단면 가중치 값이 존재함
 - 이는 각 응답자의 특성(소득수준, 소비수준, 연령, 성별,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응답자가 갖는 대표성을 의미함
 - 따라서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여, 그 응답자가 대표하는 우리나라 전체 모집단의 현금영수증 사용규모를 평균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
 - <표 III-1>의 두 번째 열인 근로소득자수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 응답자가 대표하는 총 근로소득자수를 계산함
-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은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1인당 현금영수증 금액에 전체 추정 근로소득자수를 곱하여 계산함
 - 그 규모는 2007년에 약 20조 5천억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21조 3천억원, 2009년 23조원으로 점점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28조 5천억원까지 증가함
- 추정된 과세표준 양성화 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세입을 추정할 수 있음
 - 추정된 과세표준 양성화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동 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세입이 산출됨
 - 이때 적정 세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데, 두 가지 실효세율을 통해 추정함
 - 종합소득 실효세율은 10.2%(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액 1), 14.5%(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액 2)를 적용함
 - 실효세율 10.2%은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소득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세율임
 - 실효세율 14.5%는 김종민 의원실 보도자료(김종민, 2017)에 따른 실효세율 값임
 - 실효세율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종 공제의 적용방법 및 적용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추계한 종합소득세 세입규모는 <표 III-1>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음

- 첫 번째 실효세율(10.2%) 적용 시 예상되는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세입은 2007년에는 약 2조 1천억원, 2009년에는 약 2조 3천억원, 2017년에는 약 2조 9천억원으로 추정됨
- 두 번째 실효세율(14.5%) 적용 시 예상되는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세입은 2007년에는 약 2조 9천억원, 2009년에는 약 3조 1천억원, 2017년에는 약 4조 1천억원으로 추정됨
- 종합소득세 세입 추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세입도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세입 계산을 위해서는 역시 적용 세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부가가치세 세수 계산을 위해서는 실효세율 11.8%를 적용함
 - 이는 기존 성명재(2013)의 추정결과를 이용한 것임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10%보다 실효세율이 높게 추정된 것은 각종 면세 등에 따른 누적 및 환수 효과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11.8%를 적용하면 동 제도에 의한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세입규모는 2007년 약 2조 4천억원, 2009년 약 2조 7천억원이며, 2017년에는 약 3조 3천억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됨
- <표 III-1>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추가 종합소득세 세입과 부가가치세 세입을 계산하였으나, 증가되는 세입이 모두 동 제도의 효과라고 가정할 수는 없음
- 즉 제도의 도입에 의한 총효과인 것은 맞으나, 제도의 순수한 효과로 판단할 수 없음
- 그 이유는 늘어나는 세입 중에서 제도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수취하여, 정상적으로 소득신고가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표 III-1>에서 계산된 수치에 소득탈루율을 적용하여, 제도의 시행으로 소득탈루가 방지되면서 증가하는 세수입을 추정함
 - 이를 위해서 기존 지하경제 규모 및 소득탈루율 등을 추정한 연구를 참고함
 - 신영임·강민지(2014)의 연구는 저자가 파악한 바로 가장 최근의 소득탈루율 추정 연구임

- 신영임·강민지(2014)는 2012년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약 20.8%로 보고하고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III-1>에서 추정된 총 세수 증가분에서 20.8%만큼 탈루될 수 있었던 세입이 동 제도의 시행으로 추가로 걷힌 세수분으로 가정함
- 이를 계산한 결과는 <표 III-2>에 제시됨
- 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의 결과 첫 번째 실효세율(10.2%)을 적용하면, 2007년 종합소득세 세입은 약 4,362억원, 2009년은 약 4,887억원, 2017년에는 약 6,059 억으로 추정됨
- 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의 결과 두 번째 실효세율(14.5%)을 적용하면, 2007년 종합소득세 세입은 약 6,202억원, 2009년은 약 6,947억원, 2017년에는 약 8,615 억으로 추정됨
- 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의 결과, 2007년 부가가치세 세입은 약 5,047억원, 2009 년은 약 5,654억원, 2017년에는 약 7,010억원으로 추정됨

<표 III-2>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도별 과세표준 양성화 및
추가 소득세 세입 추정

(단위: 만원, 명, 억원)

연도	현금영수증 1인당 평균 사용액	근로소득자	과세표준 양성화 추정액	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액1	종합소득세 세입 추정액2	부가가치세 세입 추정액
2007	402.4	5,110,390	205,642	4,362.8	6,202.1	5,047.3
2008	375.6	5,676,031	213,192	4,523.2	6,429.9	5,232.7
2009	352.8	6,529,707	230,368	4,887.4	6,947.8	5,654.1
2010	348.4	7,319,903	255,025	5,410.7	7,691.6	6,259.3
2011	337.3	7,377,669	248,849	5,279.7	7,505.3	6,107.7
2012	332.5	7,519,433	250,021	5,304.4	7,540.6	6,136.4
2013	149.7	14,745,306	220,737	4,683.1	6,657.5	5,417.8
2014	158.9	15,832,554	251,579	5,337.5	7,587.6	6,174.7
2015	161.4	16,218,776	261,771	5,553.6	7,895.1	6,424.9
2016	158.2	17,022,694	269,299	5,713.6	8,122.0	6,609.6
2017	170.3	16,772,027	285,628	6,059.9	8,614.5	7,010.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용 추정)** 비용은 기본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조세지출 규모로 정의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에 대한 추정은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그리고 편의 추정과 마찬가지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함
- 기본적인 비용 추정방법은 이태석 외(2017)에서 사용한 비용 추정방법을 적용 및 응용하여 추정함
 - 조세지출은 동 제도에 소요된 직접적인 조세지출과 동 제도와 관련 있는 기타 제도의 조세지출로 나누어 추정함
 - 1. 동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조세지출금액(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해당하는 조세지출 규모, <표 II-2> 및 <표 III-3> 참조)
 - 2. 동 제도에 의해 파생되는 조세지출금액으로서 동 제도와 관련이 있는 제도를 통해 유발되는 조세지출금액으로서, 동 제도와 관련된 두 개 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임
 - 관련된 조세특례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현금거래 등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됨
 - 동 제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비용은 대부분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서 발생함(<표 III-3> 참조)
 - 동 제도의 연도별 조세지출금액의 분포를 다시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규모는 2009년에는 약 1,191억원, 2010년에는 약 924억원, 2015년에는 약 655억원, 2020년에는 약 513억원으로 추정됨
 -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은 2010년에 약 0.3억원, 2015년에 약 17억원, 2016년에는 약 36억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약 48억원으로 추정됨
 - 동 제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세지출 총규모는 2009년 약 1,191억원에서 2020년 약 561억원으로 절반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조세지출은 대부분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에서 비롯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표 III-3> 본 제도의 연도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09 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²⁾ (p)	2020 ²⁾ (p)
소득세	0.0	0.3	0.0	0.0	0.3	0.1	17.0	37.0	67	50	46	48
부가 가치세	1,191.0	924	1,085.0	1,121.0	999.0	676.0	655.0	699.0	660	563	493	513
소계	1,191.0	924.3	1,085.0	1,121.0	999.3	676.1	672.0	736.0	727	613	539	561

주: 1) 2009년 소득세 조세지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조세지출금액 구분의 오류가 존재하는 확인되어 조세 지출예산서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값을 서로 바꿈

2) 2019년과 2020년은 전망값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조세지출 규모는 직접적인 조세지출과는 달리 직접 산출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 그 이유는 동 제도와 관련된 제도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에도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임
 - 따라서 국세통계연보 또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공하는 조세지출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용과 관련된 조세지출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조세지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위의 조세지출금액 정보를 직접적으로 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 <표 III-4>는 동 제도와 관련이 있는 두 제도(「부가가치세법」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관련된 조세지출 규모를 보여줌
 - <표 III-4>의 첫 번째 열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관련 조세지출을 보여줌
 - <표 III-4>의 두 번째 열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관련 조세지출을 보여줌
 - 소득세 공제 관련 조세지출은 2009년 약 1조 9천억원, 2010년 약 1조 8천억원, 2011년 약 1조 2천억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약 2조 1천억원, 2020년에는 약 2조 3천억원으로 추정됨

-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조세지출은 2009년 약 1조원, 2010년 약 1조 2천억원, 2011년 약 1조 4천억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약 1조 9천억원, 2020년에는 약 2조 3천억원으로 추정됨
- 신용카드 등의 사용과 관련된 총 조세지출 규모는 2009년 약 2조 9천억원, 2010년 약 3조 1천억원, 2011년 약 2조 6천억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약 4조원, 2020년에는 약 4조 7천억원으로 추정됨
- 동 제도와 관련 있는 간접적인 조세지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 III-4>의 조세지출 규모 가운데 일정 부분에 대한 추정 작업이 필요함

<표 III-4> 신용카드 등 사용 관련 조세지출금액^{1),2)}

(단위: 억원)

연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계
2009	18,934	10,036	28,970
2010	18,405	12,325	30,730
2011	11,729	13,831	25,560
2012	11,697	14,405	26,102
2013	13,721	13,668	27,389
2014	15,708	13,888	29,596
2015	17,889	14,188	32,077
2016	18,444	15,776	34,220
2017	18,537	16,271	34,808
2018	21,176	19,125	40,301
2019(p) ³⁾	22,413	22,553	44,966
2020(p) ³⁾	23,383	23,420	46,803

주: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부가세법」 제32조의 2에서 2013년 이후 「부가세법」 제46조로 개정됨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소득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에 의함

3) 2019년과 2020년은 전망값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따라서 위의 두 제도의 조세지출 중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조세지출금액은 별도의 추정 작업이 요구됨

- 소득세 공제와 관련한 조세지출금액은 개인 소비자의 현금거래에 따른 소득 공제 규모로 정의할 수 있으며,

- 부가가치세 공제와 관련한 조세지출금액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공제 규모로 추정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비용 추정에 앞서 두 제도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인원과 총 소득공제금액 규모를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함(<표 III-5> 참조)
 -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의 경우 2007년에는 1,051명, 2009년에는 1,177명, 2015년에는 1,654명, 2017년에는 1,835명으로 조사됨
 - 또한 이 중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인원을 조사한 결과 2007년에는 840명, 2009년에는 924명, 2015년에는 1,187명, 2017년에는 1,311명임
 - 위의 통계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 중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을 계산하면 약 70~80%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III-5>의 네 번째 열은 국세통계연보에서 집계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 인원임
 -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 비율을 위의 국세통계연보에서 집계한 소득공제 인원에 곱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인원을 추정할 수 있음
 -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구한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규모에 추정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인원을 곱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서 현금영수증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는 인원을 추정할 수 있음
 - 추정결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은 2009년 약 4조 2천억원, 2013년 약 6조 2천억원, 2017년에는 약 7조 4천억원으로 추정됨
- 본격적으로 동 제도와 관련된 비용을 추정하면, 우선 소득세 공제와 관련한 조세지출금액의 추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 <표 III-5>에서 총 소득공제금액 규모를 추정하였으나, 조세지출금액은 개인별로 소득 과표 구간에 따라 세금 감면 규모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해야 함
 - 이러한 조세지출의 추정에는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사용됨
 - 재정패널조사 자료에는 가구원의 카드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물론 비용 추정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정보가 조사됨

<표 III-5> 비용 추정

(단위: 명, %, 억원)

연도	재정패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인원(A)	재정패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인원(B)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은 인원 비율(C=B/A)	국세통계연보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인원(D)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인원(E=D*C)	1인당 평균 소득공제 금액(F)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G=E*F)
2007	1,051	840	79.9	5,704,731	4,559,442	92.8	42,312
2008	1,237	988	79.9	6,072,779	4,850,368	89.4	43,362
2009	1,177	924	78.5	6,253,955	4,909,647	85.4	41,928
2010	1,268	998	78.7	6,305,853	4,963,124	82.2	40,797
2011	1,197	1,016	84.9	6,739,692	5,720,574	80.7	46,165
2012	1,372	1,150	83.8	7,246,023	6,073,562	81.5	49,500
2013	1,538	1,102	71.7	7,645,693	5,478,253	113.4	62,123
2014	1,628	1,158	71.1	8,252,634	5,870,117	119.5	70,148
2015	1,654	1,187	71.8	8,564,504	6,146,352	115.6	71,052
2016	1,712	1,236	72.2	9,102,086	6,571,366	105.0	68,999
2017	1,835	1,311	71.4	9,677,324	6,913,881	106.9	73,9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각 연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정함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각 응답자의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가정함
- 응답자의 소득 대비 일정 비율(최저사용금액 기준)은 2010년까지는 20%였다가 2011년부터 25%로 상승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기준금액을 설정함
-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소득공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함
- 이는 이태석 외(2017)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공제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공제를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가정임
- 따라서 기준금액 초과분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함

- 이때 적용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12년까지는 25%이며, 2013년부터 30%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함
- 소득공제금액의 발생에 따라 재정패널조사의 응답자들의 근로소득세 규모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세지출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응답자들은 각각의 소득구간에 따른 개별 한계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종 조세지출 규모는 소득공제금액에 한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 <표 III-6>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공제금액을 이용하여 추정된 조세지출 규모임
- 추정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조세지출금액은 <표 III-7>에 정리함
- 2008년 약 3,052억원이며, 2009년 약 3,171억원, 2010년 약 3,208억원, 2011년 약 3,551억원, 2012년 약 4,437억원, 2013년 6,460억원, 2014년 약 7,402억원, 2015년 약 7,348억원, 2016년 약 5,490억원, 2017년 약 5,375억원으로 추정됨
- 2013년 소득공제 관련 총 조세지출 추정치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2013년 이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로 올라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표 III-6> 연도별 소득공제 관련 조세지출금액 추정치

(단위: %, 억원)

<2008년>

과세표준	한계세율(A)	소득공제금액(B)	세금감면액(C=A*B)
1,000만원 이하	8	87.58	7.01
4,600만원 이하	17	13,774.14	2,341.6
8,800만원 이하	26	2572.87	668.95
8,800만원 초과	35	100.35	35.12
총합			3,052.68

<2009년>

과세표준	한계세율(A)	소득공제금액(B)	세금감면액(C=A*B)
1,200만원 이하	6	613.13	36.79
4,600만원 이하	16	14,699.91	2351.99
8,800만원 이하	25	2855.44	713.86
8,800만원 초과	35	195.90	68.57
			3,171.20

<2010년>

과세표준	한계세율(A)	소득공제금액(B)	세금감면액(C=A*B)
1,200만원 이하	6	1016.18	60.97
4,600만원 이하	15	16,455.15	2,468.27
8,800만원 이하	24	2,529.84	607.16
8,800만원 초과	35	204.55	71.59
			3,208.00

<2011년>

과세표준	한계세율(A)	소득공제금액(B)	세금감면액(C=A*B)
1,200만원 이하	6	588.95	35.34
4,600만원 이하	15	15,135.25	2,270.29
8,800만원 이하	24	4,411.86	1,058.85
8,800만원 초과	35	533.45	186.71
			3,551.18

<2012년>

과세표준	한계세율(A)	소득공제금액(B)	세금감면액(C=A*B)
1,200만원 이하	6	477.61	28.66
4,600만원 이하	15	17,469.84	2,620.48
8,800만원 이하	24	6,919.92	1,660.78
3억원 이하	35	364.58	127.60
3억원 초과	38		
			4,437.52

<2013년>

과세표준	한계세율(A)	소득공제금액(B)	세금감면액(C=A*B)
1,200만원 이하	6	1,374.86	82.49
4,600만원 이하	15	24,704.05	3,705.61
8,800만원 이하	24	10,120.28	2,428.87
3억원 이하	35	693.10	242.59
3억원 초과	38		
			6,459.55

<2014년>

과세표준	한계세율(A)	소득공제금액(B)	세금감면액(C=A*B)
1,200만원 이하	6	1,039.14	62.35
4,600만원 이하	15	25,734.54	3,860.18
8,800만원 이하	24	14,285.82	3,428.60
1억 5천만원 이하	35	146.21	51.17
1억 5천만원 초과	38		
			7,402.30

<2015년>

과세표준	한계세율(A)	소득공제금액(B)	세금감면액(C=A*B)
1,200만원 이하	6	715.19	42.91
4,600만원 이하	15	24,602.37	3,690.36
8,800만원 이하	24	14,280.91	3,427.42
1억 5천만원 이하	35	537.13	188.0
1억 5천만원 초과	38		
			7,348.68

<2016년>

과세표준	한계세율(A)	소득공제금액(B)	세금감면액(C=A*B)
1,200만원 이하	6	261.99	15.72
4,600만원 이하	15	18,477.08	2,771.56
8,800만원 이하	24	10,295.47	2,470.91
1억 5천만원 이하	35	663.26	232.14
1억 5천만원 초과	38		
			5,490.34

<2017년>

과세표준	한계세율(A)	소득공제금액(B)	세금감면액(C=A*B)
1,200만원 이하	6	63.06	3.78
4,600만원 이하	15	19,129.38	2,869.41
8,800만원 이하	24	8,924.67	2,141.92
1억 5천만원 이하	35	1,029.06	360.17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5,375.28

<표 III-7> 연도별 소득공제 관련 조세지출금액 추정치(정리)

(단위: 억원)

연도	소득공제 관련 조세지출금액
2008	3,052.68
2009	3,171.20
2010	3,208.00
2011	3,551.18
2012	4,437.52
2013	6,459.55
2014	7,402.30
2015	7,348.68
2016	5,490.34
2017	5,375.28

-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와 관련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
 - 부가가치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됨
 - 공제받는 부분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공제가 모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공제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표 III-8>은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규모와 관련한 통계를 정리함
 - <표 III-8>의 첫 번째 열은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에서 산출된 실제 조세지출 내역을 나타냄
 - 2007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출은 약 6,992억원이며, 2009년에는 약 1조원, 2015년에는 약 1조 4천억원, 2017년에는 그 규모가 약 1조 6천억원까지 증가함
 - 부가가치세 총 조세지출에서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조세지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비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재정패널조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였으며, <표 III-8>의 두 번째 열에 그 수치가 제시됨

- 비율은 2007년 이후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약 13%에서 20% 사이에 분포함
- <표 III-8>의 세 번째 열에서는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간이과세자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합한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
- <표 III-8>의 네 번째 열에서는 음식·숙박업의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의 경우 공제율이 일반과세자의 공제율(2.6%)보다 두 배 높다는 점(1.3%)을 고려하기 위해 계산함
- 결과적으로 최종 조세지출금액을 구하기 위해 <표 III-8>의 마지막 열의 공식을 활용하여 조세지출금액을 산출함
- 추정된 조세지출금액은 2007년 약 1,558억원, 2008년 약 1,788억원, 2015년 약 2,209억원, 2017년 약 2,278억원임

<표 III-8>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세지출금액 추정

(단위: 억원)

연도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A)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비율(B)	간이과세자 비율 (C)	음식·숙박업 비율(D)	조세지출금액 ($E=(A*B)\{1+(C*D)\}$)
2007	6,992	20.5	38.2	22.8	1,558
2008	8,451	19.5	37.5	22.7	1,788
2009	10,036	19.3	36.4	21.3	2,087
2010	12,325	19.0	34.9	20.7	2,510
2011	13,831	16.2	32.9	19.9	2,387
2012	14,405	15.7	31.2	19.3	2,397
2013	13,668	14.8	31.7	20.4	2,154
2014	13,888	15.0	29.7	20.7	2,211
2015	14,188	14.7	28.4	20.9	2,209
2016	13,013	13.9	27.2	20.9	1,912
2017	16,273	13.3	25.9	20.3	2,278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표 III-9>는 위에서 추정된 비용들을 정리함
 - 두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의 본제도(실적치)는 동 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실제 조세지출금액을 보여줌
 -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의 관련 제도(추정액)는 앞에서 적절한 가정을 통해 추정한 조세지출금액임
 - 간접적인 조세지출 규모는 2008년 약 4,841억원, 2009년에는 약 5,258억원, 2014년에는 약 9,614억원, 2017년에는 약 7,653억원으로 추정됨
 - 직접적인 조세지출과 추정된 간접적인 조세지출 비용들을 총합하면 2009년에는 약 6,500억원, 2014년에는 약 1조원, 2017년에는 약 8,380억원의 조세지출이 추정되며, 이는 동 제도가 유발한 총 조세지출 규모, 즉 총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음

<표 III-9> 연도별 직접적·간접적 조세지출금액 추정치

(단위: 억원)

연도	소득세(A)		부가가치세(B)		소계(A+B)
	관련 제도 (추정액)	본제도 (실적치)	관련 제도 (추정액)	본제도 (실적치)	
2007	-	-	1,558	-	-
2008	3,053	0.0	1,788	-	-
2009	3,171	0.0	2,087	1,191	6,449
2010	3,208	0.3	2,510	924	6,642
2011	3,551	0.0	2,387	1,085	7,023
2012	4,438	0.0	2,397	1,121	7,956
2013	6,460	0.3	2,154	999	9,613
2014	7,402	0.1	2,211	676	10,289
2015	7,349	17	2,209	655	10,230
2016	5,490	37	1,912	699	8,138
2017	5,375	67	2,278	660	8,380

□ 지금까지 동 제도와 관련한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편익 추정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동 제도의 시행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고, 현금거래가 투명해지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원이 확보됨에 따라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입 추정을 통해 검토함

- 이를 위해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응답자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함
 - 비용 추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함
 - 직접적인 조세지출은 동 제도에 의해 발생한 실제 조세지출금액과 간접적으로 동 제도와 관련 있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와 관련한 조세지출임
 - 직접적인 조세지출 규모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나, 간접적인 조세지출 규모는 다소 복잡한 추정과정이 필요함
 - 적절한 가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현금거래에 따른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조세지출과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간접적인 조세지출로 정의하고 계산함
- (비용-편익 분석) 앞서 계산한 편익과 비용을 토대로 비용-편익 수치를 계산함
- <표 III-10>은 연도별 비용과 편익을 종합하여 제시함
 - 앞서 논의했듯이, 편익 추정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을 두 가지(10.2%, 14.5%)로 나누어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에도 두 가지 시나리오의 결과가 모두 제시됨
 - 연도별 편익과 비용 추정치를 비교하면, 2009년에는 편익이 약 1조~1조 2천억원, 비용은 약 6,40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편익이 약 1조 1천억~1조 4천억원, 비용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되고, 2017년에는 편익이 약 1조 3천억~1조 6천억원, 비용은 약 8,380억원으로 추정됨
 - 이를 바탕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면, 1원의 조세지출은 2009년 약 1.63원에서 1.95원의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며, 2010년은 1.76~2.10원, 2011년은 1.62~1.94원, 2014년은 1.12~1.34원, 2017년은 1.56~1.86원으로 평가됨
 - 이는 동 제도가 비용 대비 편익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량화된 수치로 평가했을 때 조세지출 규모 대비 평균적으로 더 큰 편익을 가져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정착이 이미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추세는 편익-비용 수치 연도별 변화 그래프인 [그림 III-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표 III-10> 비용-편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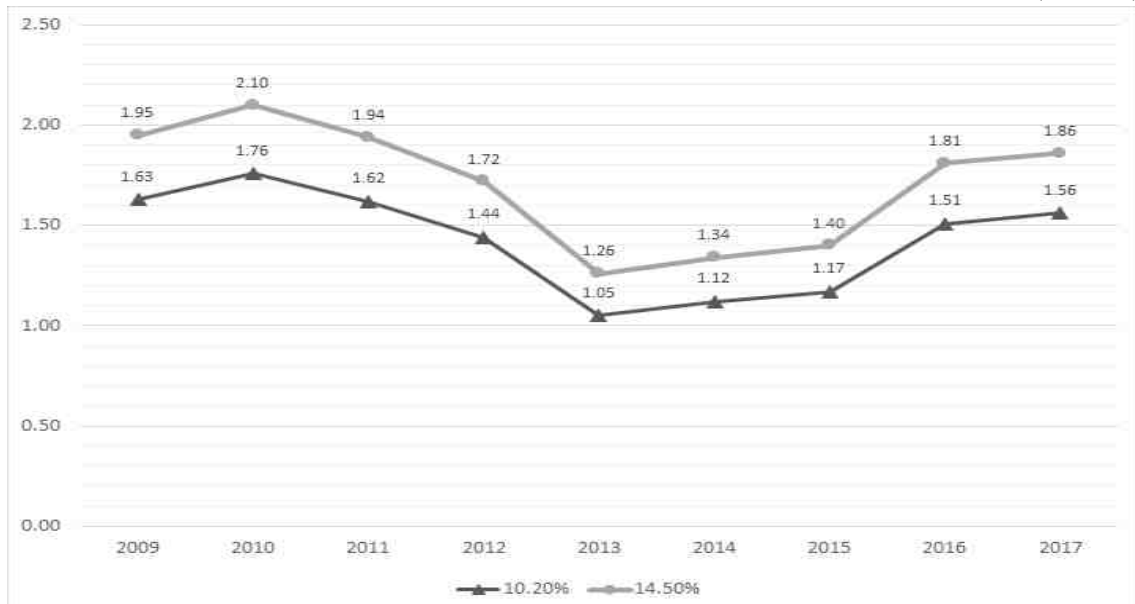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원)

종합소득세 평균세율 가정		편익	비용	편익/비용
2009	10.2	10,541.5	6,449	1.63
	14.5	12,601.9	6,449	1.95
2010	10.2	11,670	6,642	1.76
	14.5	13,950.9	6,642	2.10
2011	10.2	11,387.4	7,023	1.62
	14.5	13,613	7,023	1.94
2012	10.2	11,440.8	7,956	1.44
	14.5	13,677	7,956	1.72
2013	10.2	10,100.9	9,613	1.05
	14.5	12,075.3	9,613	1.26
2014	10.2	11,512.2	10,289	1.12
	14.5	13,762.3	10,289	1.34
2015	10.2	11,978.5	10,230	1.17
	14.5	14,320	10,230	1.40
2016	10.2	12,323.2	8,138	1.51
	14.5	14,731.6	8,138	1.81
2017	10.2	13,070.3	8,380	1.56
	14.5	15,624.9	8,380	1.86

자료: 저자 계산

[그림 III-1] 비용-편익 추이

(단위: 원)



2. 기초통계분석 및 이중차분모형 분석을 이용한 효과성 평가

- 1절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의 분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효과성이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제도의 지원규모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는 구체적인 효과성 평가를 시도함

- 제도 개요 <표 II-7>에서 살펴봤듯이, 동 제도는 현금영수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이후 지원규모에 꾸준한 변화가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건당 세액공제 단가는 2005년 22원(종이 발급), 15.4원(종이 미발급), 2013년 18.7원(종이 발급), 13.2원(종이 미발급), 2017년에는 17원(종이 발급), 12.6원(종이 미발급), 2018년에는 12.5원(종이 발급), 11.5원(종이 미발급)으로 변경됨
 -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의 경우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20원의 공제가 있고, 이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변화가 없음

- 따라서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2013년, 2017년, 2018년을 기준으로 조세지원의 축소가 정책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가 필요함
 - 만약 조세지원 축소가 현금영수증 사용을 줄였다면,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조세지원 축소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제도의 지원규모 축소 혹은 증가의 결정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 궁극적으로는 추후 제도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조세지원 규모의 변화가 현금영수증 사용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은 기본적으로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검토함
 - 분석자료는 국세통계연보에서 공개하고 있는 연도별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과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지급수단별 통계자료에서 신용카드 거래건수 및 금액임

- 위의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중차분모형으로 분석을 시도함

$$y_{it} = \alpha + \beta X_i \circ T_t + X_i + T_t + \epsilon_{it} \quad (\text{식 III-1})$$

- y_{it} 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금액을 나타내며, X_i 는 지시변수로서, 현금영수증 거래의 경우 1,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에는 0이 부여된 변수이며, T_t 는 현금영수증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연도의 지시변수로서(2013년 지시변수, 2017년 지시변수, 2018년 지시변수) 각각 해당 연도에는 1의 값이 부여됨
 - 연도별 변화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의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각의 고정효과를 통제함
 - 분석에서 관심 있는 계수는 β 이며, 이는 제도단가 변경정책이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 위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표 III-11>은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 신용카드 거래건수 및 금액을 연도별로 보여줌
 - 신용카드 거래건수 및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거래건수는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금액은 꾸준히 증가함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거래건수 및 금액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III-2]와 [그림 III-3]을 제시함
 - [그림 III-2]는 현금영수증 거래금액과 신용카드 거래금액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며, [그림 III-3]은 현금영수증 거래건수와 신용카드 거래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줌
 - [그림 III-2]와 [그림 III-3]을 통해 동 제도의 단가가 조정된 2013년 이전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거래건수 및 금액의 추이가 평행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으로서 만약 평행한 추이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이중차분모형 적용 추정결과에는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거래금액의 경우 제도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경우 비교적 평행한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 거래건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추이가 2013년 이전에 평행한 추세를 보인다고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표 III-11>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건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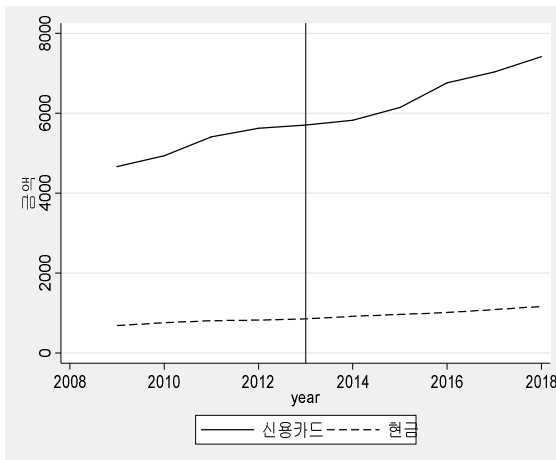
(단위: 천건, 천억원)

연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거래건수	금액	거래건수	금액
2009	4,441,966	687	4,880,084	4,663.6
2010	4,951,522	759.6	5,814,817	4,937.4
2011	5,187,350	808.9	6,593,241	5,407.9
2012	5,257,101	823.9	7,479,525	5,618.6
2013	5,227,216	855.2	8,153,659	5,706.4
2014	5,192,920	919.5	8,857,452	5,819.3
2015	5,045,846	965.5	9,818,447	6,142.4
2016	5,024,664	1012.6	10,663,671	6,757.6
2017	4,792,949	1086.6	11,965,543	7,029.7
2018	4,530,850	1164.6	13,211,771	7,413.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각 연도;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검색 일자: 2020. 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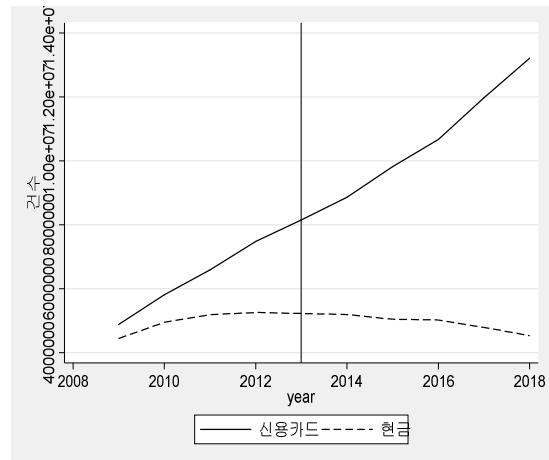
- 결과적으로 거래금액의 경우 이중차분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나, 거래건수의 경우에는 시간 추세를 추가로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간 추세를 통제한다는 것은 2013년 이전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서로 다른 추세를 통제하여 비교하겠다는 의미임

[그림 III-2] 거래금액 추이 비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3] 거래건수 추이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우선 평행한 추세 가정을 비교적 잘 만족하는 거래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식 III-1>을 추정함
 - <표 III-12>는 <식 III-1>의 추정결과를 보여줌
 - 해석의 편의를 위해 거래금액은 로그로 변환한 거래금액을 사용함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거래건수당 지원 단가의 조정이 있었던 2013년, 2017년, 2018년에 현금영수증 거래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는 제도의 변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조세지원 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금영수증 거래건수에는 통계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의미임
 - 따라서 조세지원 단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의미이며, 앞 절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온 이유의 추가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음
 - 물론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타 정보들이 요구되나, 자료의 한계로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아 추정치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표 III-12> 제도 단가 변화가 거래금액에 미치는 영향

거래금액	계수(β)	표준오차	P 값
영수증*2013년	0.029	0.019	0.165
영수증*2017년	0.006	0.030	0.855
영수증*2018년	0.016	0.038	0.682

자료: 저자 작성

- <표 III-13>은 거래건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식 III-1>을 추정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래건수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건수와 현금영수증 거래건수가 2013년 이전 평행 추세선 가정을 충실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여 우선 추정해봄
 - 해석의 편의를 위해 종속변수는 로그로 변환한 거래건수를 사용함
 - 분석결과 2013년과 2017년의 조세지원 단가 변화를 통한 제도의 변화는 현금영수증 거래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3년의 경우 제도 변화로 인해 약 38.7%의 거래건수가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매우 유의하게 관찰됨
- 이는 조세지원 단가의 인하는 현금영수증거래 활성화라는 애초의 정책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하지만 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함
- 해석상 주의해야 할 점은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가정이 충실히 만족되지 않아,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 따라서 추가적인 분석 작업이 요구됨

〈표 III-13〉 제도 단가 변화가 거래건수에 미치는 영향

거래건수	계수(β)	표준오차	P 값
영수증*2013년	-0.387***	0.078	0.000
영수증*2017년	-0.316**	0.124	0.027
영수증*2018년	-0.155	0.156	0.342

주: *, **, ***는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표 III-13> 추정치의 잠재적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형된 모형으로 거래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재추정함
 - 기본적인 모형은 <식 III-1>과 유사하며, 2013년 이전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다른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추세선을 추가로 통제함

$$y_{it} = \alpha + \beta X_i \cdot T_t + X_i + T_t + t \cdot X_i + \epsilon_{it} \quad (\text{식 III-2})$$

- <식 III-2>의 $t \cdot X_i$ 는 2013년 이전과 이후 현금영수증 및 신용거래 각각의 고유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식에 포함함
- 추정결과는 <표 III-14>에 제시되어 있음

〈표 III-14〉 제도 단가 변화가 거래건수에 미치는 영향

거래건수	계수(β)	표준오차	P 값
영수증*2013년	-0.005	0.095	0.956
영수증*2017년	-0.077	0.090	0.413
영수증*2018년	-0.060	0.095	0.545

자료: 저자 작성

- 추정결과 <표 III-13>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제시됨
 - 거래금액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표 III-12>의 결과의 해석과 유사하게 제도의 변화는 거래건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공통 추세선 가정의 위배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변수를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제도 변화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에서 없다는 결과로 바뀜
 - 이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조세지원 단가가 감소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거래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임
 - <표 III-13>과 <표 III-14>의 결과를 종합하면, 분석의 가정과 특성을 고려할 때, 조세지원 규모의 변화가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한 결론으로 판단됨
 - 단순 통계분석을 통해 제도지원 단가 변경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감지된다 하더라도, 이는 통계적 오류일 가능성이 크며,
 - 오류 가능성을 줄여 분석한 모형에서는 제도의 지원단가가 축소되어도, 제도의 정책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됨
- 다음으로는,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의 개정으로 추세의 변화가 관찰되는지 검토해 봄
- 제II장의 <표 II-13>과 <표 II-14>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을 보여줌
 - 이 통계를 사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함
 - 효과 추정의 아이디어는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거래건수 및 금액과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의 거래건수 및 금액을 비교하는 것임
 - 물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조세지원의 변화는 없었으나, 만약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지원규모 축소가 현금영수증 거래 현황에 영향을 미친다면, 소액 현금영수증 거래에 우선적으로 혹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에 대한 비교를 시도함
 - 분석에 사용하는 가정을 재정리하면, 제도지원의 축소로 인해서 현금영수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제도의 변화를 회피하기 쉬운 방법은, 소액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가정임
 - <표 III-15>와 <표 III-16>은 <표 II-13>과 <표 II-14> 가운데 1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해 재정리한 표임

<표 III-15>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건수

(단위: 천건)

발급금액	2009	2010	2011	2012	2013
0~1천원	379,187	420,193	417,081	405,655	379,622
1천~3천원	1,318,232	1,531,025	1,654,065	1,701,690	1,688,440
3천~5천원	578,636	679,052	718,442	733,665	747,653
5천~1만원	822,438	900,396	924,472	911,396	906,220

발급금액	2014	2015	2016	2017	2018
0~1천원	358,632	357,334	358,865	337,258	318,846
1천~3천원	1,648,586	1,235,894	1,222,280	1,157,879	1,043,603
3천~5천원	725,574	1,002,103	996,832	934,945	857,456
5천~1만원	918,195	940,710	948,412	901,129	836,47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I-16>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발급금액

(단위: 억원)

발급금액	2009	2010	2011	2012	2013
0~1천원	2,250	2,499	2,505	2,495	2,350
1천~3천원	25,495	29,294	31,669	33,138	32,971
3천~5천원	21,725	25,374	26,796	27,640	27,766
5천~1만원	54,323	59,550	60,963	60,600	60,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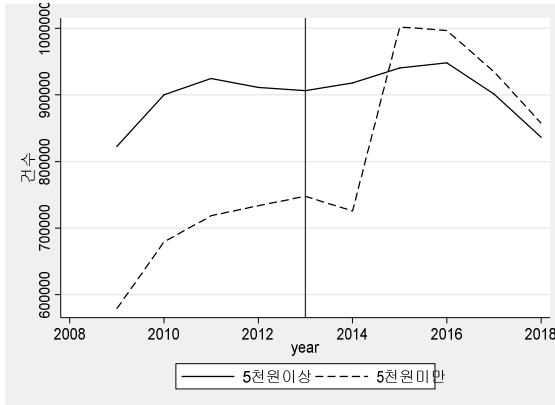
발급금액	2014	2015	2016	2017	2018
0~1천원	2,226	2,212	2,180	2,035	1,864
1천~3천원	31,744	21,108	20,766	19,619	17,753
3천~5천원	27,245	40,144	39,865	37,248	34,103
5천~1만원	61,175	66,207	66,876	63,394	58,86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분석모형은 앞에서 분석한 <식 III-1> 및 <식 III-2>와 같은 모형을 사용함
 - 우선, 평행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3천~5천원 거래와 5천~1만원 거래의 추세를 비교함
 - [그림 III-4]와 [그림 III-5]의 실선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거래 건수 및 금액을 나타내며, 점선은 5천원 미만 3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거래 건수 및 금액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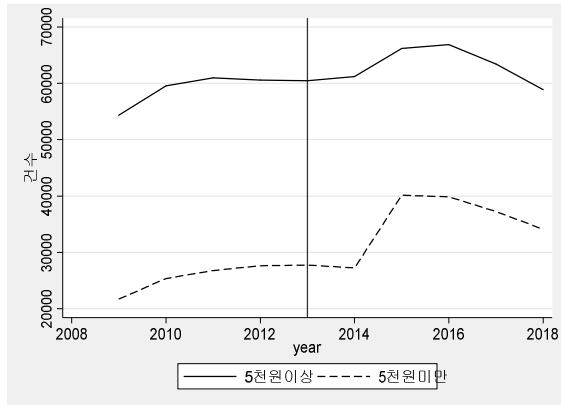
- 그림의 추세를 살펴보면, 앞선 분석과는 달리 2013년 제도 개편 이전에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이 상당히 평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I-4] 소액현금영수증 거래건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 소액현금영수증 거래금액



자료: 저자 작성

- 따라서 5천원 이상, 5천원 미만 소액거래와 관련하여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해보기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됨
 - 분석결과는 <표 III-17>과 <표 III-18>에 제시되어 있음
 - <표 III-17>은 2013년 제도 개편이 있는 후 오히려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 거래는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의 제도 개편은 현금영수증 거래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7> 현금영수증제도 변화의 소액거래건수 효과

거래건수	계수(β)	표준오차	P 값
영수증*2013년	0.197**	0.076	0.025
영수증*2017년	0.116	0.120	0.355
영수증*2018년	-0.012	0.151	0.938

자료: 저자 작성

- <표 III-18>은 소액 현금영수증 거래금액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제도 개편 이후 거래금액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7년과 2018년의 제도 개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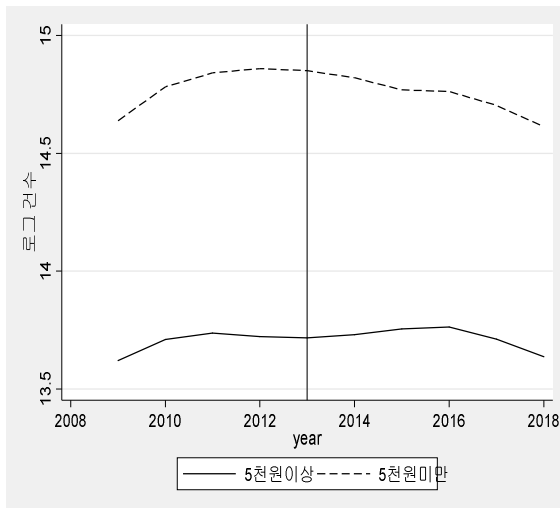
<표 III-18> 현금영수증제도 변화의 소액거래금액 효과

거래건수	계수(β)	표준오차	P값
영수증*2013년	0.193**	0.086	0.045
영수증*2017년	0.119	0.135	0.397
영수증*2018년	-0.014	0.171	0.936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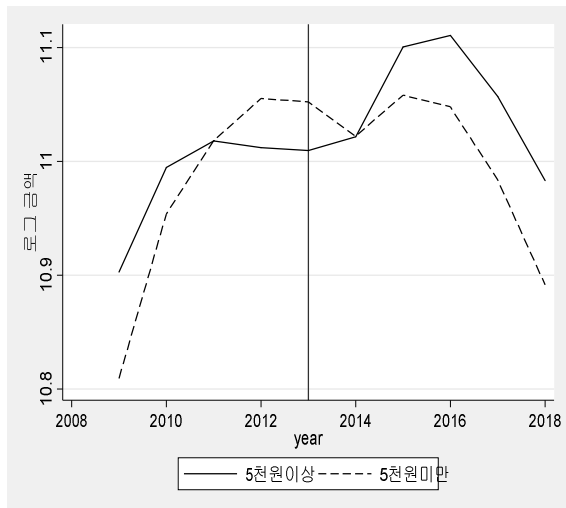
- <표 III-17>과 <표 III-18>의 결과는 상당히 유사하며,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제도지원의 감소가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해 줌
-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의 경우 0~5천원으로 범위를 넓혀 분석해 봄
 - 동일한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각각의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의 평행 추세선 가정 검토를 위해 [그림 III-6]과 [그림 III-7]을 통해 확인함
 - 거래금액과 거래건수의 추세에 상당히 평행하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며,
 - 이는 앞의 [그림 III-4]와 [그림 III-5]의 평행 추세선 가정과도 비슷한 결론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III-6] 소액현금영수증 거래건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7] 소액현금영수증 거래금액



자료: 저자 작성

□ 동일한 모형으로 정책 변화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III-19>와 <표 III-20>에 제시됨

- <표 III-19>는 제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 현금거래건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임
-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2013년, 2017년, 2018년에 특별한 변화를 통계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움
- 즉 제도의 지원 단가 축소에도 불구하고 소액 현금영수증 거래는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음
- 거래금액에 대해서 비슷한 분석을 한 결과가 <표 III-20>에 제시되어 있음
- 분석결과, 소액거래건수와 마찬가지로 소액거래금액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음

<표 III-19> 현금영수증제도 변화의 소액거래건수 효과

거래건수	계수(β)	표준오차	P 값
영수증*2013년	-0.023	0.057	0.692
영수증*2017년	-0.068	0.089	0.464
영수증*2018년	-0.016	0.113	0.890

자료: 저자 작성

<표 III-20> 현금영수증제도 변화의 소액거래금액 효과

거래건수	계수(β)	표준오차	P 값
영수증*2013년	0.007	0.045	0.873
영수증*2017년	-0.058	0.071	0.434
영수증*2018년	-0.018	0.090	0.846

자료: 저자 작성

□ 마지막 추가 검토는 업태별로 현금영수증가맹점수를 비교하여 정책 변화의 효과를 추정함

- 분석의 아이디어는 제도 정책의 변화로 인한 지원 단가의 감소는 업태별로 현금영수증가맹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임
- 소매업의 경우, 병의원 혹은 학원의 경우보다 소액 현금거래가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 업태들을 비교하여 지원 단가 감소가 업태별 가맹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임

-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처치집단으로 소매업을, 통제집단으로 병의원과 학원을 각각 지정하여 별도로 분석함
-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며, 기본적인 가정을 만족하는지 그래프 분석을 통해 살펴봄
 - 우선, 소매업과 병의원, 학원 현금영수증가맹점수의 연도별 통계를 <표 III-21>을 통해 재정리함
 - 이들이 분석모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림 III-8]과 [그림 III-9]를 검토함
 - 2013년 제도개편이 있기 전 소매업과 병의원, 소매업과 학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추세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임
 - 2013년 제도 변화 이후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제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 엄밀한 검토를 위해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형으로 회귀분석이 필요함

<표 III-21> 업태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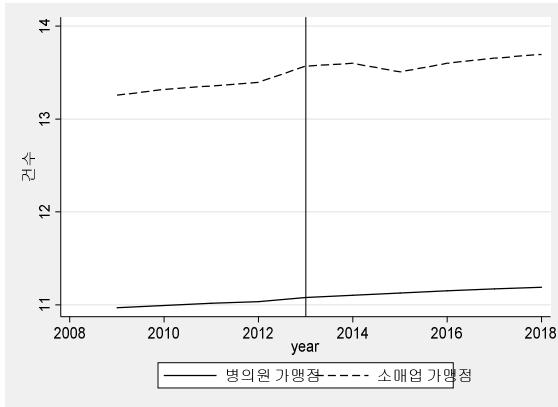
(단위: 개)

연도	소매업 현금영수증 가맹점수	병의원 현금영수증 가맹점수	학원 현금영수증 가맹점수
2009	571,703	58,017	96,876
2010	607,633	59,470	102,725
2011	631,336	60,943	107,165
2012	657,229	62,107	109,768
2013	781,971	64,754	127,056
2014	805,515	66,524	130,166
2015	734,063	68,051	131,988
2016	805,918	69,635	136,993
2017	851,188	71,178	144,219
2018	886,211	72,439	151,44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8] 소매업 및 병원 가맹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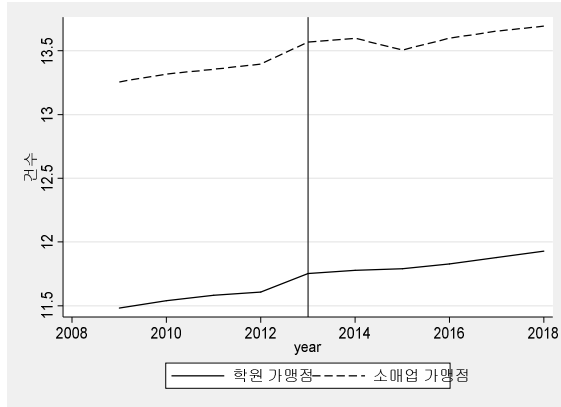
(단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9] 소매업 및 학원 가맹점

(단위:)



자료: 저자 작성

□ 분석결과는 <표 III-22>와 <표 III-23>에 제시됨

- 분석결과 병의원을 대조집단으로 설정한 <표 III-22>의 경우, 제도 변화가 처음 있었던 2013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은 대조집단을 학원으로 한정했을 때도 비슷하게 관찰됨
- <표 III-23>은 대조집단을 학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설정한 경우인데, 2017년과 2018년은 물론, 2013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동 제도의 변화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도가 현금영수증가맹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음
-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논리적으로 유사한 결과로 해석되며,
- 전체적으로 제도지원 단가의 축소가 제도 자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함

<표 III-22> 소매업 및 병원 가맹점수 효과

거래건수	계수(β)	표준오차	P 값
영수증*2013년	0.126***	0.032	0.002
영수증*2017년	0.028	0.050	0.585
영수증*2018년	0.023	0.064	0.728

주: *, **, ***는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표 III-23> 소매업 및 학원 가맹점수 효과

거래건수	계수(β)	표준오차	P 값
영수증*2013년	0.003	0.034	0.932
영수증*2017년	-0.007	0.054	0.904
영수증*2018년	-0.009	0.068	0.903

자료: 저자 작성

- 지금까지는 이중차분모형 및 기초통계분석으로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강건성(robustness) 검토를 추가함
 - 이러한 실증 분석에서는 강건성 검토가 필수적인데,
 - 이는 추정결과가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을 통해 결과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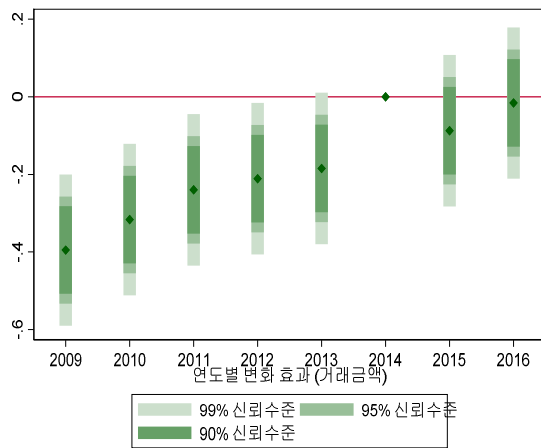
- 강건성 검토는 사건분석(event study)을 통해 살펴봄
 - 사건분석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2013년 변화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함
 - 즉, 2017년과 2018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분석기간을 2009년에서 2016년으로 좁혀서 분석함
 - 조세지원 규모의 단가 변화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013년에 그 변화 폭이 가장 큰 수준이었음
 - 따라서 2013년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건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식 III-3>은 사건분석의 기본적인 모형이며,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의 변화 추이가 2013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봄

$$\ln(\text{거래금액 혹은 거래건수}_{st}) = \sum_{d=-4}^3 \tau_{it}^d \cdot \beta_d + T_t + X_i + \epsilon_{it} \quad (\text{식 III-3})$$

- <식 III-3>에서 t 는 연도를 의미하며, d 는 제도 변화 시점인 2013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임
- 즉 분석 표본의 첫 번째 해인 2009년의 d 는 2013년으로부터 떨어진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d 는 -4의 값을 부여받음
- τ_{st}^d 는 사건 연도(event year)를 지시하는 지시변수(indicator)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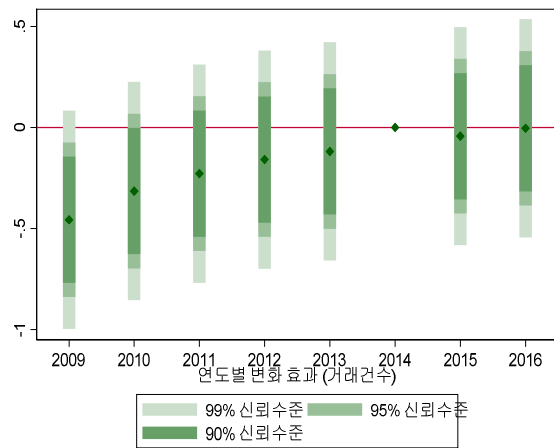
- 사건분석 결과는 그래프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그 결과는 [그림 III-10]과 [그림 III-11]에 제시되어 있음
 -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점은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에 미치는 영향(효과)을 의미하며, 점 주변의 사각형(bar)은 효과 추정치의 신뢰구간을 보여줌
 - 제시된 효과는 2014년과 비교하여 각 연도별 효과의 크기를 보여줌
 - 2014년을 기준연도로 잡은 이유는 2013년에 조세지원 단가가 변경이 되면서 효과는 2014년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분석결과 조세지원 단가 변경이 있기 전에는 거래금액이 유의미하게 작은 경향이 있었으며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분석의 핵심은 조세단가 변경 후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인데, 효과의 추세를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조세지원 정책이 현금영수증 거래금액 및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이는 조세지원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현금영수증 거래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줌

[그림 III-10] 거래금액 효과 추이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1] 거래건수 효과 추이



자료: 저자 작성

- <표 III-12>~<표 III-23>의 결과와 강건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지원 단가의 변화를 통한 조세지출 규모의 감면은 현금영수증 거래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
 - 이는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줌

- 첫 번째, 동 제도의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거래가 이미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규모의 미세한 변화는 현금영수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
-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동 제도의 도입은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에 상당히 많은 부분 기여했음을 추측해볼 수 있음
- 두 번째, 추후 정책 시사점과 관련하여, 동 제도와 관련한 조세지출 규모의 축소 혹은 변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지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편익은 이미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의 도입이 요구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 장인 타당성 분석에서 수행함

3. 소결

- 본 장에서는 동 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수행함
 -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함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
 - 이중차분모형과 사건분석을 통한 제도 단가 변화의 효과성 평가
 -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임
 - 첫째,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금영수증제도가 잘 정착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며,
 - 둘째,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금영수증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단가가 조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지원규모의 축소가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고자 했음
 - 분석결과, 동 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 조세지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음
- 본 장의 효과성 평가는 주어진 자료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함

-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추정할 때 사용한 가정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은 분석의 한계점임
 - 또한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은 현금영수증 거래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제공된다면 더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추정치에 편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관련한 효과를 분석했으나, 제도의 변화가 없어서 소득 공제와 관련한 효과를 분석하지 못함
 - 다만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정책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는 다음 장의 설문조사 결과와 설문조사 자료분석을 통해 살펴봄
- 한계점으로 인해 추정치에 편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 제도가 현금영수증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은 정확하다고 판단되며, 제도 변화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보다 더 신뢰성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IV. 타당성 분석



IV.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가. 정책 목적의 적절성

- 2005년 1월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의 일환으로 현금을 통한 B2C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근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²⁾
 - 또한 현금거래 내역을 즉각적으로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매일 전송함으로써, 세원관리의 즉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동 조세특례는, 사업자에게는 결제정보처리 수수료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 설치비 등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가맹점에는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비용을 보전해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 현금영수증제도의 궁극적인 정책 목적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와,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 확보는 정책 목적으로 적절함
-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
 - 자영업자의 소득은 현금거래의 경우 과세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해 파악하기 어려움
 - 대체로 연구들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을 과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Spiro, 1996; Ilan, 2012 등), 이로 인하여 소득이 드러나는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국회예산정책처(2005), 김재진·황국재(2017), 이태석 외(2017),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 검색일자: 2020. 4. 7.)의 조문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함

- 같은 (수준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세액이 다른 것은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과세 정당성을 훼손하고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과세 형평성 제고는 정부의 정책 목적으로 적절하며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음

□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 확보

- 정부 지출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부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
- 정부는 여러 재정사업을 위하여 적절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지출은 세금을 통하여 확보할 수밖에 없음
- 세수 확보는 정부 존재 이유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이는 과세제도의 정통성, 형평성, 효과성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을 전제를 하며,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 확보라는 동 조세특례의 정책 목적은 정부의 정책 목적으로 적절함

□ 위 최종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인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세원관리의 즉시성과 효율성 제고 역시 정책 목적으로 적절함

□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지하경제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측됨
 - 캐나다의 경우 1993년 기준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8~11% 수준으로 추정됨(Spiro, 1996)
 -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보다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Fuest and Riedel, 2009), Cobham(2005)의 연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조세탈루 규모는 2,8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지하경제는 경제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지하경제는 경제의 활성화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탈세를 위한 노력에 많은 자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어 그 효율이 낮음
 - 다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Choi and Thum, 2005) 지하경제의 존재는 정부(혹은 관료)가 경제를 왜곡하는 행위를 자행할 경우 경제주체들이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시장왜곡 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도 존재함
 - 따라서 정부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함께 경제 왜곡행위 역시 자제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간 목표로의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역시 정부의 정책 목표로 적절함

□ 세원관리의 즉시성과 효율성 제고

- 세원관리의 즉시성과 효율성 제고는, 세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의 효율성을 높여 납세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함
- 따라서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 확보의 중간 목표로서 세원관리의 즉시성과 효율성 제고는 정부의 정책 목적으로 정적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세특례제도는 과세특례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책 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책 목적이 적절함에 따라 동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목적 역시 적절함

나. 정부 개입의 적절성

- 동 조세특례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과세특례의 형태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여 세액공제의 형태로 현금영수증사업자와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비록 궁극적인 정책 목적이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운영을 위하여 도입된 본 과세특례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통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최종적인 정책 목적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와,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 확보와, 중간 목표인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세원관리의 즉시성과 효율성 제고는 모두 과세 행위라는 필연적으로 정부와 연관된 행위임
- 따라서 과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시정하고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의 양성화라는 목적은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과 국민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세원관리의 즉시성과 효율성 제고는 정부 세무행정과 원활한 예산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정부 개입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적절함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가. 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사업자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지칭함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등과 같은 현금결제 관련 세부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절차를 거침
 - ① 물품 구매 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 ②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
 -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 ④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1일 1회), 국세청에서 카드정보를 기초로 현금영수증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변환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며,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이 과정 중 ③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승인하고 이 정보를 수집하여 ⑤ 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함

[그림 IV-1] 현금결제 흐름도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Idx=1003000000&tm3Idx=1003000000, 검색일자: 2020. 5. 28.

- 김재진·황국재(2017)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으로 인하여 전표비용, 전산운영 비용, 사업운영 비용, 기타 비용 등이 발생함
 - 이 비용은 사업형태(VAN 사업자, POS시스템 운영사업자, 적립식카드사, 은행계좌이체중개사, 기타 등), 가동률, 연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반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세액공제 이외에는 뚜렷한 수익창출 방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건당 세액공제 규모가 컸던 2010년 무렵에는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불한 것으로 보임³⁾
- 한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과세특례를 제한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비용을 가맹점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됨
 - 가맹점에 건당 수수료를 부과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서비스 사용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예측됨
 -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저항과 사회적인 논란이 가열될 수 있음
- 따라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원가 보전 및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를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 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지칭함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크게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비자상대업종의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할 의무가 있고, 의무발행업종의 가맹점은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3) 이데일리, 「(현금영수증 리베이트) ① 세금이 샌다..구멍은 어디?」, 2020. 10. 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593134232&mediaCodeNo=257>, 검색일자: 2020. 6. 22.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아울러,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2008년 1월 1일 조세특례에 추가되었으며,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판단됨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건당 공제 한도는 건당 20원으로 이후 변화 없이 적용됨
- 이러한 혜택은 특히 2008년 7월 1일,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이 기존의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에서 건당 1원 이상의 거래로 확대되면서 가맹점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초기 소액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요청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이렇듯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본 조세특례의 정책 대상이 되는 것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된 현 시점에서 혜택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현 시점 역시 도입 초기와 마찬가지로, 소액거래를 비롯한 현금거래 전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유도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도입 초기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공제 제도가 현금영수증 발행 유인을 제공하는지는 의문스러움

- 우선 현 시점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세공제제도가 주요한 현금영수증 발행 유인이 되기에는 혜택이 너무 적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소득세 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67억원, 2018년 50억원 규모로 매우 미미함
 - 2017년 320만개, 2018년 334만개에 달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받는 혜택으로는 가맹점당 지원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매출 중 현금거래의 비중이 20%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이 93.5%에 달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할지라도 볼 수 있는 잠재적 혜택 규모 자체가 미미함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현금영수증가맹점들은 조세특례 혜택이 소액거래 및 전체 현금영수증 발행에 있어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 본 설문에 참여한 가맹점 중 96.8%는 전화망을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대부분의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 중 74.2%의 가맹점이 총현금거래 80% 이상의 비율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응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이들 중 78.7%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로 소비자의 요구를 이유로 들었고, 21.3%는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답함
 - 소득세 및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답한 가맹점의 비율은 0%로 나타남
 - 심지어 가맹점 중 68.4%는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를 실행한 가맹점의 비율은 14.3%에 불과함

- 즉 현금영수증가맹점 중 소득세 공제가 현금영수증 발행 유인이라고 응답한 사업자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약 68.4%의 사업자는 공제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과세특례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유인이 된다고 말할 수 없음

- 본 설문에 의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현금영수증 발행의 유인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보았듯 현금영수증가맹점 중 대부분은 소비자 요구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설문조사 결과 현금영수증가맹점과는 다르게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현금영수증 발행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응답함
 -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중 89.8%는 근로자 소득공제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소비자의 75.3%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현금영수증 발급횟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함
 - 이는 최근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인 79.8%와 거의 동일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소비자 중 87.2%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여,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7.8%)와 가계부, 지출내역 등 정리를 위하여(5.0%) 발급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최소금액으로는 1천원 미만인 11.6%, 1천~5천원 미만이 39.2%, 5천~1만원 미만이 23.2%, 1만원 이상이 26.0%로, 과반수의 소비자는 5천원 이하의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현금영수증 발행 유인으로서의 역할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오히려 의무발급 의무 지정 및 의무발급업종 선정을 통한 법 규정 정비 및 선전이 현금영수증 발행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됨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설문조사 결과 법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행 이유의 응답률은 높았으며(21.3%), “소비자의 요구로 인하여”라고 응답한 사업자(78.7%) 역시 소비자 요구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됨
 -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처벌 수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에 달해, 대체로 현 과태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소액거래 관련 소득공제가, 자진발급제도의 정착 및 유지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법정 의무 또는 소비자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신고하려는 자진 신고 유인으로 는 유력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가 축소될 경우 자진신고 비율이 감소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진 신고 제도는 일명 “쪼개기”로 불리는 자진신고 분에 대한 건수 분할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하는 부작용 역시 유도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축소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있음
 - 아울러, 이후 검토할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제도 역시 현금영수 증에 대한 자진신고 유인을 제공하고 있어, 자진신고 축소 효과가 미미할 가 능성도 다분함

-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유인이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원가보전 차원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음

- 그러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액거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보전을 해줄 이유 역시 없음
 - 현 시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전화망을 통해 매우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어, 발행 주체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추가적인 비 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수수료도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따로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동 조세특례의 지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제도 도입 초기에 정 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나, 제도가 충분히 정착된 현 시점에서는 실효성과 정당성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지원 대상으로 유지하기에 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정책수단(지원방식)의 적절성

- 동 과세특례 제도가 정책수단으로써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 특례와 나아가 현금영수증제도 전반의 정착 과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 과정⁴⁾

- 김재진·황국재(2017)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04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도입 초기에도 이러한 홍보를 이어나갔음
 -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영상 및 홍보물을 전달하였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도안 공모 등을 통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
 - 제도를 시행한 2005년에도 연간 13회에 걸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제도를 소개하고, 대중매체, 온라인 홍보, 소비자 직접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지속함
 - 전국 688개 지역에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총 1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홍보 전단을 배포함
 - 현금영수증 홍보창구의 설치운영,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쇄물 배포, 이벤트 진행 등의 직접 홍보와 함께 TV 및 라디오광고, 신문광고, 드라마 PPL광고, 여성청소년 대상 월간지 광고, 지하철 PPL 광고, 전국 113개 옥외전광판 광고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함
 -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우편으로 정책홍보 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고, SMS 문자 발송, 지방자치단체의 반상회보에 게재, 업무용 건물에 홍보포스터 설치, 급여성세서에 현금영수증 홍보문 삽입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소비자층에 현금영수증제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함

4) 김재진·황국재(2017)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추가함

-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제도를 인지하고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발급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실시함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활히 발행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기를 권장하며 발급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를 받도록 제도적·행정적 발판을 마련하고 시행함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단말기나 POS 장치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부착해야 하므로, 이를 취급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쉽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발함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부착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부터 설치되도록 계획하여 2004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확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날 이후 신규 설치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되어 보급되도록 함
- 제도 홍보와 가맹점 확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 현금영수증 발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하여 발급이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함
 -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지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발급 거부 신고배너,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센터,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유선신고, 세무관서 신고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함
 - 발급거부 신고가 접수되면 가맹점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2회 이상 신고될 경우 사업장 현황조서, 과세자료 우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함
- 현금영수증발급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보급하여 해당 카드가 있을 경우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신분 인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복권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 정착을 도모함

- 도입 이후 2007년부터 제도 확립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됨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요청이 없이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조치함
 -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 대상이 지정되어 해당 사업자의 경우 요건이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 가입하게 함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
 -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10년 도입) 제도와 다름
 -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도입하여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함
 - 2009년부터 전 업종으로 신고 대상 확대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여 발급거부 건 신고 시 건당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
 - 도입 초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09년 개정으로 거부 금액의 20%(최소 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변경함

- 2008년에는 5천원이었던 발급제한 금액 기준이 폐지되어, 1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소비자 요청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에는 성실사업자(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가 신설됨

- 2010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정하여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지정하였으며,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조문도 신설함
 - 도입 초기 32개 업종에 한하여 시행하였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업종을 확대함
 -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도 이후 점차 지급 한도를 인하하는 등 제재를 완화함

- 2011년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여, 미부착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2012년에는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제도를 법제화하고 현금영수증 전화발급 방법을 도입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들이 도입되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기한을 연장하였음
- 2013년부터는 기존 제도의 일몰 연장 및 부가가치세 공제한도 하향 등 일부 변경사항만 적용되며 큰 변화 없이 제도가 유지됨

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운영실적

- 앞서 제II장의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현황의 2절 현황 및 기초통계분석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듯이 위와 같은 일련의 노력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음
- 본 장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기초통계를 살펴보고자 함
- <표 IV-1>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현황이 정리되어 있음
 - 현금영수증 전체 가입자수는 2005년 114만명에서 2018년 334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가입지정자의 가입 비율은 2007년 이후 98%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거의 모든 가입 대상자는 실제로 가입함
 - 의무가입 외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 161만명 수준으로 가입지정자 중 가입자의 수인 173만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그림 IV-2] 참조)

<표 IV-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가입자수	가입지정자			가입의무 외 가입자
		가입지정자	가입자	가입 비율	
	(1=3+5)	(2)	(3)	(4=3/2)	(5)
2005	1,144,193	1,219,345	931,942	76.4	212,251
2006	1,401,111	651,115	548,541	84.2	855,570
2007	1,725,485	821,492	810,983	98.7	914,502
2008	1,918,681	880,298	860,906	97.8	1,057,775
2009	2,118,586	966,983	948,091	98	1,170,495
2010	2,290,230	1,010,172	996,589	98.7	1,293,641
2011	2,397,840	1,055,048	1,041,436	98.7	1,356,404
2012	2,464,874	1,124,314	1,107,823	98.5	1,357,051
2013	2,702,929	1,570,860	1,548,908	98.6	1,154,021
2014	2,827,007	1,452,242	1,434,783	98.8	1,392,224
2015	2,931,193	1,505,622	1,484,563	98.6	1,446,630
2016	3,044,761	1,574,017	1,554,014	98.7	1,490,747
2017	3,197,310	1,666,513	1,643,182	98.6	1,554,128
2018	3,340,699	1,757,412	1,729,505	98.4	1,611,194

- 주: 1. 전체 가입자수는 해당 연도 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한 전체 사업자수임(계속사업자 기준)
 2. 가입지정자는 소매업,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종과 같이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전체 가입자수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기준이며, 가입지정자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 외 부업종코드를 포함하여 지정함
 3. 가입의무 외 가입자는 가입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V-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비중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V-2> 납세자 유형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개인)

(단위: 명, %)

연도	전체 가입자수	가입지정자			가입의무 외 가입자
		가입지정자	가입자	가입 비율	
2006	1,312,518	598,170	517,089	86.4	795,429
2007	1,611,674	768,888	758,989	98.7	852,685
2008	1,771,022	780,222	770,403	98.7	1,000,619
2009	1,942,548	850,172	840,242	98.8	1,102,306
2010	2,092,091	885,533	877,529	99.1	1,214,562
2011	2,179,836	923,365	915,069	99.1	1,264,767
2012	2,237,249	974,932	966,615	99.1	1,270,634
2013	2,431,932	1,399,015	1,382,141	98.8	1,049,791
2014	2,536,847	1,276,645	1,263,137	98.9	1,273,710
2015	2,620,375	1,285,486	1,272,503	99.0	1,347,872
2016	2,711,568	1,346,667	1,335,032	99.1	1,376,536
2017	2,835,314	1,444,776	1,428,883	98.9	1,406,431
2018	2,951,445	1,518,800	1,499,244	98.7	1,452,20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V-3> 납세자 유형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법인)

(단위: 명, %)

연도	전체 가입자수	가입지정자			가입의무 외 가입자
		가입지정자	가입자	가입 비율	
2006	88,593	52,945	31,452	59.4	57,141
2007	113,811	52,604	51,994	98.8	61,817
2008	147,659	100,076	90,503	90.4	57,156
2009	176,038	116,811	107,849	92.3	68,189
2010	198,139	124,639	119,060	95.5	79,079
2011	218,004	131,683	126,367	96	91,637
2012	227,625	149,382	141,208	94.5	86,417
2013	270,997	171,845	166,767	97	104,230
2014	290,160	175,597	171,646	97.7	118,514
2015	310,818	220,136	212,060	96.3	98,758
2016	333,193	227,350	218,982	96.3	114,211
2017	361,996	221,737	214,299	96.6	147,697
2018	389,254	238,612	230,261	96.5	158,99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V-3] 납세자 유형별 현금영수증가맹점 현황 비중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표 IV-2>와 <표 IV-3>에는 납세자 유형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현황이 정리되어 있음
 - 대부분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는 개인으로, 그 비율이 90% 내외로 나타남 ([그림 IV-3] 참조)
- 앞서 살펴본 현금영수증제도 정착 노력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발급금액과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다. 기초통계자료를 통한 정책 목표 달성 현황 파악

- 본 절에서는 제Ⅲ장에서 살펴본 효과성 분석에 더해 동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세수 변화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함

1) 세수 추이

- 우선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 IV-4> 참조)

- 부가가치세 신고 총인원은 2006년 약 426만명에서 2018년 64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법인의 수는 2006년 42만개에서 2018년 85만개로 증가
-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384만명에서 2018년 563만명으로 증가
 - 이 중 일반 개인사업자는 221만명에서 2018년 407만명으로 증가
 - 반면,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는 2006년 162만명에서 2018년 156만명으로 소폭 감소함

<표 IV-4>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

(단위: 명, %)

연도	계		법인		일반(개인)		간이(개인)	
	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 대비 증감률
2006	4,260,946	3.3	420,154	4.9	2,216,802	4.6	1,623,990	1.3
2007	4,601,534	8	456,019	8.5	2,385,687	7.6	1,759,828	8.4
2008	4,901,772	6.5	489,997	7.5	2,573,515	7.9	1,838,260	4.5
2009	5,124,077	4.5	519,455	6	2,741,195	6.5	1,863,427	1.4
2010	5,239,103	2.2	536,232	3.2	2,874,770	4.9	1,828,101	-1.9
2011	5,360,511	2.3	562,716	4.9	3,035,446	5.6	1,762,349	-3.6
2012	5,385,132	0.5	591,701	5.2	3,112,775	2.5	1,680,656	-4.6
2013	5,609,470	4.2	621,260	5	3,209,199	3.1	1,779,011	5.9
2014	5,623,792	0.3	654,013	5.3	3,297,704	2.8	1,672,075	-6
2015	5,837,775	3.8	705,581	7.9	3,472,032	5.3	1,660,162	-0.7
2016	6,085,025	4.2	754,335	6.9	3,678,331	5.9	1,652,359	-0.5
2017	6,347,311	4.3	800,138	6.1	3,900,526	6.0	1,646,647	-0.3
2018	6,478,314	2.1	846,823	5.8	4,068,351	4.3	1,563,140	-5.1
연평균 증가율	2006~2010	4.9	6.0	6.3	2.7			
	2011~2015	2.2	5.7	3.9	-1.8			
	2016~2018	3.5	6.3	5.4	-2.0			

주: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의 신고인원은 2기 신고인원 기준임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 추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의 증가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역시 꾸준하게 증가함(<표 IV-5>, [그림 IV-4] 참조)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2006년 약 2,421조원에서 2018년 4,97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 법인의 과세표준 금액은 2006년 2,015조원에서 2018년 4,237조원으로 증가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406조원에서 2018년 740조원으로 증가
 - 일반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380조원에서 2018년 709조원으로 증가
 -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2006년 26조원에서 2018년 31조원으로 증가

<표 IV-5>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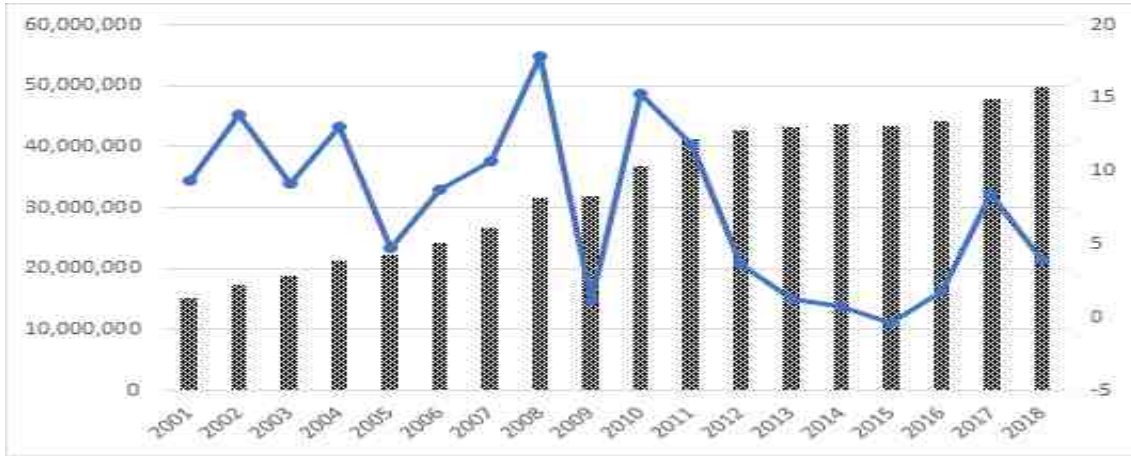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연도	계		법인		일반(개인)		간이(개인)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2006	24,207,198	8.7	20,145,075	8.4	3,800,085	9.8	262,039	8.6
2007	26,798,665	10.7	22,317,804	10.8	4,185,224	10.1	295,636	12.8
2008	31,607,385	17.9	26,619,619	19.3	4,685,289	11.9	302,477	2.3
2009	31,982,653	1.2	26,928,137	1.2	4,759,891	1.6	294,625	-2.6
2010	36,870,281	15.3	31,179,374	15.8	5,400,707	13.5	290,200	-1.5
2011	41,227,426	11.8	34,980,872	12.2	5,958,156	10.3	288,397	-0.6
2012	42,719,287	3.6	36,459,903	4.2	5,979,973	0.4	279,412	-3.1
2013	43,260,001	1.3	36,919,133	1.3	6,071,172	1.5	269,696	44,199,791
2014	43,574,847	0.7	37,117,340	0.5	6,151,018	1.3	306,489	43,260,001
2015	43,416,172	-0.4	36,794,710	-0.9	6,312,332	2.6	309,131	36,870,281
2016	44,199,791	1.8	37,337,269	1.5	6,548,389	3.7	314,134	26,798,665
2017	47,909,978	8.4	40,690,043	9.0	6,898,195	5.3	321,740	21,280,857
2018	49,767,780	3.9	42,366,984	4.1	7,087,128	2.7	313,668	15,153,891
연평균 증가율	2006~2010	10.8		11.1		9.4		3.9
	2011~2015	3.4		3.5		3.2		1.5
	2016~2018	4.7		4.9		3.9		0.5

주: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의 신고 금액은 2기 신고금액 기준임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 추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V-4]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 추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과 과세표준 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실적 역시 2006년 38조원 수준에서 2018년 79조원으로 크게 증가함(<표 IV-6>, [그림 IV-5] 참조)

<표 IV-6> 부가가치세 징수실적

(단위: 억원, %)

연도	합계	전년 대비 증감률	국내분 실세수	전년 대비 증감률	수입분	전년 대비 증감률
2006	380,929	5.5	118,139	-5.6	262,790	11.3
2007	409,419	7.5	122,902	4.0	286,517	9.0
2008	438,198	7.0	52,398	-57.4	385,800	34.7
2009	469,915	7.2	126,276	141.0	343,639	-10.9
2010	517,068	10.0	92,866	-26.5	424,202	23.4
2011	546,388	5.7	41,632	-55.2	504,756	19.0
2012	585,976	7.2	65,805	58.1	520,171	3.1
2013	589,080	0.5	79,503	20.8	509,577	-2.0
2014	642,010	9.0	152,585	91.9	489,425	-4.0
2015	608,529	-5.2	191,077	25.2	417,452	-14.7
2016	694,699	14.2	304,566	59.4	390,133	-6.5
2017	753,787	8.5	297,187	-2.4	456,600	17.0
2018	786,618	4.4	284,087	-4.4	502,531	10.1
연평균 증가율	2006~2010	7.4		11.1		13.5
	2011~2015	3.4		28.2		0.3
	2016~2018	9.0		17.5		6.9

주: 과세기간에 따른 신고세액이 아니며, 각 회계연도에 징수, 환급된 세액임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 추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V-5] 부가가치세 징수실적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 추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또한 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와 간이과세 대상자의 비율 역시 꾸준히 감소하여 과세베이스가 넓어짐
 - 2006년 69%에 불과하였던 납부인원 비율은 2018년 81%까지 증가함
 - 간이과세 대상자 비율 역시 2006년 38%에서 2018년 24%로 크게 감소함

[그림 IV-6] 과세인원 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추세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 추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V-7> 과세인원 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추세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A)	납부의무 면제자 (B)	납부인원 (C=A-B)	납부인원 비율 (D=C/A)	간이과세자 (E)	간이과세자 비율 (F=E/A)	
2006	4,261	1,295	2,965	69.6	1,624	38.1	
2007	4,602	1,307	3,295	71.6	1,760	38.2	
2008	4,902	1,478	3,424	69.9	1,838	37.5	
2009	5,124	1,525	3,600	70.2	1,863	36.4	
2010	5,239	1,425	3,814	72.8	1,828	34.9	
2011	5,361	1,370	3,991	74.4	1,762	32.9	
2012	5,385	1,297	4,088	75.9	1,681	31.2	
2013	5,609	1,345	4,264	76.0	1,779	31.7	
2014	5,624	1,261	4,363	77.6	1,672	29.7	
2015	5,838	1,164	4,674	80.1	1,660	28.4	
2016	6,085	1,208	4,877	80.1	1,652	27.2	
2017	6,347	1,198	5,149	81.1	1,647	25.9	
2018	6,478	1,239	5,239	80.9	1,563	24.1	
연평균 증가율	2001~ 2005	4.1	-1.3	12.1	3.0	-0.6	-4.6
	2006~ 2010	4.9	1.6	7.1	1.7	2.7	-2.1
	2011~ 2015	2.2	-3.9	4.2	1.9	-1.8	-4.0
	2016~ 2018	3.5	2.1	3.9	0.3	-2.0	-5.3

주: 1. 납부의무 면제자는 간이과세자 중 한 과세기간에 매출 과세표준이 2012년까지는 1,200만원 미만, 2017년까지는 2,400만원 미만, 2018년부터(2019.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는 3,000만원 미만인 자를 말함

2. 2013. 1. 1. 이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 1.~12. 31.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횟수가 1회로 축소되어 2013년 이후 납부면제자 현황은 제2기에 모두 기재함

3. 납부인원은 총사업자수에서 납부의무 면제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자진 납부인원임

자료: 김재진·황국제(2017)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 추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현금거래 투명성의 제고 및 과세 표준 양성화 효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기간 동안 꾸준히 부가가치세수와 납부인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석결과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과표 양성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현금영수증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음
 - 분석결과 현금영수증제도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정도는 2015년 26.2조원, 2016년 26.9조원, 2017년 기준 28.5조원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된 총세수는 2015년 4.8조~5.9조원, 2016년 5.9조~7.1조원, 2017년 6.3조~7.5조원으로 나타나, 총세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단 이러한 분석은 정확한 식별(identification)을 통해 나온 수치가 아니고, 추세를 바탕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과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과표 양성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라. 요소별 정책 운영방식의 적절성

1) 세액공제 방식의 적절성

- 본 과세특례는 세액공제 방식을 통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지원함
 - 조세지원을 통하여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며, 납세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 역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방식을 통한 지원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특례 방식은 효율성, 형평성 및 즉시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세금을 걷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이 아닌, 세액공제 방식을 통한 지원을 통하여 납세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조세특례 방식은 납부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태 왜곡을 유발하는 과세(distortionary tax)로 인한 행태 변화를 완화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임
 - 세액공제 형태의 지원은 지원 대상 행위와 지원을 손쉽게 연관 지을 수 있어 지원의 효율성, 지원제도 운영의 투명성, 지원규모의 형평성 역시 담보하기 쉬울 수 있음

- 지원 대상의 관점에서 납세 후 한참 후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의 시간 가치가 감소하여 지원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공제되는 방식의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따라서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방식 자체는 바람직한 지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제도의 정책 목적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제 형태의 적절성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공제제도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거래 처리 건당 부가가치세 공제를 함
 - 이에 따라 금액이 아닌 건당 공제방식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공제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필수 주체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제도 운영비용의 원가 보전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관련 사업 운영비용은 전표비용, 전산운영 비용, 사업운영 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비용은 금액이 아닌 처리 건수에 일정 정도 비례하여 발생함
 - 또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초기에는 설비투자 비용을 비롯한 여러 초기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제도가 정착된지 오래된 현 시점에서는 일정한 운영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김재진·황국재, 2017)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운영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건당 지원을 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현금영수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10개의 현금영수증사업자의 2015~2019년 사이의 연평균 총부가가치세 공제금액인 61억원 중 본 제도로 인한 공제세액이 18억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공제금액의 30%를 차지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세 공제제도는 5천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하여 건당 20원의 소득세를 공제함
 - 이에 따라 5천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한하여 소득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금액이 아닌 건당 공제방식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소액거래 현금영수증 공제제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금액을 5천원 이상에서 1원 이상으로 낮추는 제도와 보조를 맞춰 도입된 것으로 생각됨
 -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소액거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현금영수증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된 현 시점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액거래에 대한 특별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비용 역시 발생하는 바가 없음
 - 또한 소비자 역시 소액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중 50.8%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최소금액을 5천원 이하로 밝혀, 소액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충분한 유인이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도의 변화를 통한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2) 건당 공제금액

- 본 「조세특례법」에 따른 결제건당 공제 한도는 꾸준히 인하됨
 - 이에 따른 국세청 고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세액공제 단가는 2004년 종이 받

금의 경우 22원, 온라인 발급의 경우 15.4원에서 2019년 7월 종이 발급 기준 9.4원, 온라인 발급 시 8.4원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됨

- 건당 공제금액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김재진·황국재(2017)가 2017년 수행한 국제청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진행함
 - 김재진·황국재(2017)는 22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2012~201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사업에 따른 원가추정 작업을 수행함
 - 이는 김재진(2012)이 수행한 유사한 연구를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시기에 맞게 수행한 연구임
 - 이를 제외하고는 본 평가에 함의가 있는 건당 적정 공제금액에 대한 연구 및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움

- 김재진·황국재(2017)의 분석결과 현금영수증사업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고정비용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실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보고한 변동비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재진·황국재(2017)는 변동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와 데이터 처리비용 및 전표비용이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비용을 0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제시함
 - 따라서 위 연구에서 추정한 건당 비용은, 실질적으로 고정운영 비용을 건당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 고정운영 비용을 건당 비용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김재진·황국재(2017)는 적정 가동률의 개념을 차용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들의 평균 가동률을 주로 사용함
 - 따라서 건당 비용을 추정하는 데 있어 활용하는 가동률의 값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적정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함

- <표 IV-8>은 김재진·황국재(2017)의 가동률에 따른 추정 원가를 나타내고 있음
 - 변동비=0으로 표시된 행은 변동비가 없다고 가정한 건당 비용이며, 변동비=전표비용 으로 표시된 결과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보고한 변동비용을 차용하였을 때의 건당 추정 원가임
 - 두 경우 모두 고정운영 비용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건당 원가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처리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POS와 VAN사의 분석기간 가동률은 29.2%로 나타나 상당히 낮음
 - 기타 사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26%로 더 낮아짐
 - 이에 따라 건당 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소 높게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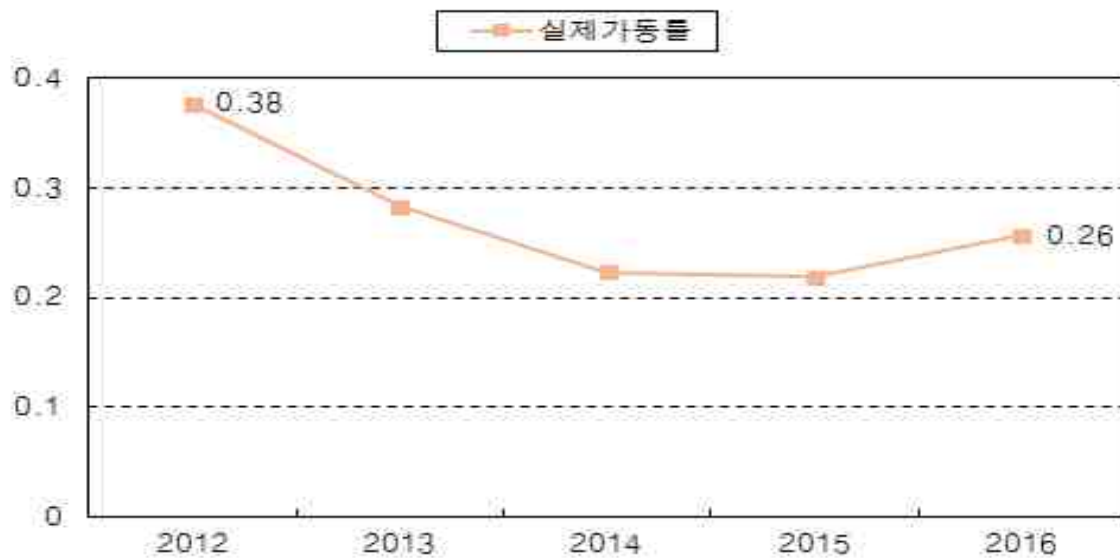
<표 IV-8> 계정분류분석법에 따라 산출된 건당 원가

사업형태 (건당 변동비)	가동률별 건당 원가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100%	
변동비=0	69.8	34.9	23.3	17.5	14.0	11.6	10.0	8.7	7.8	7.0	6.3	5.8	5.4	5.0	4.7	4.4	4.1	3.9	3.5	
POS와 VAN(0)	69.8	34.9	23.3	17.5	14.0	11.6	10.0	8.7	7.8	7.0	6.3	5.8	5.4	5.0	4.7	4.4	4.1	3.9	3.5	
변동비=전표비용																				
POS와 VAN(2.4)	52.8	27.6	19.2	15.0	12.5	10.8	9.6	8.7	8.0	7.4	7.0	6.6	6.3	6.0	5.8	5.6	5.4	5.2	4.9	
2012년 결과																				
POS와 VAN(3.8)				29.8		21.2		16.8		14.2		12.5		11.2		10.3		9.6	9.0	

주: 고정원가 산정 시 가동률을 고려하였음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 pp. 97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즉 사업자당 처리건수가 높아질수록 건당 비용은 감소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사업자당 처리건수 또는 가동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가능하지 않음
 - 다만 김재진·황국재(2017) 자료의 가동률 추이 및 원가 추세를 살펴볼 경우 가동률은 상승하고 원가는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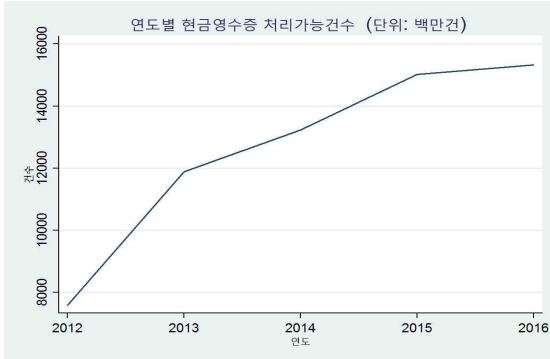
[그림 IV-7] 연도별 실제 가동률(실제 처리건수/최대 처리 가능건수)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 p.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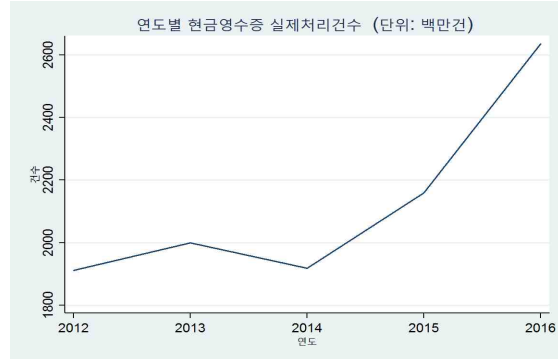
- [그림 IV-7]은 김재진·황국재(2017) 자료의 연도별 실제 가동률 추이를 나타나고 있음
 - 가동률은 2012년 38% 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14~2015년경에 최솟값을 기록한 이후 2016년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가동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
 - [그림 IV-8]은 김재진·황국재(2017) 자료를 바탕으로 가동률 계산에 활용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건수의 연도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2년 약 80억건에서 2016년 약 160억건으로 처리 가능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건당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연도별 실제 처리건수 역시 2012년 약 19억건에서 2016년 약 26억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경우, 건당 원가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사업장 실제 처리건수는 김재진·황국재(2017) 분석 당시에 비하여 월등하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건당 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가동률도 더 높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IV-8] 연도별 처리 가능건수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 <표 VII-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

[그림 IV-9] 연도별 실제 처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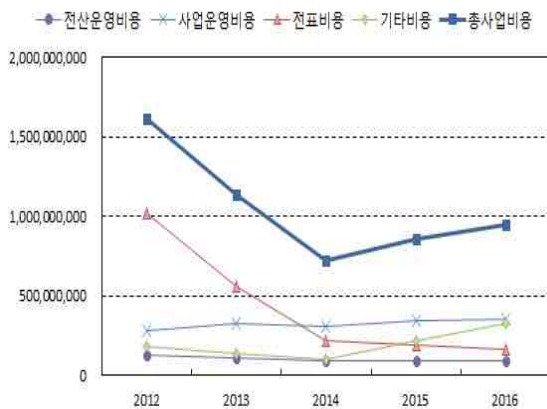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 <표 VII-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

- 김재진·황국재(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업자당 처리건수뿐만 아니라 구성항목별 원가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림 IV-10]은 김재진·황국재(2017)가 분석한 원가비용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총원가, 건당 원가, 그리고 각 원가 항목 모두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김재진·황국재(2017)는 원가 감소 추세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함
 - 전표비용의 연도별 감소는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이 열전사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서 기인함

[그림 IV-10] 원가 항목별 추이

<총원가>



<건당 원가>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 p. 109

- 건당 원가의 감소는 사업운영비, 즉 인건비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
- 또한 통신비, 데이터처리비, 종이비용 등의 항목이 하락하여 변동비용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

<표 IV-9> 평균 사업비용의 증감(POS와 VAN)

(단위: 원, %)

구분	2012년	2017년	증감
전산운영 비용	483,559,636	118,768,863	△364,790,774(75)
사업운영 비용	2,094,118,364	312,885,132	△1,781,233,231(85)
전표비용	572,535,273	424,375,635	△148,159,638(26)
기타비용	1,236,024,545	238,081,703	△997,942,843(81)
총사업비용	4,386,237,818	1,094,119,819	△3,292,117,999(75)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 p. 116

- 실제로 김재진·황국재(2017)의 분석에 따르면 전산운영 비용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무려 75%나 감소하였으며, 사업운영 비용과 기타비용 역시 각각 85%, 81% 감소함
 - 변동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표비용 조차 26% 감소하였는데, 이는 처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매우 급격한 감소임
 - 이러한 감소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건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총사업비용은 2012년 대비 75%나 감소함
- 김재진·황국재(2017)의 분석으로부터 3년이 추가적으로 지난 현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당 처리건수가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원가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공제 단가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건당 비용을 재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제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제 단가를 조정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원가 절감 노력 및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한편, 김재진·황국재(2017)가 지적했듯,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비용을 추정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분석방법의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연도별 분석의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이는 비용분석 자체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출하는 비용 자료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사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사업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수행되었던 분석들은 대체로 비용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마. 정책수단의 적절성 종합

- 현금영수증제도는 정착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정착 이후에는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표 양성화와 세수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등 조세특례제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소액거래에 대한 건당 공제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잘 정착되어 원활하게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건당 공제방식은 적절하나, 건당 공제금액은 지속적인 원가하락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재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4. 유사 중복 제도

- 앞서 관련 조세특례 현황에서 살펴보았듯, 본 제도는 그와 성격이 유사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갖고 도입된 정책이 여럿 존재함
 - 따라서 이러한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상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⁵⁾가, 본 과세특례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소액거래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소득세 면제제도와 그 성격이 유사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역시 과세표준 양성화 및 자영업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본 과세특례와 정책 목적이 유사함
 - 제도의 정책 대상 역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본 제도와 매우 흡사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는 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0%(2021년 12월 31일까지 1.3%)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본 제도와 지원방식이 유사함

- 따라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는 정책 목적, 정책 대상, 지원방식 모두, 본 조세특례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과 중복됨
 - 또한 소액거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건당 20원의 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인 본 제도보다 발행금액의 1.0%(1.3%)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면제해주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가 과세표준 양성화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유인을 제공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개별 건에 대한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유인으로서의 기능이 더 높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통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평균적인 부가가치세 공제금액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본 과세특례로부터 받은 평균적인 소득세 공제금액은 1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남
 - 개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도 전체로부터 누리는 지원혜택 역시 훨씬 커 본 과세특례제도에 비하여 제도 홍보가 잘 되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85.2%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공제제도에 대해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응답함
 - 이는 응답자의 31.6%만이 본 과세특례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한 것과는 큰 차이를 나타냄

5) 기획재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⁶⁾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 지원 대상이 본 과세특례와는 구분되나, 주요 정책 목적으로 과세표준 양성화가 있어 그 목적은 유사함
 - 이 제도는 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현금영수증 발행) 사용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을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⁷⁾는 주요 정책 목적이 과세표준 양성화일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제도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의 거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본 과세특례와 사실상 정책 목적과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 비슷함

- 설문조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본 과세특례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⁸⁾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설문조사 결과 현금영수증가맹점과는 다르게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현금영수증 발행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응답함
 -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중 89.8%는 근로자 소득공제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비자의 75.3%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현금영수증 발급횟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79.8%는 최근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⁹⁾는 널리 활용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음
 - 그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소비자 중 87.2%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여 실질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큰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본 과세특례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소액거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는 앞서 살펴본 두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 두 제도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6) 기획재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7) 기획재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8) 기획재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9) 기획재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 반면,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처리건당 부가가치세 공제제도는 유사·중복 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움

5. 소결

- (정부 역할의 적절성) 동 조세특례제도는 과세특례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책 목적 달성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책 목적이 적절함에 따라 동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목적 역시 적절함
 -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책 목적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와,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 확보는 정책 목적으로 적절함
 -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세원관리의 즉시성과 효율성 제고 역시 정책 목적으로 적절함
 - 나아가 위 정책 목적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 없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역시 적절함
- (지원 대상의 적절성) 동 조세특례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동 조세특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유인으로서는 약하다고 판단됨
 - 유인이 약한 원인은 설문조사 결과 많은 가맹점이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 이는 제 V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
- (정책수단의 적절성) 현금영수증제도는 정착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정착 이후에는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표양성화와 세수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함
 -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동 조세특례제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소액거래에 대한 건당 공제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잘 정착되어 원활하게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는 그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 장기적으로는 소액거래에 대한 지원방식을 조정하거나 유인이 적은 원인을 파악하여 추후 제도 이용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건당 공제방식은 적절하나 건당 공제금액은 지속적인 원가 하락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재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유사·중복 제도) 동 조세특례제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와 성격 및 정책 목표가 유사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충분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V. 제도 개선방안



V. 제도 개선방안

- 지금까지 동 제도의 효과성 평가와 타당성 평가를 기초통계, 계량모형 평가, 설문 조사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동 제도는 전반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며
 - 그동안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조세지원 단가를 낮춰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함
 - 다만 타당성 분석에서 검토했듯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소액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지원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개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장에서는 크게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추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려 함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건당 지원 단가 감소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현재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이유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건당 지원 단가의 감소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음
 - 현재보다 높았던 과거의 지원 단가 규모는 현금영수증사업자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리베이트 형식의 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한 방안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현금영수증 건당 지원 단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음
 - 효과성 평가에서도 검토했듯이, 이러한 지원 단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추후 지원 단가가 추가적으로 감소한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현금영수증제도를 뒷받침하는 기타 제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지원 단가의 감소가 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현금영수증발급 건당 단가를 추가적으로 감소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앞서 검토했듯이 감소규모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원가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재무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김재진·황국재(2017)의 비용 추정을 토대로 산출된 건당 원가 계산을 살펴보면 <표 V-1>과 같음
 - POS 및 VAN 운영사업자의 건당 원가는 2012년에 29.9원으로 추정이 되었으며, 2017년에는 12.0원으로 추정되었음

<표 V-1> 현금영수증 건당 원가

(단위: 원)

연도	유형	건당 원가
2012년	POS & VAN	29.9
2017년	전체(기타 포함)	19.51
	POS & VAN	12.0
	POS	7.2
	VAN	14.6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

- 또한 앞서 논의했듯이, 실질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들의 변동비용이 0에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2012~2016년 기준으로 POS시스템 운영사업자와 VAN사업자의 가동률 29.2%를 적용하면, 적정 원가는 11.6원에 해당하여(<표 IV-8> 참조) <표 V-1>에서 제시한 건당 원가(7.2~14.6원)의 범위에 포함됨

- 추가적인 단가 인하 가능성 및 그 규모에 대해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동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는 현재 자료 부족으로 불가능하므로, 추정을 통해 추가 단가 조정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음
- <표 V-2>는 POS와 VAN의 연도별 실제 처리건수 및 김재진·황국재(2017)에서 추정한 건당 원가를 보여줌
-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서 POS와 VAN이 처리하는 실제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들의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전체 현금영수증사업장 대상 공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한 가정이 아님
- 최대 처리 가능건수의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음을 고려하고(김재진·황국재, 2017), 총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대비 POS와 VAN의 총 실제 처리건수 비율이 <표 V-2>와 같은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 총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대비 POS와 VAN의 실제 처리건수 비율은 2014년에는 41%, 2015년에는 47%, 2016년에는 55%임
- 이러한 추세를 단순 선형 추세로 가정할 경우, 2018년에는 약 70% 정도로 가정할 수 있음

<표 V-2> 현금영수증 실제 처리건수(POS와 VAN) 및 건당 원가

(단위: 백만건, 원, %)

사업형태	연도	전체 영수증 발급건수(A)	실제 처리건수(B)	비율(B/A)	평균 건당 비용
POS	2012	5,257	186.9	3.5	11.05
	2013	5,227	537.9	10.3	10.38
	2014	5,192	1,112.9	21.4	5.28
	2015	5,046	1,345.1	26.7	6.86
	2016	5,025	1,745.1	34.7	6.37
VAN	2012	5,257	1,788.1	34.0	14.03
	2013	5,227	1,528.2	29.2	14.73
	2014	5,192	1,031.1	19.9	15.36
	2015	5,046	1,009.1	19.9	15.39
	2016	5,025	1,040.9	20.7	13.38

자료: 김재진·황국재(201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가공

- 2018년 기준 총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인 45억 3천만건의 70%가 실제 처리 건수라고 가정하면, 이는 POS와 VAN의 실제 처리건수가 약 31억 7천만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최대처리건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POS의 경우 약 31억 7,300만건, VAN의 경우 약 52억 500만건, 총 83억 7,800만건으로 추정됨
 - 이를 토대로 2018년 가동률(실제 처리건수/최대 발급건수)을 추정하면 약 37.9%가 추정됨
 - 만약 변동비용이 0에 수렴한다는 가정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 경우 추정되는 평균 단가는 약 9.25원으로 추정됨
 -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POS와 VAN의 실제 처리건수가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대비 더욱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균 단가는 추정된 9.25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 단가 조정의 여력을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면,
-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 현재 공제규모에 대한 평가 질문에 세액공제 규모가 작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였으나,
 - 현재 세액공제 규모가 비용을 보전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0%만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함
 - 또한 세액공제 규모를 추후 축소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60%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하여,
 - 이는 공제규모가 줄어들 경우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됨
 - 하지만, 설문조사의 응답은 현금영수증사업자들이 주관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고 오차(reporting error)를 감안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위의 응답을 해석해보면,
 - 공제단가가 조정된 지난 2013년, 2017년, 2018년 이후 설문 대상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납부세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단가 조정이 되더라도 사업의 규모나 지속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앞선 본 연구의 분석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설문 응답의 경우, 단가 조정에 의해 현금영수증사업자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원가 보전 이상 수준에서의 단가 조정이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거나 사업 운영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
-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가 조정의 여력은 있다고 판단됨
 - 구체적으로는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POS와 VAN의 실제 처리건수가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대비 더욱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균 단가는 추정된 9.25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원가의 산정이 재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토대로 추가 인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도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초기 비용 보전의 개념으로 지원규모를 설정한 후, 지속적인 지원규모의 감소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 지속적인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는 제도는 과감히 일몰을 설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되,
 - 지원규모의 추가적인 감소에 따른 제도의 안정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 신중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건수의 증가가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간의 사적 계약관계에 따른 경제적 유인 기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규모의 크기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제도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조세지원에 따른 잠재적 시장왜곡 등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현금영수증사업자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통한 자발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다음으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제도 인지 부족의 이유를 살펴 보려함

- 앞서 검토했듯이, 총 155개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모르는 가맹점이 68.4%, 알고 있는 곳은 31.6%에 불과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가 요구해서(78.7%)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차지함
-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어(85.2%) 대비가 되고 있음
- 제도의 현행 지원규모(건당 20원)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70.6%)
- 또한 현행 제도지원 기준인 소액 현금거래 5천원의 기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함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제도의 지원 수준 혹은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제도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있어 중요한 점이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설문조사 원시자료(raw data)를 토대로 제도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제도 인식에 대해 검토함

- <표 V-3>은 가맹점 특성별로 제도 인지 여부 분포를 나타냄
- 연도별로 매출이 많은 가맹점일수록 제도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매출이 적은 가맹점 역시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제도 미인지는 매출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표 V-4>는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가맹점들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줌
- 대부분이 제도를 알 기회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출이 클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대조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알 기회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점은 참고할 만함
 - 즉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소액거래 지원에 대한 홍보는 기타 유사 제도에 비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이 제도 인지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제로, 저자가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본 결과 소득공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106명의 가맹점 중에 89.6%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인지하고 있어 극명하게 대비됨
 - 이는 세액공제 자체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심도는 높으며 제도 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제도 활용에 대한 적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됨
- 실제로 현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대비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조세지출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제도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 V-5>는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동 제도의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규모를 비교하여 보여줌
 - 2013년에는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 총 발급건수는 약 20억 7천만건, 2014년에는 20억건, 2017년에는 약 24억 3천만건, 2018년에는 약 22억 2천만건이었던 반면,
 - 동 제도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0.3억원, 2015년 17억원, 2016년 37억원, 2017년 67억원, 2018년 50억원임
 - 단순 비교를 위해, 5천원 미만의 총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준으로 최대 가능 조세지출을 구하기 위해 건당 20원을 곱하면, B열에 제시되어 있듯이 2013년에는 약 414억원, 2014년에는 401억원, 2017년에는 486억원, 2018년에는 444억원임
 - 단순 비교이긴 하나, 5천원 미만의 총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를 기준으로 동 제도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조세지출이 증가할 여력이 충분하며, 조세지출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결과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 제도의 홍보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증가하면, 발급 증가에 따른 추가 세원 포착이 가능하게 되어 이러한 부분은 편익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와는 달리 지원 단가의 조정, 지원방식의 조정 등에 대한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 제도의 세부적인 변화 없이 제도의 홍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다만, 홍보를 통한 제도 이용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 세원 확보 탄력성 크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현금영수증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조세지원의 단가 조정 여력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 규모는 현재 추정치로 9.25월까지 낮춰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정확한 원가 산정이 필요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으로는 우선적으로 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다만 기타 비슷한 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할 수 있고,
 - 현재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 기존에 있었던 일몰 기한을 다시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하여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추후 제도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제도의 효과가 높게 평가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액 현금영수증 기준금액 상한 설정 등의 여부는 일몰 기한에 따른 효과성 평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V-3〉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공제제도 인지 여부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다	모른다	
전체	(155)	31.6	68.4	
산업분류	사업서비스업	(6)	66.7	33.3
	보건업	(41)	22.0	78.0
	숙박 및 음식점업	(60)	28.3	71.7
	교육 서비스업	(5)	80.0	20.0
	도매 및 소매업	(31)	35.5	64.5
	부동산업	(8)	37.5	62.5
	그 밖의 업종	(4)	25.0	75.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43.8	56.3
	1억~2억 미만	(49)	22.4	77.6
	2억~4억 미만	(52)	28.8	71.2
	4억 이상	(19)	42.1	57.9
	미개업	(3)	33.3	66.7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48.4	51.6
	1억~2억 미만	(56)	19.6	80.4
	2억~4억 미만	(47)	27.7	72.3
	4억 이상	(20)	50.0	50.0
	미개업	(1)	0.0	10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37.8	62.2
	1억~2억 미만	(52)	23.1	76.9
	2억~4억 미만	(45)	28.9	71.1
	4억 이상	(21)	47.6	52.4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49.0	51.0
	유지	(41)	39.0	61.0
	감소	(62)	12.9	87.1
	해당 없음	(1)	0.0	100.0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표 V-4>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공제제도 미인지 이유

(Base: 소득세 세액공제를 모르는 응답자, n: 106,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 기회가 없어서	사업특성상 5천원 미만 현금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법무/세무사가 전담해서	전화망 발급승인을 하지 않아서	
전체	(106)	42.5	34.0	13.2	9.4	0.9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2)	100.0	0.0	0.0	0.0	0.0
	보건업	(32)	40.6	28.1	15.6	15.6	0.0
	숙박 및 음식점업	(43)	44.2	32.6	11.6	11.6	0.0
	교육 서비스업	(1)	0.0	0.0	10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20)	45.0	40.0	10.0	0.0	5.0
	부동산업	(5)	20.0	80.0	0.0	0.0	0.0
	그 밖의 업종	(3)	33.3	33.3	33.3	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18)	33.3	55.6	11.1	0.0	0.0
	1억~2억 미만	(38)	44.7	26.3	18.4	10.5	0.0
	2억~4억 미만	(37)	45.9	32.4	5.4	13.5	2.7
	4억 이상	(11)	36.4	36.4	18.2	9.1	0.0
	미개업	(2)	50.0	0.0	50.0	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16)	31.3	56.3	12.5	0.0	0.0
	1억~2억 미만	(45)	44.4	26.7	20.0	8.9	0.0
	2억~4억 미만	(34)	44.1	35.3	2.9	14.7	2.9
	4억 이상	(10)	40.0	30.0	20.0	10.0	0.0
	미개업	(1)	100.0	0.0	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23)	39.1	43.5	13.0	4.3	0.0
	1억~2억 미만	(40)	42.5	27.5	20.0	10.0	0.0
	2억~4억 미만	(32)	46.9	34.4	3.1	12.5	3.1
	4억 이상	(11)	36.4	36.4	18.2	9.1	0.0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26)	23.1	42.3	26.9	7.7	0.0
	유지	(25)	60.0	28.0	12.0	0.0	0.0
	감소	(54)	42.6	33.3	7.4	14.8	1.9
	해당 없음	(1)	100.0	0.0	0.0	0.0	0.0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표 V-5>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및 조세지출 규모

(단위: 천건, 억원, %)

연도	소액 영수증 발급건수(A)	최대 가능 조세지출(B)	동 제도 조세지출 규모(C)	비율(C/B)
2013	2,068,062	413.6	0.3	0.07
2014	2,007,218	401.4	0.1	0.02
2015	1,593,228	318.6	17.0	5.34
2016	2,577,977	515.6	37.0	7.18
2017	2,430,082	486.0	67	13.79
2018	2,219,905	444.0	50	11.2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VI. 결론



Ⅵ. 결론

-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도입하였으며, 정책을 통해 과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 기초통계분석의 결과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 이를 통한 추가적인 세원 확보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본 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함
 - 효과성은 제도의 전반적인 비용효과분석, 기초통계분석과 계량모형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 타당성은 기존문헌 분석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검토함

- 비용 편익 분석결과 동 제도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편익과 비용 추정치를 비교하면, 1원의 조세지출은 2009년 약 1.63원에서 1.95원의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며, 2010년은 1.76~2.10원, 2011년은 1.62~1.94원, 2014년은 1.12~1.34원, 2017년은 1.56~1.86원으로 평가되어,
 - 전반적인 제도의 효과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제도의 지원 단가 조정의 효과도 검토한 결과, 추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입의 여지를 발견함
 -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조세지원 단가의 조정은 현금영수증 거래 및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 이는 제도의 변화, 즉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조세지원 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금영수증 거래건수에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함
 - 조세지원 단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의미이며, 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온 이유의 추가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추후 조세지원 단가를 추가적으로 감소할 여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감소하여도 정책 취지 달성에 영향이 없다면 조세지원 감소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됨
-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소액거래에 대한 건당 공제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잘 정착되어 원활하게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 장기적으로는 소액거래에 대한 지원방식을 조정하거나, 유인이 적은 원인을 파악하여 추후 제도 이용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건당 공제방식은 적절하나, 건당 공제금액은 지속적인 원가하락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재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거래 활성화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추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조세지원 단가는 추가 감소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추정결과 9.25원까지 단가를 조정하여도 정책효과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제도 인지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 홍보 등을 통한 노력이 요구되며,
 -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후 기존에 있던 일몰 기한을 다시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하여,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 1. 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보도자료, 2019. 12. 19.
- 국회예산정책처,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2005.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재진,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원, 2012.
- 김재진·황국재,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방법 및 적정금액 산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김종민, 「법인세 감세로 구멍난 세수, 소득세로 메웠다」, 김종민 의원실 보도자료, 2017. 3.,
- 성명재, 「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 면세의 누적효과 추정 및 면세 개선방안연구」, 『세무학 연구』, 30(3), 2013, pp. 189~223.
- 신영임·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2014.
- 이데일리, 「(현금영수증 리베이트) ① 세금이 샌다..구멍은 어디?」, 2020. 10. 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593134232&mediaCodeNo=257>, 검색일자: 2020. 6. 22.
- 이태석 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2016년도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각 연도.
- Choi, J. P., and Thum, M., “Corruption and the shadow econom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6(3), 2005, pp. 817~836.
- Cobham, A., “Tax evasion, tax avoidance and development finance,” *Queen Elizabeth House, Série documents de travail*, 129, 2005, pp. 1~20.
- Fuest, C., and Riedel, N., “Tax evasion, tax avoidance and tax expendi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port prepared for the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2009.

Ilan, B., "Taxing Cash," *Columbia Journal of Tax Law*, 4(65), 2012, pp. 65~93.
Spiro, P. S., "Monetary estimates of the underground economy: A critical evaluatio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9(Special Issue), 1996, pp. 171~175.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최종검색일자: 2020. 7.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종검색일자: 2020. 7. 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최종검색일자: 2020. 6. 22.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최종검색일자: 2020. 6. 22.



부 록



부 록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심층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2020. 6



INDEX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40
2. 조사 설계	140
3. 조사 내용	141
4. 응답자 특성	143

제2장 조사요약

1. 가맹점 조사 요약	146
2. 소비자 조사 요약	149
3. 사업자 조사 요약	151

제3장 가맹점 조사결과

1. 3년간 매출 중 현금거래의 비중	155
2.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화망에 의한 발급승인 여부	157
3. 3년간 현금 거래 중 현금영수증 평균 발행 비율	159
4. 현금영수증 발급 주요 이유	161
5.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	163
6. 소득세 세액공제 미인지 이유	165
7.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실행 여부	167
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	169
9.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미이용 이유	170
10.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	172
11.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미인지 이유	174
12.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 여부	176
13.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178
14.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500만원 이하 한도 여부	182

INDEX

15.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운영방식 의견	184
16.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결제 건당 적정 수준	186
17.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매출 비율	188
18.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기준인 5,000원의 수준	190
19. 기준 금액 감액 수준	192
20. 기준 금액 증액 수준	193
21.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비율	195
22.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한 자진 발급 비율	197

제4장 소비자 조사결과

1.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득공제 인지 여부	200
2. 현금영수증 발급횟수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영향 유무	202
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비인지 이유	204
4.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206
5.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208
6. 3개월 이내 현금 구매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액 차지 비율	210
7.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	212
8. 현금영수증 미발급 이유	214
9.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금액	216
10.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처벌 수위	218
11. 적당한 가산세율(가산세 부족시)	220
12. 적당한 가산금액(가산세 부족시)	222
13. 적당한 가산세율(가산세 과중시)	224

INDEX

14. 적당한 가산금액(가산세 과중시)	226
15. 월평균 세후 개인소득 구간	228
16. 개인 한달 소비금액 구간	230
17. 소비 중 현금 차지 비율	232

제5장 사업자 조사결과

1. 기업 유형	235
2. 주식회사 상장유형	236
3. 산업분류	237
4. 기업소재지	238
5.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239
6. 5년간 종이 발급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240
7. 5년간 종이 미발급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241
8.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유무	242
9. 세액공제 규모 변화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여부	243
10. 지난 3년간 전체 매출 중 현금영수증 사업 매출 비중	244
11.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의견	245
12. 세액공제 규모 축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영향 여부	246
13. 현금영수증 사업 영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적절성 여부	247
14. 종이영수증 발급 여부에 다른 차등 지원 의견	248
15.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규모	249
16.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250
17. 지난 5년간 본 제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251
18. 재무정보	252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심층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현금영수증 과세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 현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 제도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동 제도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설계

구분	내용
①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금영수증 사업자현금영수증 가맹점소비자
② 표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금영수증 사업자 10개¹⁾현금영수증 가맹점 155개소비자 500명
③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금영수증 사업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FAX/ 전화조사현금영수증 가맹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소비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On-line)조사
④ 표본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임의 추출
⑤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0년 5월 22일~6월 16일

1)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10표본으로 표본수가 작아, 응답자 특성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본문에서 제시함

3. 조사 내용

조사 분야 및 세부 항목	
현금영수증 가맹점	
-	3년간 매출 중 현금거래의 비중
-	현금영수증 발급기기 설치 유무
-	3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에 의한 발급승인 여부
-	3년간 현금 거래 중 현금영수증 평균 발행 비율
-	현금영수증 발급 주요 이유
-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
-	소득세 세액공제 미인지 이유
-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유무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미시행시 현금영수증 예상 발급건수
-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미이용 이유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미인지 이유
-	귀사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 여부
-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500만원 이하 한도 여부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운영방식 의견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결제 건당 적정 수준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매출 비율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기준인 5,000원의 수준
-	기준 금액 감액 수준
-	기준 금액 증액 수준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비율
-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한 자진 발급 비율
소비자	
-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득공제 인지 여부
-	현금영수증 발급 횟수에 따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영향 유무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비인지 이유

-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주로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3개월 이내 현금 구매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액 차지 비율
-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이유
-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금액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처벌 수위
- 적당한 수준의 가산세율 및 가산금액 (가산세 부족시)
- 적당한 수준의 가산세율 및 가산금액 (가산세 과중시)
- 월평균 세후 개인소득 구간
- 개인 한달 소비금액 구간
- 소비 중 현금 차지 비율

조사 분야 및 세부 항목

사업자

- 기업유형
- 주식회사 상장유형
- 산업분류
- 기업소재지
- 5년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이용 유무
-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유무
- 세액공제 규모의 변화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의 변화 여부
- 지난 3년간 전체 매출 중 현금영수증 사업 매출 비중
-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의견
- 세액공제 규모 축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영향 여부
- 현금영수증 사업 영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적절성 여부
- 종이영수증 발급 여부에 다른 차등 지원 의견
-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규모
- 재무정보

4. 응답자 특성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155	100.0
산업분류	사업서비스업	6	3.9
	보건업	41	26.5
	숙박 및 음식점업	60	38.7
	교육 서비스업	5	3.2
	도매 및 소매업	31	20.0
	부동산업	8	5.2
	그 밖의 업종	4	2.6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20.6
	1억~2억 미만	49	31.6
	2억~4억 미만	52	33.5
	4억 이상	19	12.3
	미개업	3	1.9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20.0
	1억~2억 미만	56	36.1
	2억~4억 미만	47	30.3
	4억 이상	20	12.9
	미개업	1	0.6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23.9
	1억~2억 미만	52	33.5
	2억~4억 미만	45	29.0
	4억 이상	21	13.5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32.9
	유지	41	26.5
	감소	62	40.0
	해당 없음	1	0.6

(2) 소비자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500	100.0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82	96.4
	기타 종사자	18	3.6
직업	관리직	57	11.4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9	9.8
	사무직	291	58.2
	서비스직	28	5.6
	판매직	21	4.2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6	5.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5	1.0
	단순 노무직	23	4.6
출생 연도	20대	48	9.6
	30대	145	29.0
	40대	183	36.6
	50대 이상	124	24.8
성별	남성	313	62.6
	여성	187	37.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5	11.0
	대졸	389	77.8
	대학원 이상	56	11.2
결혼 유무	미혼	171	34.2
	기혼	315	63.0
	비혼	14	2.8
가구원 수	1명	67	13.4
	2명	74	14.8
	3명	154	30.8
	4명	172	34.4
	5명 이상	33	6.6
거주지역	서울	157	31.4
	인천/경기	170	34.0
	대전/세종/충청	40	8.0
	광주/전라	24	4.8
	대구/경북	35	7.0
	부산/울산/경남	64	12.8
	강원/제주	10	2.0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심층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제2장 조사요약

1. 가맹점 조사 요약

(1) 전체 조사 결과

구분	결과
3년간 매출 중 현금거래의 비중	0~20% 미만 93.5%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에 의한 발급승인 여부	전화망에 의한 발급승인 한다 96.8% > 아니다 3.2%
3년간 현금 거래 중 현금영수증 평균 발행 비율	80% 이상~100% 74.2%
현금영수증 발급 주요 이유	소비자가 요구해서 78.7% >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21.3%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	소득세 세액공제 모른다 68.4% > 알고 있다 31.6%
소득세 세액공제 미인지 이유	알 기회가 없어서 42.5% > 5천원 미만 현금거래가 많지 않아서 34.0%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유무	소득세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 85.7% > 받았다 14.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17년 31.7, 2018년 76.2, 2019년 39.0 소득세 세액공제 전체 2017년 20.7, 2018년 25.9, 2019년 26.0 소득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2017년 1.0, 2018년 1.0, 2019년 1.0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미이용 이유	사업의 특성상 5천원 미만의 현금거래가 많지 않아서 59.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85.2% > 오늘 처음 알았다 14.8%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미인지 이유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39.1% ≒ 알 기회가 없어서 34.8%
귀사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 여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97.0%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017년 10.0, 2018년 10.1, 2019년 9.6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2017년 5.5, 2018년 5.6, 2019년 5.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제세액 2017년 2.9, 2018년 2.9, 2019년 2.7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500만원 이하 한도 여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500만원보다 적음 70.3%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운영방식 의견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 공제 56.1% > 결제 건당 일정금액 공제 43.9%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결제 건당 적정 수준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결제 건당 적정 수준 20원(현행) 70.6%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매출 비율	세액공제 매출 1% 비율 41.4% > 3% 비율 35.6%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기준인 5,000원의 수준	기준 5,000원 적당하다 51.6% ≒ 기준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 45.2%
기준 금액 감액 수준	기준 금액 감액 수준 3,000원 60.0%, 평균 2,600원
기준 금액 증액 수준	기준 금액 증액 수준 10,000원 78.6%, 평균 10,900원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비율	자진 발급 80%~100% 비율 54.2% > 0~20% 미만 비율 31.6%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한 자진 발급 비율	자진 발급 0%~20% 미만 비율 71.0% > 80%~100% 비율 25.2%

(2)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 공제 56.1% > 결제 건당 일정금액 공제 43.9%
결제 건당 현행 20원 수준 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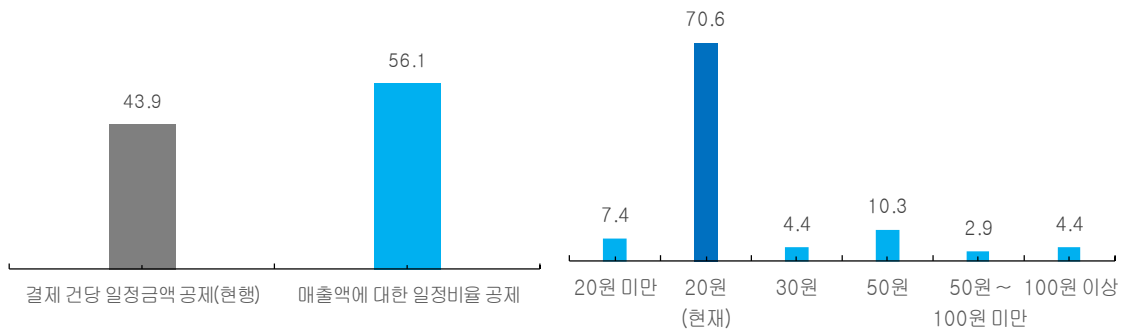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 공제가 56.1%로 현행으로 운영되는 결제 건당 일정금액 공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제 건당 적정 수준으로는 현행으로 운영되는 결제 건당 20원이 70.6%로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다음으로 50원 10.3%, 20원 미만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운영방식]

[결제 건당 적정 수준]

(Base: 전체, n: 155, 단위: %)

(Base: 결제 건당 일정금액 공제 응답자, n: 6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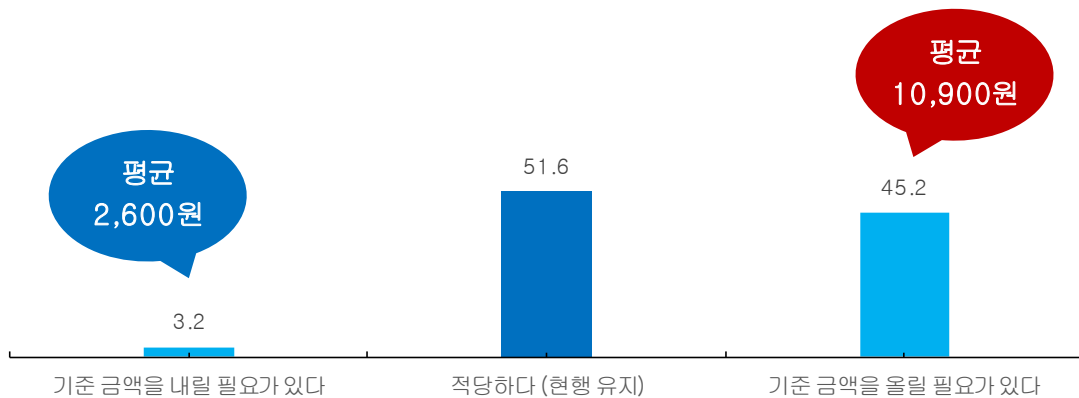
(3)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기준인 5,000원의 수준

기준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 45.2%(평균 금액 10,900원)
기준 금액을 내릴 필요가 있다 3.2%(평균 금액 2,600원)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 공제가 56.1%로 현행으로 운영되는 결제 건당 일정금액 공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제 건당 적정 수준으로는 결제 건당 1%가 41.4%로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다음으로 3%가 35.6%, 5% 이상이 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세액공제 기준 5,000원 수준]

(Base: 전체, n: 155, 단위: %)



2. 소비자 조사 요약

(1) 전체 조사 결과

구분	결과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득공제 인지 여부	근로자 소득공제 알고 있다 89.8% > 모른다 10.2%
현금영수증 발급횟수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영향 유무	영향 주었다 75.3% > 영향 주지 않았다 24.7%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비인지 이유	현금사용이 적어서 41.2% ≒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39.2%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 79.8%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휴대폰번호 이용 92.7%
3개월 이내 현금 구매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액 차지 비율	10%~30% 미만 32.1% ≒ 10% 미만 31.1%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87.2%
현금영수증 미발급 이유	번거로워서 38.9% ≒ 소득공제 기준 금액을 어차피 넘지 못해서 38.9%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금액	1,000원~5,000원 미만 39.2%, 평균 발급 최소금액 7,294원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처벌 수위	적당하다 68.6% > 부족하다 22.6%
적당한 가산세율(가산세 부족시)	10~20% 미만 54.0%, 평균 가산세율 26.41%
적당한 가산금액(가산세 부족시)	10,000원~20,000원 미만 50.000원 이상 44.2% 평균 가산금액 238,425원
적당한 가산세율(가산세 과중시)	3~4% 미만 40.9%, 평균 가산세율 1.98%
적당한 가산금액(가산세 과중시)	0원~1,000원 미만 52.3%, 평균 가산금액 914원
월평균 세후 개인소득 구간	200만원~300만원 미만 27.2% ≒ 300만원~400만원 미만 23.6%
개인 한달 소비금액 구간	50만원~100만원 미만 소비 27.4% ≒ 100만원~150만원 미만 소비 22.2%
소비 중 현금 차지 비율	10% 미만 현금 소비 38.2% > 10%~15% 미만 현금 소비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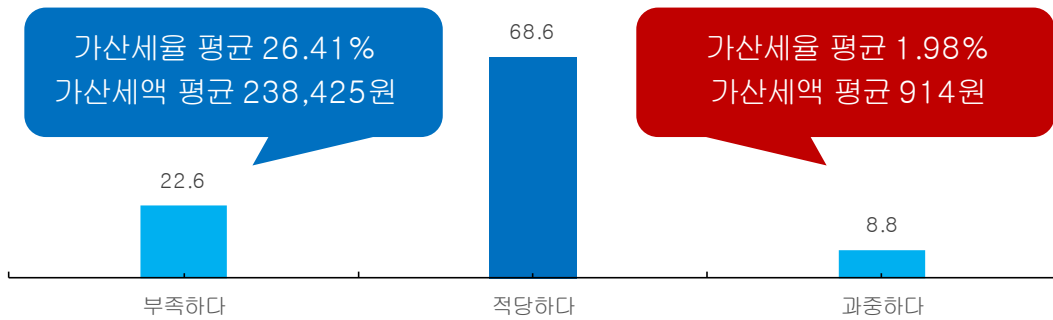
(2)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부과되는 가산세 처벌 수위

과중하다 8.8%, 가산세율 평균 1.98%, 가산세액 평균 914원
부족하다 22.6%, 가산세율 평균 26.41%, 가산세액 평균 238,425원

-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족하다는 22.6%로 나타났고, 상향시켜야 하는 가산세율은 평균 26.41%, 가산세액은 평균 238,425원으로 나타남
- 과중하다는 8.8%로 나타났고, 하향시켜야 하는 가산세율은 평균 1.98%, 가산세액은 평균 914원으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부과되는 가산세 처벌 수위]

(Base: 전체, n: 155, 단위: %)



3. 사업자 조사 요약

(1) 전체 조사 결과

구분	결과
기업 유형	대기업 50.0%, 중견기업 50.0%
주식회사 상장유형	비상장 60.0% > KOSDAQ 상장 30.0%
산업분류	정보통신업 70.0%
기업소재지	서울 80.0% > 경기 20.0%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2017년 평균 32,941건, 2016년 평균 32,726건
5년간 종이 발급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2018년 평균 33,599,125건, 2019년 평균 29,245,821건
5년간 종이 미발급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2019년 평균 19,647,529건, 2019년 평균 19,355,703건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유무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있음 80.0% > 변화 없음 20.0%
세액공제 규모 변화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여부	세액공제 규모 변화 영향을 주었다 50.0% > 경기 12.5%
지난 3년간 전체 매출 중 현금영수증 사업 매출 비중	0~20% 미만 2017년 90.0%, 2018년 80.0%, 2019년 80.0%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의견	세액공제 규모가 작다 90.0% > 규모가 적당하다 10.0%
세액공제 규모 축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영향 여부	세액공제 규모 축소시 영향이 있을 것 60.0% > 영향 없을 것 40.0%
현금영수증 사업 영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적절성 여부	세액공제 규모 충분하지 않다 50.0% > 충분하다 10.0%
종이영수증 발급 여부에 다른 차등 지원 의견	종이 발급이 1원 높은 현행대로 40.0% ≡ 차등지원 더 커져야 40.0%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규모	2018년 평균 14,963백만원, 2019년 평균 14,438백만원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2015년 평균 6,237백만원, 2016년 평균 6,167백만원
지난 5년간 본 제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2015년 평균 2,058백만원, 2016년 평균 1,889백만원
재무정보	평균 총자산 937,241백만원, 연매출액 1,115,850백만원, 자본 385,648백만원, 당기순이익 27,131백만원, 법인세납부액 6,81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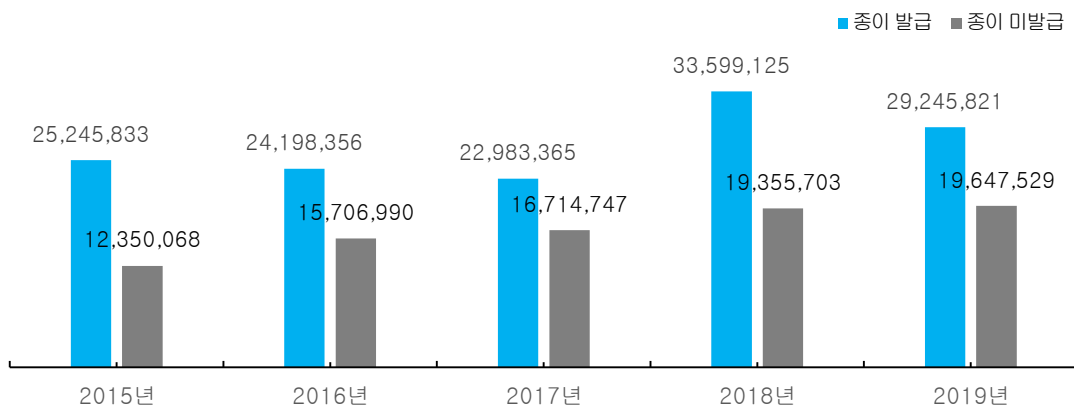
(2) 5년간 종이 현금영수증 및 종이 미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건수

종이 발급 2018년 33,599,125건, 2019년 29,245,821건
종이 미발급 2019년 19,647,529건, 2018년 19,355,703건

- 지난 5년간 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건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종이 발급 현금영수증은 2018년 33,599,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9년 29,245,821건, 2015년 25,245,833건, 2016년 24,198,356건, 2017년 22,983,365건의 순으로 나타남
- 종이 미발급 현금영수증은 2019년 19,647,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8년 19,355,703건, 2017년 16,714,747건, 2016년 15,706,990건, 2015년 12,350,068건의 순으로 나타남

[5년간 종이 현금영수증 및 종이 미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건수]

(Base: 전체, n: 10,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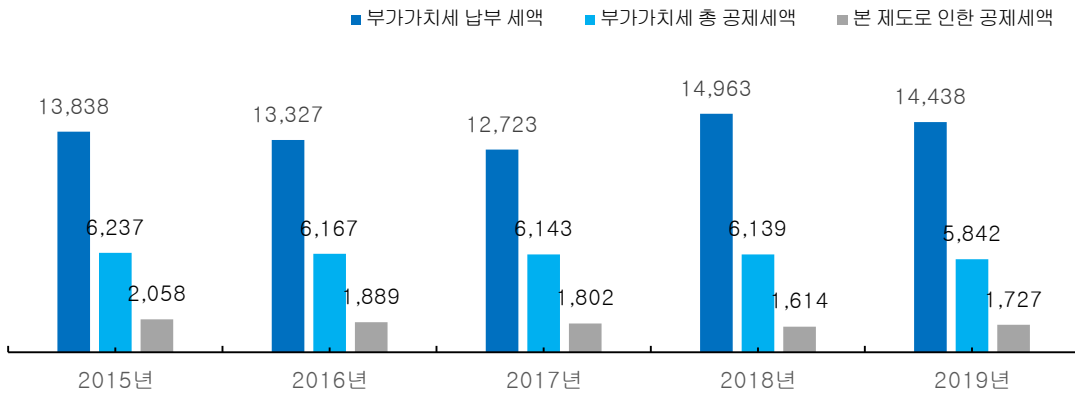
(2)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공제세액

**2019년 납부세액 14,438백만원, 총 공제세액 5,842백만원
평균 공제 비율²⁾ 40.5%, 본 제도 평균 공제 비율³⁾ 29.6%**

-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18년 14,963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19년 14,438백만원, 2015년 13,838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은 2015년이 6,237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17년 6,143백만원, 2018년 6,139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본 제도로 인한 공제세액은 2015년이 2,058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16년 6,167백만원, 2017년 6,143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공제세액]

(Base: 전체, n: 10, 단위: 건)



2) 평균 공제 비율: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평균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평균 * 100

3) 본제도 평균 공제 비율: 본 제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평균 ÷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평균 * 100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심층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제3장 가맹점 조사결과

1. 3년간 매출 중 현금거래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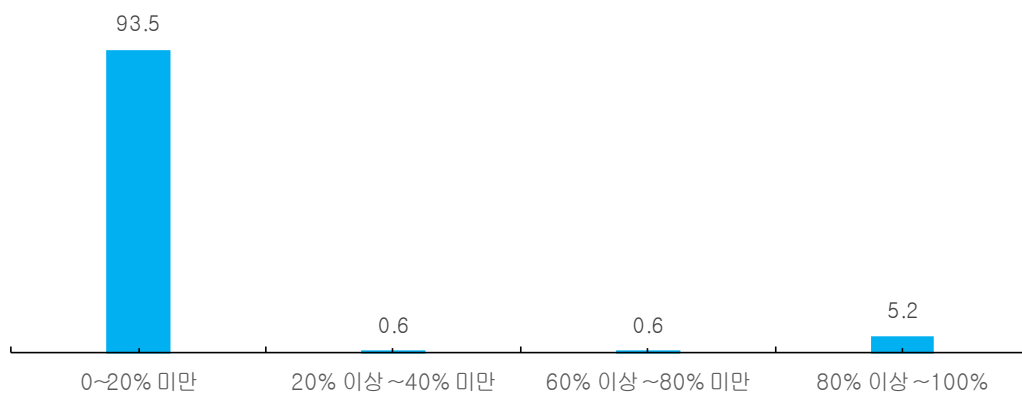
Q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귀사의 매출 중 현금거래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0~20% 미만 93.5%

- 지난 3년간 매출 중 현금거래의 비중에 대해 알아본 결과, 0~20% 미만이 93.5%로 가장 높게 나타남⁴⁾

[3년간 매출 중 현금거래의 비중]

(Base: 전체, n: 155, 단위: %)



4) 표본수 30표본 이하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이하 동일)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전체		(155)	93.5	0.6	0.6	5.2
산업분류	사업서비스업	(6)	83.3	16.7	0.0	0.0
	보건업	(41)	97.6	0.0	2.4	0.0
	숙박 및 음식점업	(60)	100.0	0.0	0.0	0.0
	교육 서비스업	(5)	10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31)	100.0	0.0	0.0	0.0
	부동산업	(8)	0.0	0.0	0.0	100.0
	그 밖의 업종	(4)	100.0	0.0	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84.4	0.0	0.0	15.6
	1억~2억 미만	(49)	93.9	0.0	2.0	4.1
	2억~4억 미만	(52)	96.2	1.9	0.0	1.9
	4억 이상	(19)	100.0	0.0	0.0	0.0
	미개업	(3)	100.0	0.0	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83.9	0.0	0.0	16.1
	1억~2억 미만	(56)	96.4	0.0	0.0	3.6
	2억~4억 미만	(47)	93.6	2.1	2.1	2.1
	4억 이상	(20)	100.0	0.0	0.0	0.0
	미개업	(1)	100.0	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89.2	0.0	0.0	10.8
	1억~2억 미만	(52)	94.2	0.0	0.0	5.8
	2억~4억 미만	(45)	93.3	2.2	2.2	2.2
	4억 이상	(21)	100.0	0.0	0.0	0.0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92.2	0.0	2.0	5.9
	유지	(41)	95.1	0.0	0.0	4.9
	감소	(62)	93.5	1.6	0.0	4.8
	해당 없음	(1)	100.0	0.0	0.0	0.0

2.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화망에 의한 발급승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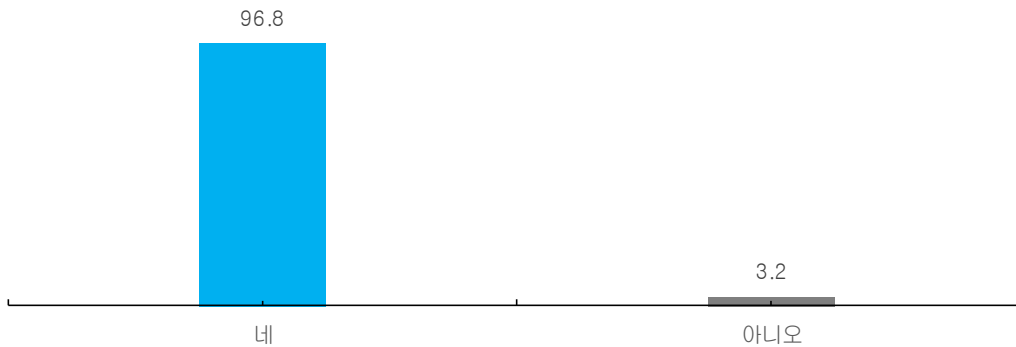
Q 귀사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에 의해 발급승인을 받으시니까?

전화망에 의한 발급승인 한다 96.8% > 아니요 3.2%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에 의한 발급승인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화망에 의해 발급승인을 한다가 96.8%로 아니요 3.2%보다 높게 나타남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에 의한 발급승인 여부]

(Base: 전체, n: 155,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네	아니오
전체		(155)	96.8	3.2
산업분류	사업서비스업	(6)	83.3	16.7
	보건업	(41)	95.1	4.9
	숙박 및 음식점업	(60)	100.0	0.0
	교육 서비스업	(5)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31)	96.8	3.2
	부동산업	(8)	100.0	0.0
	그 밖의 업종	(4)	75.0	25.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93.8	6.3
	1억~2억 미만	(49)	98.0	2.0
	2억~4억 미만	(52)	98.1	1.9
	4억 이상	(19)	94.7	5.3
	미개업	(3)	10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93.5	6.5
	1억~2억 미만	(56)	98.2	1.8
	2억~4억 미만	(47)	97.9	2.1
	4억 이상	(20)	95.0	5.0
	미개업	(1)	10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94.6	5.4
	1억~2억 미만	(52)	98.1	1.9
	2억~4억 미만	(45)	97.8	2.2
	4억 이상	(21)	95.2	4.8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98.0	2.0
	유지	(41)	97.6	2.4
	감소	(62)	95.2	4.8
	해당 없음	(1)	100.0	0.0

3. 3년간 현금 거래 중 현금영수증 평균 발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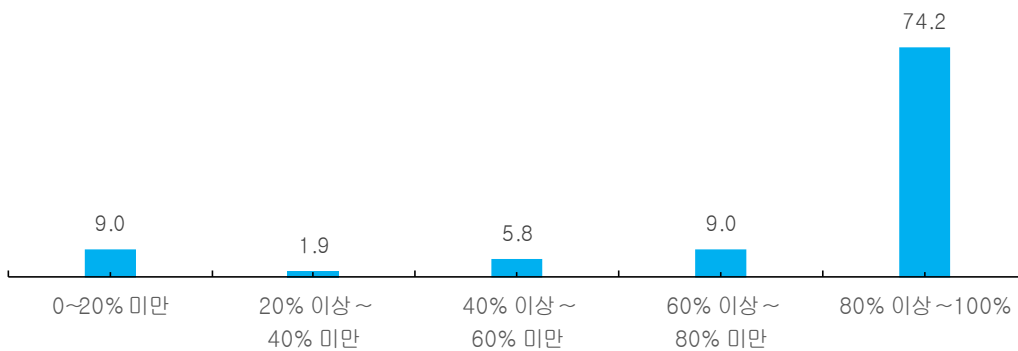
Q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현금 거래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현금영수증 평균 발행 비율 80% 이상~100% 74.2%

- 지난 3년간 현금 거래 중 현금영수증 평균 발행 비율에 대해 알아본 결과, 80% 이상~100%가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60%이상~80% 미만 9.0%, 0~20% 미만 9.0%, 40% 이상~60% 미만 5.8%, 20% 이상~40% 미만이 1.9%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3년간 현금 거래 중 현금영수증 평균 발행 비율]

(Base: 전체, n: 155,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80% 이상 ~100%
전체		(155)	9.0	1.9	5.8	9.0	74.2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6)	16.7	0.0	16.7	16.7	50.0
	보건업	(41)	12.2	4.9	7.3	7.3	68.3
	숙박 및 음식점업	(60)	6.7	1.7	3.3	11.7	76.7
	교육 서비스업	(5)	20.0	0.0	0.0	0.0	80.0
	도매 및 소매업	(31)	9.7	0.0	9.7	9.7	71.0
	부동산업	(8)	0.0	0.0	0.0	0.0	100.0
	그 밖의 업종	(4)	0.0	0.0	0.0	0.0	10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12.5	0.0	3.1	9.4	75.0
	1억~2억 미만	(49)	6.1	6.1	6.1	4.1	77.6
	2억~4억 미만	(52)	7.7	0.0	5.8	15.4	71.2
	4억 이상	(19)	15.8	0.0	10.5	5.3	68.4
	미개업	(3)	0.0	0.0	0.0	0.0	10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12.9	0.0	3.2	9.7	74.2
	1억~2억 미만	(56)	7.1	1.8	7.1	3.6	80.4
	2억~4억 미만	(47)	6.4	4.3	4.3	14.9	70.2
	4억 이상	(20)	15.0	0.0	10.0	10.0	65.0
	미개업	(1)	0.0	0.0	0.0	0.0	10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10.8	0.0	5.4	8.1	75.7
	1억~2억 미만	(52)	7.7	1.9	5.8	3.8	80.8
	2억~4억 미만	(45)	6.7	4.4	4.4	15.6	68.9
	4억 이상	(21)	14.3	0.0	9.5	9.5	66.7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9.8	3.9	0.0	9.8	76.5
	유지	(41)	9.8	2.4	4.9	12.2	70.7
	감소	(62)	8.1	0.0	11.3	6.5	74.2
	해당 없음	(1)	0.0	0.0	0.0	0.0	100.0

4. 현금영수증 발급 주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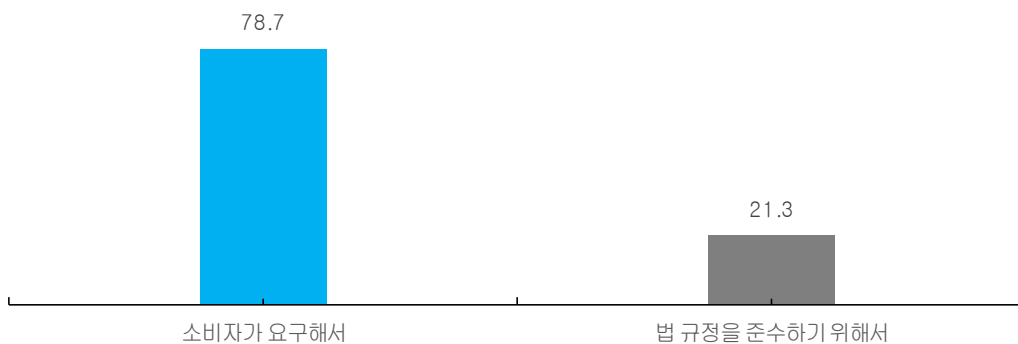
Q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비자가 요구해서 78.7% >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21.3%

- 현금영수증 발급 주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소비자가 요구해서가 78.7%로 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21.3%보다 높게 나타남

[현금영수증 발급 주요 이]

(Base: 전체, n: 155,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소비자가 요구해서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전체		(155)	78.7	21.3
산업분류	사업서비스업	(6)	66.7	33.3
	보건업	(41)	73.2	26.8
	숙박 및 음식점업	(60)	78.3	21.7
	교육 서비스업	(5)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31)	77.4	22.6
	부동산업	(8)	100.0	0.0
	그 밖의 업종	(4)	10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90.6	9.4
	1억~2억 미만	(49)	81.6	18.4
	2억~4억 미만	(52)	75.0	25.0
	4억 이상	(19)	57.9	42.1
	미개업	(3)	10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90.3	9.7
	1억~2억 미만	(56)	83.9	16.1
	2억~4억 미만	(47)	74.5	25.5
	4억 이상	(20)	55.0	45.0
	미개업	(1)	10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89.2	10.8
	1억~2억 미만	(52)	84.6	15.4
	2억~4억 미만	(45)	73.3	26.7
	4억 이상	(21)	57.1	42.9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74.5	25.5
	유지	(41)	70.7	29.3
	감소	(62)	87.1	12.9
	해당 없음	(1)	100.0	0.0

5.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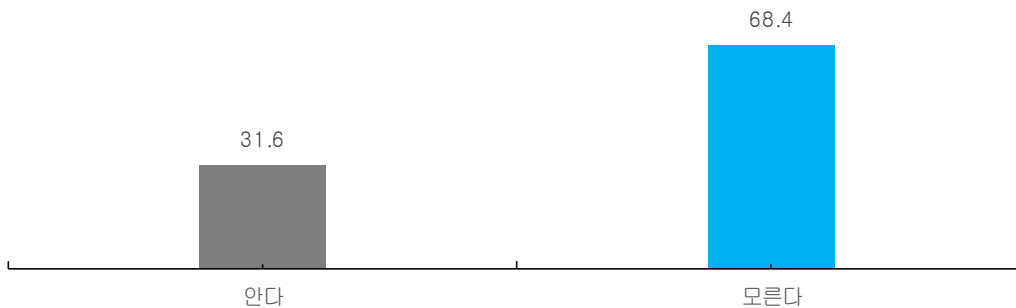
Q 귀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소득세 세액 공제 모른다 68.4% > 알고 있다 31.6%

-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의 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모른다가 68.4%로 안다 31.6%보다 높게 나타남

[현금영수증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

(Base: 전체, n: 155,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다	모른다
전체		(155)	31.6	68.4
산업분류	사업서비스업	(6)	66.7	33.3
	보건업	(41)	22.0	78.0
	숙박 및 음식점업	(60)	28.3	71.7
	교육 서비스업	(5)	80.0	20.0
	도매 및 소매업	(31)	35.5	64.5
	부동산업	(8)	37.5	62.5
	그 밖의 업종	(4)	25.0	75.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43.8	56.3
	1억~2억 미만	(49)	22.4	77.6
	2억~4억 미만	(52)	28.8	71.2
	4억 이상	(19)	42.1	57.9
	미개업	(3)	33.3	66.7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48.4	51.6
	1억~2억 미만	(56)	19.6	80.4
	2억~4억 미만	(47)	27.7	72.3
	4억 이상	(20)	50.0	50.0
	미개업	(1)	0.0	10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37.8	62.2
	1억~2억 미만	(52)	23.1	76.9
	2억~4억 미만	(45)	28.9	71.1
	4억 이상	(21)	47.6	52.4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49.0	51.0
	유지	(41)	39.0	61.0
	감소	(62)	12.9	87.1
	해당 없음	(1)	0.0	100.0

6. 소득세 세액공제 미인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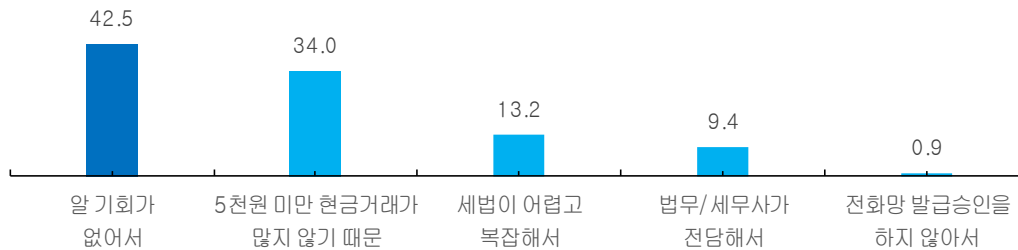
Q 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 기회가 없어서 42.5% > 5천원 미만 현금거래가 많지 않아서 34.0%

- 소득세 세액공제를 모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알 기회가 없어서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5천원 미만 현금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 34.0%,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13.2%, 법무/세무사가 전담해서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소득세 세액공제 미인지 이유]

(Base: 소득세 세액공제를 모르는 응답자, n: 106,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소득세 세액공제를 모르는 응답자, n: 106,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알 기회가 없어서	사업특성상 5천원 미만 현금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법무/세무사가 전담해서	전화망 발급승인을 하지 않아서	
전체	(106)	42.5	34.0	13.2	9.4	0.9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2)	100.0	0.0	0.0	0.0	0.0
	보건업	(32)	40.6	28.1	15.6	15.6	0.0
	숙박 및 음식점업	(43)	44.2	32.6	11.6	11.6	0.0
	교육 서비스업	(1)	0.0	0.0	10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20)	45.0	40.0	10.0	0.0	5.0
	부동산업 그 밖의 업종	(5)	20.0	80.0	0.0	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18)	33.3	55.6	11.1	0.0	0.0
	1억~2억 미만	(38)	44.7	26.3	18.4	10.5	0.0
	2억~4억 미만	(37)	45.9	32.4	5.4	13.5	2.7
	4억 이상	(11)	36.4	36.4	18.2	9.1	0.0
	미개업	(2)	50.0	0.0	50.0	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16)	31.3	56.3	12.5	0.0	0.0
	1억~2억 미만	(45)	44.4	26.7	20.0	8.9	0.0
	2억~4억 미만	(34)	44.1	35.3	2.9	14.7	2.9
	4억 이상	(10)	40.0	30.0	20.0	10.0	0.0
	미개업	(1)	100.0	0.0	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23)	39.1	43.5	13.0	4.3	0.0
	1억~2억 미만	(40)	42.5	27.5	20.0	10.0	0.0
	2억~4억 미만	(32)	46.9	34.4	3.1	12.5	3.1
	4억 이상	(11)	36.4	36.4	18.2	9.1	0.0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26)	23.1	42.3	26.9	7.7	0.0
	유지	(25)	60.0	28.0	12.0	0.0	0.0
	감소	(54)	42.6	33.3	7.4	14.8	1.9
	해당 없음	(1)	100.0	0.0	0.0	0.0	0.0

7.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실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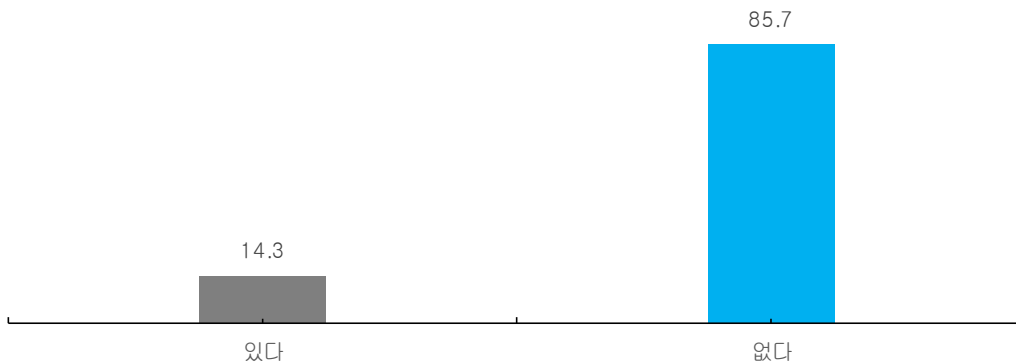
Q 귀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득세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 85.7% > 받았다 14.3%

-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실행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받지 않았다가 85.7%로 받았다 14.3%보다 높게 나타남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유무]

(Base: 소득세 세액공제를 알고 있는 응답자, n: 49,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소득세 세액공제를 알고 있는 응답자, n: 4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9)	14.3	85.7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4)	0.0	100.0
	보건업	(9)	22.2	77.8
	숙박 및 음식점업	(17)	5.9	94.1
	교육 서비스업	(4)	50.0	50.0
	도매 및 소매업	(11)	18.2	81.8
	부동산업	(3)	0.0	100.0
	그 밖의 업종	(1)	0.0	10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14)	7.1	92.9
	1억~2억 미만	(11)	9.1	90.9
	2억~4억 미만	(15)	20.0	80.0
	4억 이상	(8)	25.0	75.0
	미개업	(1)	0.0	10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15)	6.7	93.3
	1억~2억 미만	(11)	9.1	90.9
	2억~4억 미만	(13)	15.4	84.6
	4억 이상	(10)	30.0	70.0
	미개업	(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14)	7.1	92.9
	1억~2억 미만	(12)	8.3	91.7
	2억~4억 미만	(13)	15.4	84.6
	4억 이상	(10)	30.0	70.0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25)	4.0	96.0
	유지	(16)	25.0	75.0
	감소	(8)	25.0	75.0
	해당 없음	(0)	0.0	0.0

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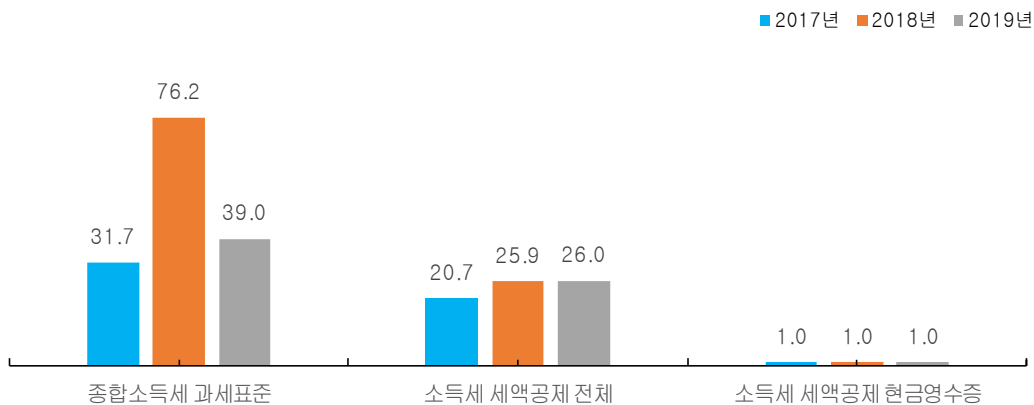
Q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귀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17년 31.7, 2018년 76.2, 2019년 39.0
소득세 세액공제 전체 2017년 20.7, 2018년 25.9, 2019년 26.0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⁵⁾,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17년 31.7백만원, 2018년 76.2백만원, 2019년 39.0백만원으로 나타남
- 소득세 세액공제 전체는 2017년 20.7백만원, 2018년 25.9백만원, 2019년 26.0백만원으로 나타남
- 소득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은 2017년, 2018년, 2019년 모두 1.0백만원으로 나타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

(Base: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응답자, n: 7, 단위: 백만원)



5) 사례수가 작아(n<10) 응답자 특성표는 제시하지 않음(이하 동일)

9.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미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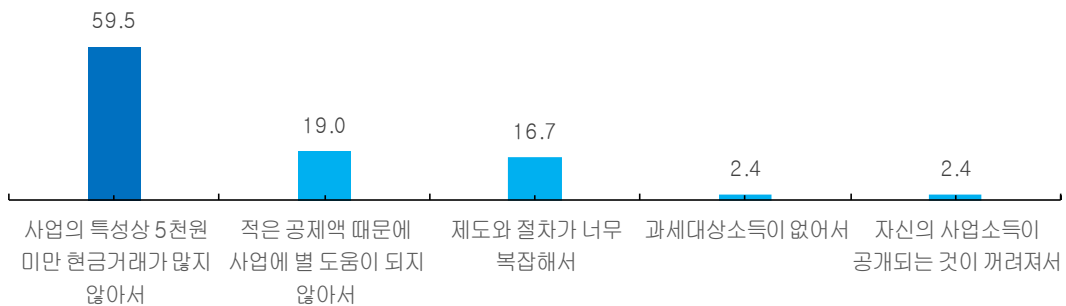
Q 귀사가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의 특성상 5천원 미만의 현금거래가 많지 않아서 59.5%

-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사업의 특성상 5천원 미만 현금거래가 많지 않아서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적은 공제액 때문에 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19.0%, 제도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3년간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미이용 이유]

(Base: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응답자, n: 42,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응답자, n: 4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의 특성상 5천원미만 현금거래가 많지 않아서	적은 공제액 때문에 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제도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서	자신의 사업소득이 공개되는것이 꺼려져서	
전체	(42)	59.5	19.0	16.7	2.4	2.4	
산업 분류	사업 서비스업	(4)	75.0	0.0	0.0	25.0	0.0
	보건업	(7)	71.4	14.3	14.3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16)	68.8	12.5	18.8	0.0	0.0
	교육 서비스업	(2)	50.0	0.0	5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9)	22.2	44.4	22.2	0.0	11.1
	부동산업	(3)	66.7	33.3	0.0	0.0	0.0
	그 밖의 업종	(1)	100.0	0.0	0.0	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13)	46.2	23.1	30.8	0.0	0.0
	1억~2억 미만	(10)	80.0	20.0	0.0	0.0	0.0
	2억~4억 미만	(12)	50.0	16.7	16.7	8.3	8.3
	4억 이상	(6)	66.7	16.7	16.7	0.0	0.0
	미개업	(1)	100.0	0.0	0.0	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14)	50.0	21.4	28.6	0.0	0.0
	1억~2억 미만	(10)	80.0	20.0	0.0	0.0	0.0
	2억~4억 미만	(11)	45.5	18.2	18.2	9.1	9.1
	4억 이상	(7)	71.4	14.3	14.3	0.0	0.0
	미개업	(0)	0.0	0.0	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13)	53.8	15.4	30.8	0.0	0.0
	1억~2억 미만	(11)	72.7	27.3	0.0	0.0	0.0
	2억~4억 미만	(11)	45.5	18.2	18.2	9.1	9.1
	4억 이상	(7)	71.4	14.3	14.3	0.0	0.0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24)	58.3	16.7	16.7	4.2	4.2
	유지	(12)	58.3	25.0	16.7	0.0	0.0
	감소	(6)	66.7	16.7	16.7	0.0	0.0
	해당 없음	(0)	0.0	0.0	0.0	0.0	0.0

10.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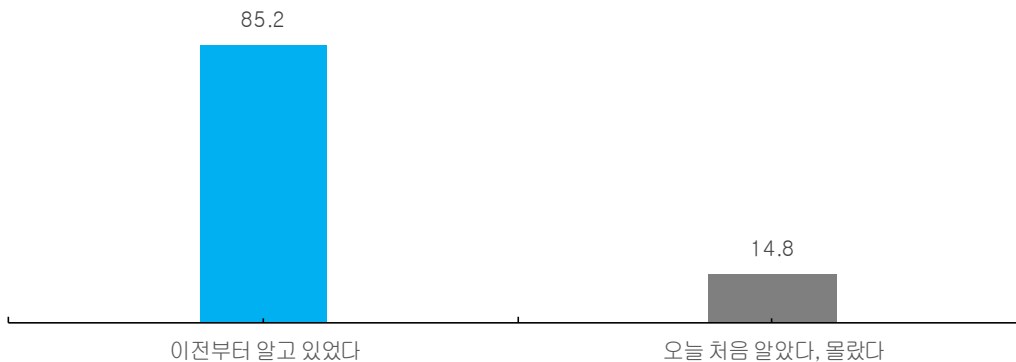
Q 귀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85.2% > 오늘 처음 알았다 14.8%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가 85.2%로 오늘 처음 알았다, 몰랐다 14.8%보다 높게 나타남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인지 여부]

(Base: 전체, n: 155,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오늘 처음 알았다, 몰랐다
전체		(155)	85.2	14.8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6)	100.0	0.0
	보건업	(41)	78.0	22.0
	숙박 및 음식점업	(60)	83.3	16.7
	교육 서비스업	(5)	60.0	40.0
	도매 및 소매업	(31)	96.8	3.2
	부동산업	(8)	87.5	12.5
	그 밖의 업종	(4)	10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87.5	12.5
	1억~2억 미만	(49)	87.8	12.2
	2억~4억 미만	(52)	86.5	13.5
	4억 이상	(19)	68.4	31.6
	미개업	(3)	10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87.1	12.9
	1억~2억 미만	(56)	89.3	10.7
	2억~4억 미만	(47)	87.2	12.8
	4억 이상	(20)	65.0	35.0
	미개업	(1)	10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89.2	10.8
	1억~2억 미만	(52)	88.5	11.5
	2억~4억 미만	(45)	86.7	13.3
	4억 이상	(21)	66.7	33.3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70.6	29.4
	유지	(41)	87.8	12.2
	감소	(62)	95.2	4.8
	해당 없음	(1)	100.0	0.0

11.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미인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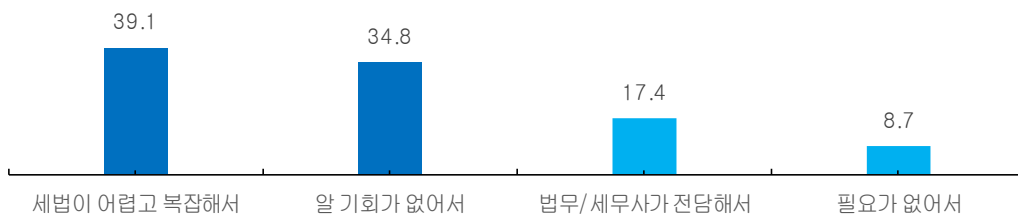
Q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39.1% ≒ 알 기회가 없어서 34.8%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몰랐던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가 39.1%, 알 기회가 없어서 34.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무/세무사가 전담해서 17.4%, 필요가 없어서 8.7%의 순으로 나타남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미인지 이유]

(Base: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몰랐다는 응답자, n: 23,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몰랐다는 응답자, n: 23,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알 기회가 없어서	법무/세무 사가 전담해서	필요가 없어서
전체		(23)	39.1	34.8	17.4	8.7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0)	0.0	0.0	0.0	0.0
	보건업	(9)	22.2	44.4	22.2	11.1
	숙박 및 음식점업	(10)	50.0	20.0	20.0	10.0
	교육 서비스업	(2)	0.0	10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1)	100.0	0.0	0.0	0.0
	부동산업	(1)	100.0	0.0	0.0	0.0
	그 밖의 업종	(0)	0.0	0.0	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4)	50.0	25.0	0.0	25.0
	1억~2억 미만	(6)	33.3	50.0	16.7	0.0
	2억~4억 미만	(7)	42.9	28.6	14.3	14.3
	4억 이상	(6)	33.3	33.3	33.3	0.0
	미개업	(0)	0.0	0.0	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4)	50.0	25.0	0.0	25.0
	1억~2억 미만	(6)	33.3	50.0	16.7	0.0
	2억~4억 미만	(6)	50.0	16.7	16.7	16.7
	4억 이상	(7)	28.6	42.9	28.6	0.0
	미개업	(0)	0.0	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4)	50.0	25.0	0.0	25.0
	1억~2억 미만	(6)	33.3	50.0	16.7	0.0
	2억~4억 미만	(6)	50.0	16.7	16.7	16.7
	4억 이상	(7)	28.6	42.9	28.6	0.0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15)	40.0	26.7	20.0	13.3
	유지	(5)	40.0	40.0	20.0	0.0
	감소	(3)	33.3	66.7	0.0	0.0
	해당 없음	(0)	0.0	0.0	0.0	0.0

12.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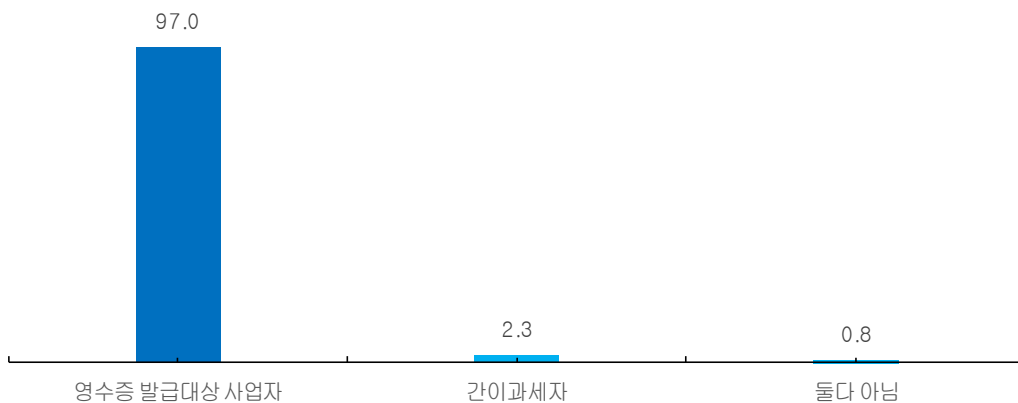
Q 귀사는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입니까?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97.0%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는 응답이 9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귀사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 여부]

(Base: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 n: 132,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 n: 13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둘다 아님
전체		(132)	97.0	2.3	0.8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6)	83.3	0.0	16.7
	보건업	(32)	100.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50)	100.0	0.0	0.0
	교육 서비스업	(3)	33.3	66.7	0.0
	도매 및 소매업	(30)	100.0	0.0	0.0
	부동산업	(7)	85.7	14.3	0.0
	그 밖의 업종	(4)	100.0	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28)	89.3	10.7	0.0
	1억~2억 미만	(43)	100.0	0.0	0.0
	2억~4억 미만	(45)	100.0	0.0	0.0
	4억 이상	(13)	92.3	0.0	7.7
	미개업	(3)	100.0	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27)	88.9	11.1	0.0
	1억~2억 미만	(50)	100.0	0.0	0.0
	2억~4억 미만	(41)	100.0	0.0	0.0
	4억 이상	(13)	92.3	0.0	7.7
	미개업	(1)	10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3)	90.9	9.1	0.0
	1억~2억 미만	(46)	100.0	0.0	0.0
	2억~4억 미만	(39)	100.0	0.0	0.0
	4억 이상	(14)	92.9	0.0	7.1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36)	94.4	5.6	0.0
	유지	(36)	97.2	0.0	2.8
	감소	(59)	98.3	1.7	0.0
	해당 없음	(1)	100.0	0.0	0.0

13.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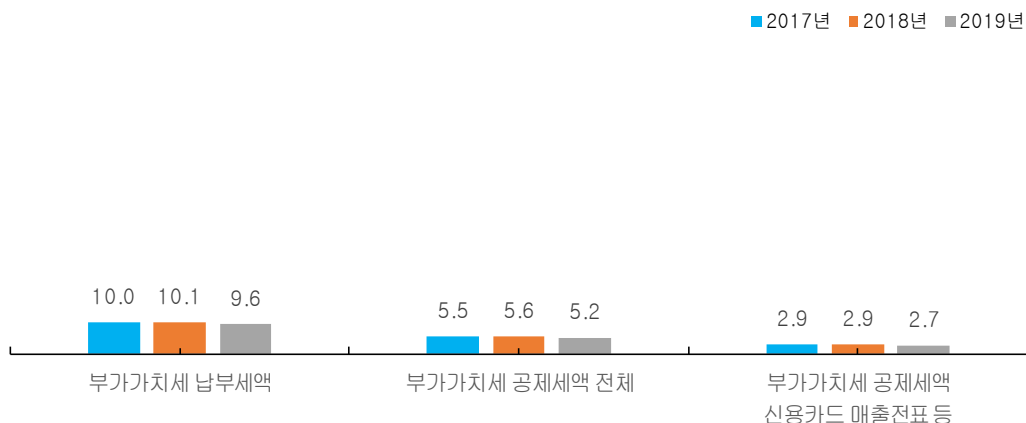
Q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귀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입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017년 10.0, 2018년 10.1, 2019년 9.6
부가가치세 총 공제 세액 2017년 5.5, 2018년 5.6, 2019년 5.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제세액 2017년 2.9, 2018년 2.9, 2019년 2.7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17년 10.0백만원, 2018년 10.1백만원, 2019년 9.6백만원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전체는 2017년 5.5백만원, 2018년 5.6백만원, 2019년 5.2백만원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2017년 2.9백만원, 2018년 2.9백만원, 2019년 2.7백만원으로 나타남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Base: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 n: 128, 단위: 백만원)





응답자 특성(2017년)

(Base: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 n: 128,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사례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전체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체		(128)	9.98	5.47	2.90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5)	11.00	4.40	2.48
	보건업	(32)	13.31	7.88	3.50
	숙박 및 음식점업	(48)	9.90	5.51	3.09
	교육 서비스업	(3)	0.00	0.00	0.00
	도매 및 소매업	(29)	8.90	4.48	2.90
	부동산업	(7)	5.29	2.86	1.11
	그 밖의 업종	(4)	6.75	3.00	1.75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28)	5.04	2.68	1.67
	1억~2억 미만	(43)	8.65	4.16	2.58
	2억~4억 미만	(45)	11.71	6.80	3.69
	4억 이상	(12)	19.83	11.83	4.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26)	5.12	2.73	1.72
	1억~2억 미만	(49)	8.37	4.10	2.51
	2억~4억 미만	(41)	11.90	6.88	3.79
	4억 이상	(12)	20.58	12.33	4.08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2)	5.09	2.84	1.87
	1억~2억 미만	(44)	9.18	4.50	2.66
	2억~4억 미만	(39)	11.18	6.71	3.69
	4억 이상	(13)	21.15	11.62	3.92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35)	11.06	5.60	2.83
	유지	(34)	11.32	5.97	3.10
	감소	(59)	8.58	5.12	2.83



응답자 특성(2018년)

(Base: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 n: 130,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사례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전체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체		(130)	10.14	5.55	2.89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5)	11.00	4.40	2.48
	보건업	(32)	14.88	8.69	3.59
	숙박 및 음식점업	(49)	9.47	5.29	3.08
	교육 서비스업	(3)	0.00	0.00	0.00
	도매 및 소매업	(30)	8.90	4.52	2.80
	부동산업	(7)	4.29	2.29	1.11
	그 밖의 업종	(4)	6.50	2.75	1.25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28)	5.04	2.75	1.74
	1억~2억 미만	(43)	8.63	4.10	2.56
	2억~4억 미만	(45)	11.56	6.73	3.65
	4억 이상	(12)	23.00	13.50	4.25
	미개업	(2)	5.00	2.50	1.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27)	4.96	2.70	1.77
	1억~2억 미만	(50)	7.88	3.77	2.40
	2억~4억 미만	(41)	12.17	7.03	3.79
	4억 이상	(12)	24.25	14.50	4.42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3)	5.06	2.88	1.90
	1억~2억 미만	(45)	8.58	4.10	2.53
	2억~4억 미만	(39)	11.44	6.84	3.69
	4억 이상	(13)	24.54	13.62	4.23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36)	11.44	5.75	2.92
	유지	(35)	12.11	6.50	3.07
	감소	(59)	8.17	4.89	2.76



응답자 특성(2019년)

(Base: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 n: 131,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사례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전체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체		(131)	9.57	5.19	2.66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5)	10.40	4.20	2.08
	보건업	(32)	14.41	8.25	3.41
	숙박 및 음식점업	(50)	8.72	4.92	2.78
	교육 서비스업	(3)	0.00	0.00	0.00
	도매 및 소매업	(30)	8.43	4.08	2.59
	부동산업	(7)	4.29	2.53	1.21
	그 밖의 업종	(4)	5.50	2.00	0.93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28)	4.54	2.45	1.70
	1억~2억 미만	(43)	7.93	3.55	2.03
	2억~4억 미만	(45)	10.98	6.52	3.51
	4억 이상	(12)	23.08	13.08	4.25
	미개업	(3)	5.00	3.00	1.67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27)	4.63	2.54	1.76
	1억~2억 미만	(50)	7.04	3.15	1.93
	2억~4억 미만	(41)	11.71	6.88	3.66
	4억 이상	(12)	24.42	14.17	4.42
	미개업	(1)	4.00	3.00	2.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3)	4.12	2.23	1.48
	1억~2억 미만	(46)	7.76	3.64	2.28
	2억~4억 미만	(39)	11.23	6.82	3.56
	4억 이상	(13)	24.85	13.38	4.31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36)	12.50	6.36	3.19
	유지	(35)	12.00	6.50	3.01
	감소	(59)	6.44	3.75	2.13
	해당 없음	(1)	4.00	3.00	2.00

14.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500만원 이하 한도 여부

Q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이 한도인 500만원보다 적었습니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500만원보다 적음 70.3%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500만원 이하 한도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500만원보다 적다가 70.3%로 500만원이었다 29.7%보다 높게 나타남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500만원 이하 한도 여부

(Base: 전체, n: 155,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

구분		사례수	500만원보다 적음	500만원이었음
전체		(155)	70.3	29.7
산업 분류	사업서비스업	(6)	66.7	33.3
	보건업	(41)	48.8	51.2
	숙박 및 음식점업	(60)	71.7	28.3
	교육 서비스업	(5)	100.0	0.0
	도매 및 소매업	(31)	87.1	12.9
	부동산업	(8)	75.0	25.0
	그 밖의 업종	(4)	10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90.6	9.4
	1억~2억 미만	(49)	87.8	12.2
	2억~4억 미만	(52)	50.0	50.0
	4억 이상	(19)	42.1	57.9
	미개업	(3)	10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90.3	9.7
	1억~2억 미만	(56)	87.5	12.5
	2억~4억 미만	(47)	48.9	51.1
	4억 이상	(20)	40.0	60.0
	미개업	(1)	10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89.2	10.8
	1억~2억 미만	(52)	84.6	15.4
	2억~4억 미만	(45)	51.1	48.9
	4억 이상	(21)	42.9	57.1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74.5	25.5
	유지	(41)	63.4	36.6
	감소	(62)	71.0	29.0
	해당 없음	(1)	100.0	0.0

15.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운영방식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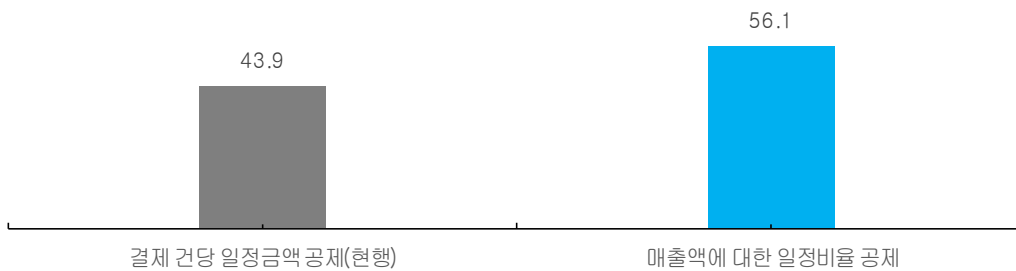
Q 귀사는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 공제 56.1% > 결제 건당 일정금액 공제 43.9%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운영방식의 의견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 공제가 56.1%로 현행인 결제 건당 일정금액 공제 43.9%보다 높게 나타남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 운영방식 의견]

(Base: 전체, n: 155,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제 건당 일정금액 공제 (현행)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 공제
전체		(155)	43.9	56.1
산업 분류	사업 서비스업	(6)	66.7	33.3
	보건업	(41)	43.9	56.1
	숙박 및 음식점업	(60)	36.7	63.3
	교육 서비스업	(5)	40.0	60.0
	도매 및 소매업	(31)	51.6	48.4
	부동산업	(8)	62.5	37.5
	그 밖의 업종	(4)	25.0	75.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56.3	43.8
	1억~2억 미만	(49)	44.9	55.1
	2억~4억 미만	(52)	40.4	59.6
	4억 이상	(19)	31.6	68.4
	미개업	(3)	33.3	66.7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54.8	45.2
	1억~2억 미만	(56)	42.9	57.1
	2억~4억 미만	(47)	42.6	57.4
	4억 이상	(20)	30.0	70.0
	미개업	(1)	10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45.9	54.1
	1억~2억 미만	(52)	46.2	53.8
	2억~4억 미만	(45)	44.4	55.6
	4억 이상	(21)	33.3	66.7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51.0	49.0
	유지	(41)	48.8	51.2
	감소	(62)	33.9	66.1
	해당 없음	(1)	100.0	0.0

16.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결제 건당 적정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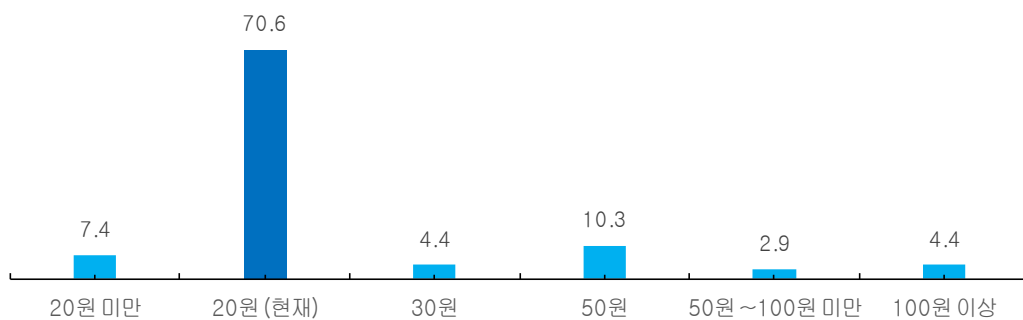
Q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가 결제 건당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금영수증 세액 공제 결제 건당 적정 수준 20원(현행) 70.6%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결제 건당 적정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행인 20원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원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결제 건당 적정 수준]

(Base: 결제 건당 일정금액 공제라는 응답자, n: 68,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결제 건당 일정금액 공제라는 응답자, n: 68,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원 미만	20원 (현재)	30원	50원	50원 ~ 100원 미만	100원 이상
전체		(68)	7.4	70.6	4.4	10.3	2.9	4.4
산업 분류	사업 서비스업	(4)	25.0	75.0	0.0	0.0	0.0	0.0
	보건업	(18)	0.0	83.3	5.6	11.1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22)	13.6	54.5	4.5	18.2	4.5	4.5
	교육 서비스업	(2)	0.0	10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16)	6.3	81.3	0.0	0.0	0.0	12.5
	부동산업	(5)	0.0	40.0	20.0	20.0	20.0	0.0
	그 밖의 업종	(1)	0.0	100.0	0.0	0.0	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18)	0.0	83.3	5.6	5.6	5.6	0.0
	1억~2억 미만	(22)	9.1	59.1	4.5	13.6	4.5	9.1
	2억~4억 미만	(21)	14.3	66.7	4.8	9.5	0.0	4.8
	4억 이상	(6)	0.0	100.0	0.0	0.0	0.0	0.0
	미개업	(1)	0.0	0.0	0.0	100.0	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17)	0.0	82.4	5.9	5.9	5.9	0.0
	1억~2억 미만	(24)	8.3	62.5	4.2	12.5	4.2	8.3
	2억~4억 미만	(20)	15.0	65.0	5.0	10.0	0.0	5.0
	4억 이상	(6)	0.0	100.0	0.0	0.0	0.0	0.0
	미개업	(1)	0.0	0.0	0.0	10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17)	5.9	76.5	5.9	5.9	5.9	0.0
	1억~2억 미만	(24)	4.2	62.5	4.2	16.7	4.2	8.3
	2억~4억 미만	(20)	15.0	65.0	5.0	10.0	0.0	5.0
	4억 이상	(7)	0.0	100.0	0.0	0.0	0.0	0.0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26)	11.5	76.9	3.8	3.8	0.0	3.8
	유지	(20)	5.0	70.0	5.0	10.0	10.0	0.0
	감소	(21)	4.8	66.7	4.8	14.3	0.0	9.5
	해당 없음	(1)	0.0	0.0	0.0	100.0	0.0	0.0

17.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매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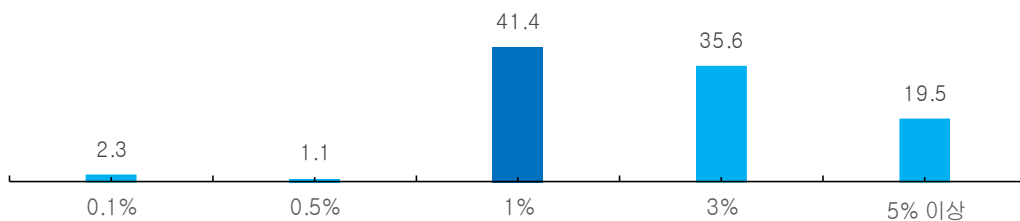
Q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가 매출의 몇 %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액공제 매출 1% 비율 41.4% > 3% 비율 35.6%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매출 비율에 대해 알아본 결과, 1%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 35.6%, 5% 이상 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매출 비율]

(Base: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공제라는 응답자, n: 87,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공제라는 응답자, n: 87,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1%	0.5%	1%	3%	5% 이상
전체		(87)	2.3	1.1	41.4	35.6	19.5
산업 분류	사업 서비스업	(2)	0.0	50.0	0.0	0.0	50.0
	보건업	(23)	0.0	0.0	47.8	39.1	13.0
	숙박 및 음식점업	(38)	5.3	0.0	28.9	44.7	21.1
	교육 서비스업	(3)	0.0	0.0	10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15)	0.0	0.0	53.3	20.0	26.7
	부동산업	(3)	0.0	0.0	33.3	33.3	33.3
	그 밖의 업종	(3)	0.0	0.0	66.7	33.3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14)	7.1	0.0	50.0	21.4	21.4
	1억~2억 미만	(27)	3.7	0.0	40.7	37.0	18.5
	2억~4억 미만	(31)	0.0	3.2	41.9	32.3	22.6
	4억 이상	(13)	0.0	0.0	38.5	46.2	15.4
	미개업	(2)	0.0	0.0	0.0	100.0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14)	7.1	0.0	42.9	28.6	21.4
	1억~2억 미만	(32)	3.1	0.0	43.8	34.4	18.8
	2억~4억 미만	(27)	0.0	3.7	37.0	37.0	22.2
	4억 이상	(14)	0.0	0.0	42.9	42.9	14.3
	미개업	(0)	0.0	0.0	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20)	5.0	0.0	50.0	30.0	15.0
	1억~2억 미만	(28)	3.6	0.0	42.9	32.1	21.4
	2억~4억 미만	(25)	0.0	4.0	32.0	40.0	24.0
	4억 이상	(14)	0.0	0.0	42.9	42.9	14.3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25)	0.0	0.0	52.0	36.0	12.0
	유지	(21)	0.0	4.8	28.6	28.6	38.1
	감소	(41)	4.9	0.0	41.5	39.0	14.6
	해당 없음	(0)	0.0	0.0	0.0	0.0	0.0

18.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기준인 5,000원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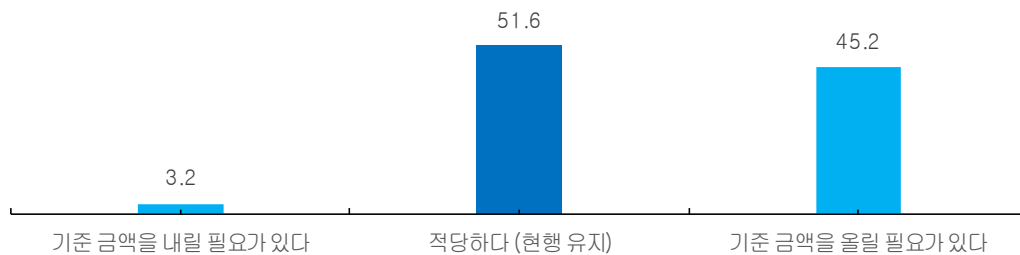
Q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현재 기준인 5,000원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5,000원 적당하다 51.6% ≒ 기준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 45.2%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기준인 5,000원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재 5,000원이 적당하다가 51.6%, 기준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가 45.2%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기준인 5,000원의 수준]

(Base: 전체, n: 155,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기준 금액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적당하다 (현행 유지)	기준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
전체		(155)	3.2	51.6	45.2
산업 분류	사업 서비스업	(6)	0.0	50.0	50.0
	보건업	(41)	4.9	51.2	43.9
	숙박 및 음식점업	(60)	3.3	45.0	51.7
	교육 서비스업	(5)	0.0	60.0	40.0
	도매 및 소매업	(31)	3.2	61.3	35.5
	부동산업	(8)	0.0	75.0	25.0
	그 밖의 업종	(4)	0.0	25.0	75.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6.3	65.6	28.1
	1억~2억 미만	(49)	2.0	46.9	51.0
	2억~4억 미만	(52)	0.0	53.8	46.2
	4억 이상	(19)	5.3	31.6	63.2
	미개업	(3)	33.3	66.7	0.0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6.5	71.0	22.6
	1억~2억 미만	(56)	1.8	50.0	48.2
	2억~4억 미만	(47)	0.0	48.9	51.1
	4억 이상	(20)	5.0	35.0	60.0
	미개업	(1)	10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5.4	62.2	32.4
	1억~2억 미만	(52)	3.8	55.8	40.4
	2억~4억 미만	(45)	0.0	44.4	55.6
	4억 이상	(21)	4.8	38.1	57.1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2.0	54.9	43.1
	유지	(41)	0.0	39.0	61.0
	감소	(62)	4.8	58.1	37.1
	해당 없음	(1)	100.0	0.0	0.0

19. 기준 금액 감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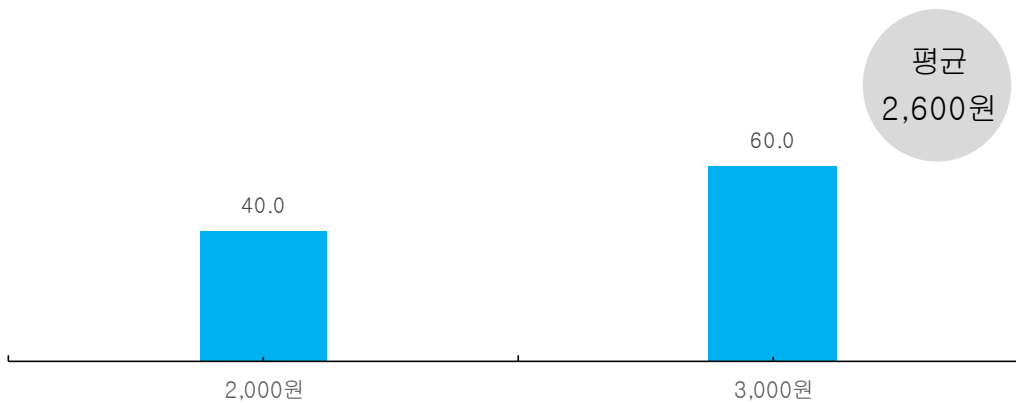
Q 그렇다면 기준 금액으로 얼마나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천원 미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금액 감액 수준 3,000원 60.0%, 평균 2,600원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의 감액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3,000원이 60.0%, 2,000원이 40.0%로 나타났고, 평균 금액은 2,600원으로 나타남

[기준 금액 감액 수준]

(Base: 기준 금액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 n: 5, 단위: %, 원)



20. 기준 금액 증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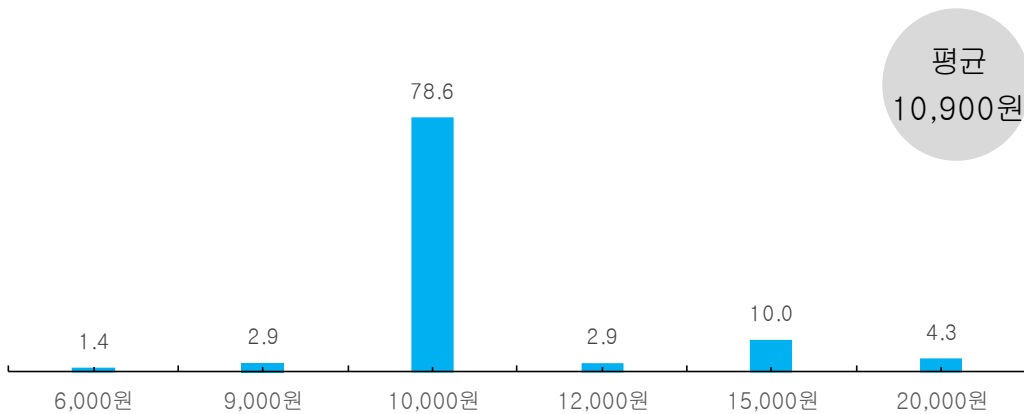
Q 그렇다면 기준 금액으로 얼마나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천원 초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금액 증액 수준 10,000원 78.6%, 평균 10,900원

-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의 증액 수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000원이 78.6%로 나타났고, 평균 금액은 10,900원으로 나타남

[기준 금액 증액 수준]

(Base: 기준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 n: 70, 단위: %, 원)





응답자 특성

(Base: 기준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 n: 70, 단위: 명, %, 원)

구분		사례수	6,000원	9,000원	10,000원	12,000원	15,000원	20,000원	평균(원)
전체		(70)	1.4	2.9	78.6	2.9	10.0	4.3	10,900.00
산업 분류	사업 서비스업	(3)	0.0	0.0	66.7	0.0	33.3	0.0	11,666.67
	보건업	(18)	0.0	5.6	72.2	11.1	5.6	5.6	11,000.00
	숙박 및 음식점업	(31)	0.0	0.0	83.9	0.0	12.9	3.2	10,967.74
	교육 서비스업	(2)	0.0	0.0	100.0	0.0	0.0	0.0	10,000.00
	도매 및 소매업	(11)	9.1	9.1	72.7	0.0	9.1	0.0	10,000.00
	부동산업	(2)	0.0	0.0	50.0	0.0	0.0	50.0	15,000.00
	그 밖의 업종	(3)	0.0	0.0	100.0	0.0	0.0	0.0	10,000.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9)	0.0	11.1	88.9	0.0	0.0	0.0	9,888.89
	1억~2억 미만	(25)	0.0	0.0	80.0	0.0	8.0	12.0	11,600.00
	2억~4억 미만	(24)	4.2	4.2	70.8	8.3	12.5	0.0	10,583.33
	4억 이상	(12)	0.0	0.0	83.3	0.0	16.7	0.0	10,833.33
	미개업	(0)	0.0	0.0	0.0	0.0	0.0	0.0	.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7)	0.0	14.3	85.7	0.0	0.0	0.0	9,857.14
	1억~2억 미만	(27)	0.0	0.0	81.5	0.0	7.4	11.1	11,481.48
	2억~4억 미만	(24)	4.2	4.2	75.0	4.2	12.5	0.0	10,500.00
	4억 이상	(12)	0.0	0.0	75.0	8.3	16.7	0.0	11,000.00
	미개업	(0)	0.0	0.0	0.0	0.0	0.0	0.0	.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12)	0.0	8.3	91.7	0.0	0.0	0.0	9,916.67
	1억~2억 미만	(21)	0.0	0.0	76.2	0.0	9.5	14.3	11,904.76
	2억~4억 미만	(25)	4.0	4.0	76.0	4.0	12.0	0.0	10,480.00
	4억 이상	(12)	0.0	0.0	75.0	8.3	16.7	0.0	11,000.00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22)	4.5	4.5	77.3	4.5	9.1	0.0	10,318.18
	유지	(25)	0.0	4.0	76.0	4.0	8.0	8.0	11,240.00
	감소	(23)	0.0	0.0	82.6	0.0	13.0	4.3	11,086.96
	해당 없음	(0)	0.0	0.0	0.0	0.0	0.0	0.0	.

21.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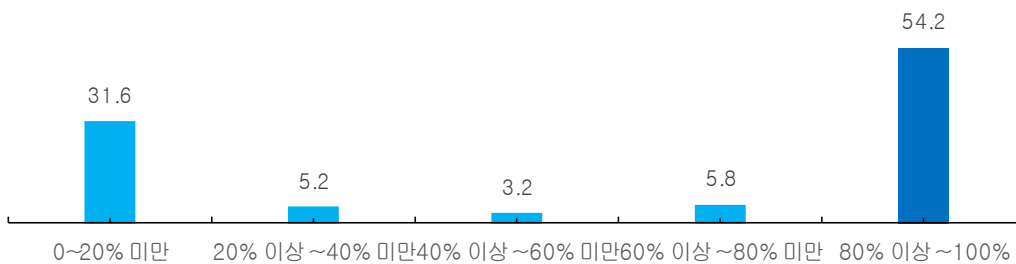
Q 귀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비율이 현금영수증 발급 전체 건수에 비해 몇 %입니까?

자진 발급 80%~100% 비율 54.2% > 0~20% 미만 비율 31.6%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비율에 대해 알아본 결과, 80% 이상~100%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0~20% 미만이 3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비율]

(Base: 전체, n: 155,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0~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전체		(155)	31.6	5.2	3.2	5.8	54.2
산업 분류	사업 서비스업	(6)	66.7	0.0	0.0	16.7	16.7
	보건업	(41)	22.0	12.2	4.9	4.9	56.1
	숙박 및 음식점업	(60)	35.0	0.0	3.3	1.7	60.0
	교육 서비스업	(5)	0.0	0.0	0.0	20.0	80.0
	도매 및 소매업	(31)	35.5	6.5	3.2	9.7	45.2
	부동산업	(8)	25.0	12.5	0.0	0.0	62.5
	그 밖의 업종	(4)	50.0	0.0	0.0	25.0	25.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18.8	6.3	0.0	6.3	68.8
	1억~2억 미만	(49)	32.7	4.1	6.1	8.2	49.0
	2억~4억 미만	(52)	38.5	1.9	3.8	3.8	51.9
	4억 이상	(19)	31.6	15.8	0.0	5.3	47.4
	미개업	(3)	33.3	0.0	0.0	0.0	66.7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16.1	3.2	0.0	6.5	74.2
	1억~2억 미만	(56)	32.1	3.6	5.4	7.1	51.8
	2억~4억 미만	(47)	40.4	4.3	4.3	4.3	46.8
	4억 이상	(20)	30.0	15.0	0.0	5.0	50.0
	미개업	(1)	100.0	0.0	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21.6	8.1	0.0	5.4	64.9
	1억~2억 미만	(52)	30.8	0.0	5.8	7.7	55.8
	2억~4억 미만	(45)	42.2	4.4	4.4	4.4	44.4
	4억 이상	(21)	28.6	14.3	0.0	4.8	52.4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21.6	2.0	2.0	5.9	68.6
	유지	(41)	43.9	9.8	2.4	4.9	39.0
	감소	(62)	30.6	4.8	4.8	6.5	53.2
	해당 없음	(1)	100.0	0.0	0.0	0.0	0.0

22.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한 자진 발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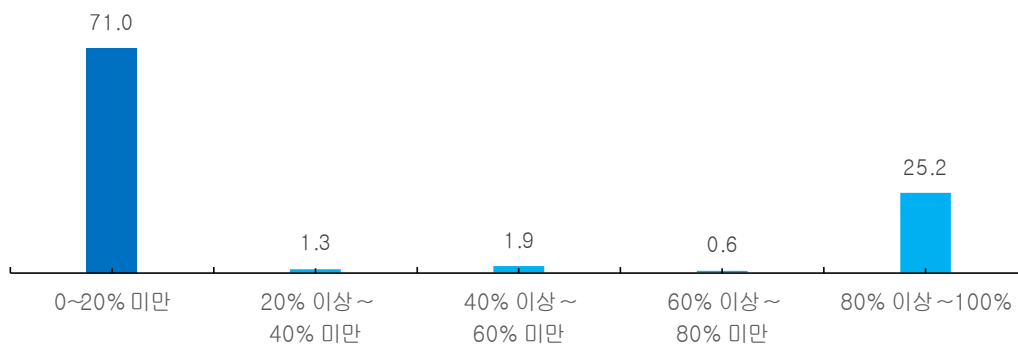
Q 귀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건수는 전체 자진발급 건수에 비해 몇%입니까?

자진 발급 0%~20% 미만 비율 71.0% > 80%~100% 비율 25.2%

-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비율에 대해 알아본 결과, 0~20% 미만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0~100% 미만이 2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한 자진 발급 비율]

(Base: 전체, n: 155,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155,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0~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전체		(155)	71.0	1.3	1.9	0.6	25.2
산업 분류	사업 서비스업	(6)	66.7	0.0	16.7	0.0	16.7
	보건업	(41)	68.3	0.0	2.4	0.0	29.3
	숙박 및 음식점업	(60)	70.0	0.0	0.0	1.7	28.3
	교육 서비스업	(5)	60.0	20.0	0.0	0.0	20.0
	도매 및 소매업	(31)	77.4	3.2	0.0	0.0	19.4
	부동산업	(8)	75.0	0.0	0.0	0.0	25.0
	그 밖의 업종	(4)	75.0	0.0	25.0	0.0	0.0
2017년 매출액	1억 미만	(32)	78.1	3.1	0.0	0.0	18.8
	1억~2억 미만	(49)	67.3	2.0	4.1	0.0	26.5
	2억~4억 미만	(52)	65.4	0.0	1.9	1.9	30.8
	4억 이상	(19)	84.2	0.0	0.0	0.0	15.8
	미개업	(3)	66.7	0.0	0.0	0.0	33.3
2018년 매출액	1억 미만	(31)	77.4	3.2	0.0	0.0	19.4
	1억~2억 미만	(56)	64.3	1.8	3.6	0.0	30.4
	2억~4억 미만	(47)	68.1	0.0	2.1	2.1	27.7
	4억 이상	(20)	85.0	0.0	0.0	0.0	15.0
	미개업	(1)	100.0	0.0	0.0	0.0	0.0
2019년 매출액	1억 미만	(37)	70.3	2.7	0.0	0.0	27.0
	1억~2억 미만	(52)	67.3	1.9	3.8	1.9	25.0
	2억~4억 미만	(45)	68.9	0.0	2.2	0.0	28.9
	4억 이상	(21)	85.7	0.0	0.0	0.0	14.3
2018~2019년 매출액 증감	증가	(51)	90.2	0.0	0.0	0.0	9.8
	유지	(41)	73.2	0.0	2.4	0.0	24.4
	감소	(62)	53.2	3.2	3.2	1.6	38.7
	해당 없음	(1)	100.0	0.0	0.0	0.0	0.0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심층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제4장 소비자 조사결과

1.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득공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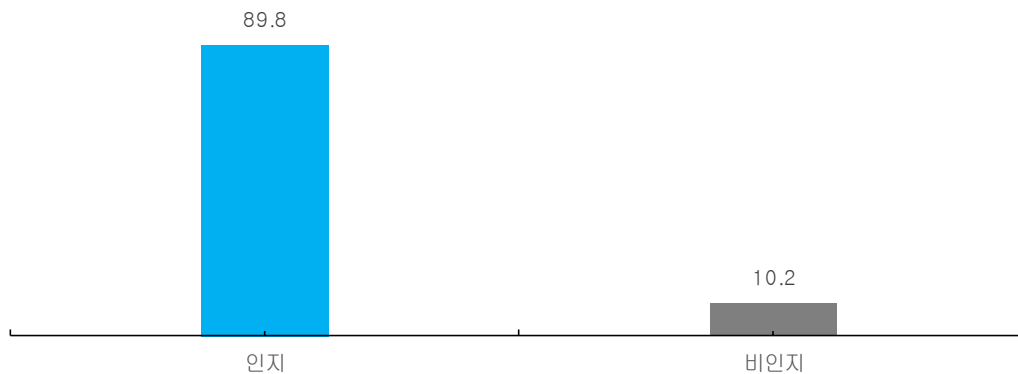
Q 귀하는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근로자 소득공제 알고 있다 89.8% > 모른다 10.2%

-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득공제의 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알고 있다 89.8%로 모른다 10.2%보다 높게 나타남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득공제 인지 여부]

(Base: 전체, n: 500,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50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지	비인지
전체		(500)	89.8	10.2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82)	89.6	10.4
	기타 종사자	(18)	94.4	5.6
직업	관리직	(57)	89.5	10.5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9)	87.8	12.2
	사무직	(291)	92.4	7.6
	서비스직	(28)	85.7	14.3
	판매직	(21)	81.0	19.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6)	96.2	3.8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5)	80.0	20.0
	단순 노무직	(23)	69.6	30.4
출생 연도	20대	(48)	87.5	12.5
	30대	(145)	87.6	12.4
	40대	(183)	90.2	9.8
	50대 이상	(124)	92.7	7.3
성별	남성	(313)	88.8	11.2
	여성	(187)	91.4	8.6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5)	85.5	14.5
	대졸	(389)	90.0	10.0
	대학원 이상	(56)	92.9	7.1
결혼 유무	미혼	(171)	87.1	12.9
	기혼	(315)	91.7	8.3
	비혼	(14)	78.6	21.4
가구원 수	1명	(67)	83.6	16.4
	2명	(74)	90.5	9.5
	3명	(154)	91.6	8.4
	4명	(172)	91.3	8.7
	5명 이상	(33)	84.8	15.2
거주지역	서울	(157)	89.2	10.8
	인천/경기	(170)	92.9	7.1
	대전/세종/충청	(40)	80.0	20.0
	광주/전라	(24)	87.5	12.5
	대구/경북	(35)	91.4	8.6
	부산/울산/경남	(64)	89.1	10.9
	강원/제주	(10)	90.0	10.0

2. 현금영수증 발급횟수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영향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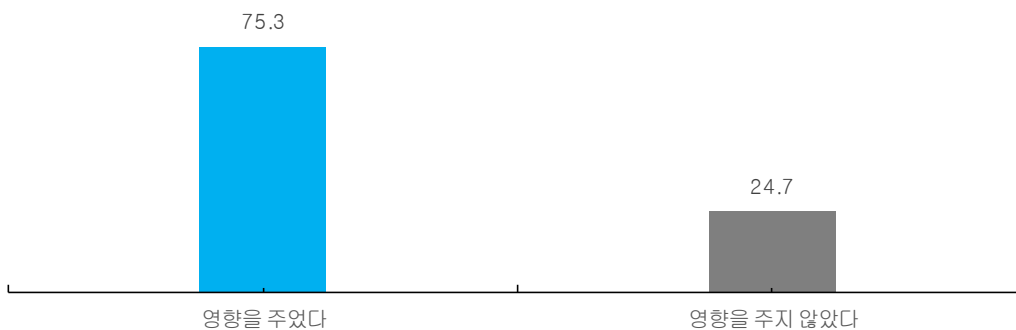
Q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가 현금영수증 발급 횟수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영향 주었다 75.3% > 영향 주지 않았다 24.7%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가 현금영수증 발급횟수의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영향을 주었다가 75.3%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24.7%보다 높게 나타남

[현금영수증 발급횟수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영향 유무]

(Base: 근로자 소득공제를 알고 있는 응답자, n: 449,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근로자 소득공제를 알고 있는 응답자, n: 44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체		(449)	75.3	24.7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32)	76.2	23.8
	기타 종사자	(17)	52.9	47.1
직업	관리직	(51)	84.3	15.7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3)	65.1	34.9
	사무직	(269)	77.7	22.3
	서비스직	(24)	83.3	16.7
	판매직	(17)	64.7	35.3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5)	76.0	24.0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4)	25.0	75.0
	단순 노무직	(16)	43.8	56.3
출생 연도	20대	(42)	81.0	19.0
	30대	(127)	73.2	26.8
	40대	(165)	76.4	23.6
	50대 이상	(115)	73.9	26.1
성별	남성	(278)	73.7	26.3
	여성	(171)	77.8	22.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7)	68.1	31.9
	대졸	(350)	75.1	24.9
	대학원 이상	(52)	82.7	17.3
결혼 유무	미혼	(149)	69.8	30.2
	기혼	(289)	78.9	21.1
	비혼	(11)	54.5	45.5
가구원 수	1명	(56)	69.6	30.4
	2명	(67)	76.1	23.9
	3명	(141)	70.2	29.8
	4명	(157)	79.6	20.4
	5명 이상	(28)	85.7	14.3
거주지역	서울	(140)	75.0	25.0
	인천/경기	(158)	72.8	27.2
	대전/세종/충청	(32)	84.4	15.6
	광주/전라	(21)	71.4	28.6
	대구/경북	(32)	78.1	21.9
	부산/울산/경남	(57)	77.2	22.8
	강원/제주	(9)	77.8	22.2

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비인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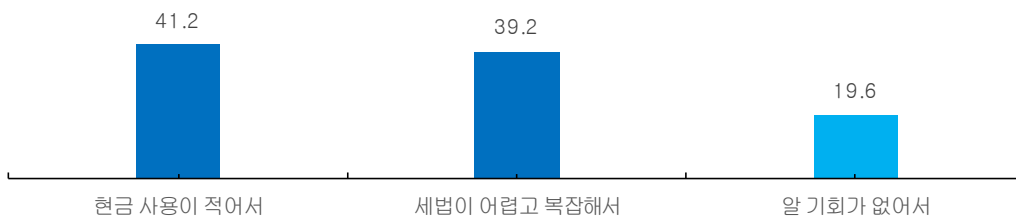
Q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금사용이 적어서 41.2% ≡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39.2%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비인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금사용이 적어서가 41.2%,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39.2% 등으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비인지 이유]

(Base: 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 n: 51,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 n: 5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금 사용이 적어서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알 기회가 없어서
전체		(51)	41.2	39.2	19.6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50)	42.0	40.0	18.0
	기타 종사자	(1)	0.0	0.0	100.0
직업	관리직	(6)	50.0	33.3	16.7
	전문가 및 관련 직종	(6)	50.0	50.0	0.0
	사무직	(22)	31.8	40.9	27.3
	서비스직	(4)	50.0	25.0	25.0
	판매직	(4)	25.0	50.0	25.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	100.0	0.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	0.0	100.0	0.0
	단순 노무직	(7)	57.1	28.6	14.3
출생 연도	20대	(6)	66.7	0.0	33.3
	30대	(18)	38.9	44.4	16.7
	40대	(18)	22.2	50.0	27.8
	50대 이상	(9)	66.7	33.3	0.0
성별	남성	(35)	48.6	37.1	14.3
	여성	(16)	25.0	43.8	31.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	25.0	62.5	12.5
	대졸	(39)	48.7	30.8	20.5
	대학원 이상	(4)	0.0	75.0	25.0
결혼 유무	미혼	(22)	36.4	36.4	27.3
	기혼	(26)	42.3	42.3	15.4
	비혼	(3)	66.7	33.3	0.0
가구원 수	1명	(11)	54.5	36.4	9.1
	2명	(7)	42.9	57.1	0.0
	3명	(13)	15.4	61.5	23.1
	4명	(15)	46.7	20.0	33.3
	5명 이상	(5)	60.0	20.0	20.0
거주지역	서울	(17)	35.3	47.1	17.6
	인천/경기	(12)	25.0	50.0	25.0
	대전/세종/충청	(8)	62.5	25.0	12.5
	광주/전라	(3)	33.3	0.0	66.7
	대구/경북	(3)	33.3	66.7	0.0
	부산/울산/경남	(7)	57.1	28.6	14.3
	강원/제주	(1)	100.0	0.0	0.0

4.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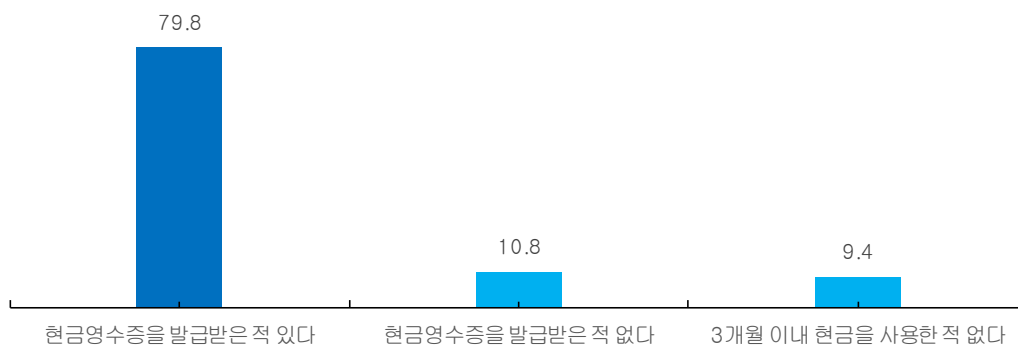
Q 귀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 79.8%

-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다 7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 10.8%, 3개월 이내 현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 9.4%의 순으로 나타남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Base: 전체, n: 500,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50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적이 없다	3개월 이내 현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
전체		(500)	79.8	10.8	9.4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82)	80.1	10.4	9.5
	기타 종사자	(18)	72.2	22.2	5.6
직업	관리직	(57)	86.0	7.0	7.0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9)	81.6	10.2	8.2
	사무직	(291)	83.2	7.9	8.9
	서비스직	(28)	82.1	7.1	10.7
	판매직	(21)	47.6	33.3	19.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6)	84.6	7.7	7.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5)	40.0	20.0	40.0
	단순 노무직	(23)	47.8	43.5	8.7
출생 연도	20대	(48)	81.3	10.4	8.3
	30대	(145)	77.9	9.0	13.1
	40대	(183)	84.2	6.6	9.3
	50대 이상	(124)	75.0	19.4	5.6
성별	남성	(313)	76.4	14.4	9.3
	여성	(187)	85.6	4.8	9.6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5)	69.1	16.4	14.5
	대졸	(389)	80.2	10.5	9.3
	대학원 이상	(56)	87.5	7.1	5.4
결혼 유무	미혼	(171)	73.1	13.5	13.5
	기혼	(315)	84.1	8.9	7.0
	비혼	(14)	64.3	21.4	14.3
가구원 수	1명	(67)	71.6	14.9	13.4
	2명	(74)	78.4	14.9	6.8
	3명	(154)	82.5	9.1	8.4
	4명	(172)	79.7	9.3	11.0
	5명 이상	(33)	87.9	9.1	3.0
거주 지역	서울	(157)	80.3	10.2	9.6
	인천/경기	(170)	82.4	10.0	7.6
	대전/세종/충청	(40)	70.0	20.0	10.0
	광주/전라	(24)	83.3	4.2	12.5
	대구/경북	(35)	80.0	8.6	11.4
	부산/울산/경남	(64)	78.1	12.5	9.4
	강원/제주	(10)	70.0	10.0	20.0

5.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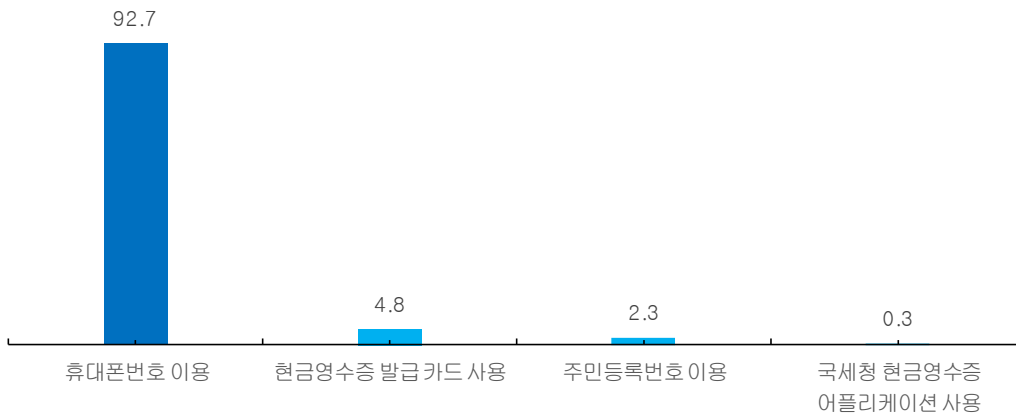
Q 주로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은 무엇입니까?

휴대폰번호 이용 92.7%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 대해 알아본 결과, 휴대폰번호 이용 9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Base: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n: 399,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n: 399,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적이 없다	3개월 이내 현금을 사용한 적 없다
전체		(399)	92.7	4.8	2.3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386)	92.7	4.9	2.1
	기타 종사자	(13)	92.3	0.0	7.7
직업	관리직	(49)	91.8	8.2	0.0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0)	92.5	7.5	0.0
	사무직	(242)	94.6	2.5	2.9
	서비스직	(23)	91.3	4.3	4.3
	판매직	(10)	80.0	10.0	0.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2)	86.4	9.1	4.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2)	100.0	0.0	0.0
	단순 노무직	(11)	81.8	18.2	0.0
출생 연도	20대	(39)	92.3	5.1	2.6
	30대	(113)	95.6	2.7	1.8
	40대	(154)	94.8	2.6	1.9
	50대 이상	(93)	86.0	10.8	3.2
성별	남성	(239)	91.2	6.3	2.1
	여성	(160)	95.0	2.5	2.5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8)	92.1	5.3	2.6
	대졸	(312)	92.6	5.1	1.9
	대학원 이상	(49)	93.9	2.0	4.1
결혼 유무	미혼	(125)	92.8	4.0	2.4
	기혼	(265)	92.8	4.9	2.3
	비혼	(9)	88.9	11.1	0.0
가구원 수	1명	(48)	97.9	2.1	0.0
	2명	(58)	91.4	5.2	1.7
	3명	(127)	94.5	3.9	1.6
	4명	(137)	91.2	5.8	2.9
	5명 이상	(29)	86.2	6.9	6.9
거주 지역	서울	(126)	92.9	5.6	1.6
	인천/경기	(140)	93.6	5.0	1.4
	대전/세종/충청	(28)	92.9	0.0	3.6
	광주/전라	(20)	85.0	10.0	5.0
	대구/경북	(28)	92.9	3.6	3.6
	부산/울산/경남	(50)	94.0	4.0	2.0
	강원/제주	(7)	85.7	0.0	14.3

6. 3개월 이내 현금 구매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액 차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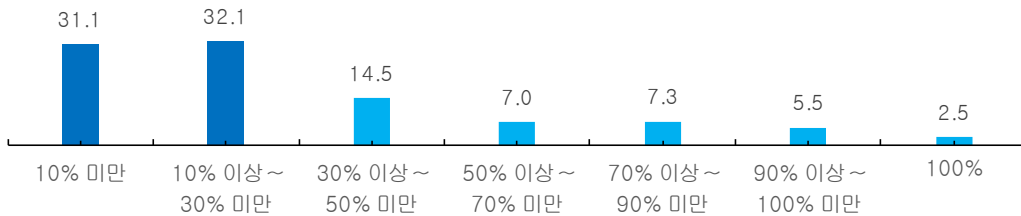
Q 귀하께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전체 현금 구매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10%~30% 미만 32.1% ≒ 10% 미만 31.1%

- 3개월 이내 현금 구매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액 차지 비율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30% 미만 31.1%, 10% 미만 31.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50% 미만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3개월 이내 현금 구매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액 차지 비율]

(Base: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n: 399,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n: 39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전체		(399)	31.1	32.1	14.5	7.0	7.3	5.5	2.5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386)	29.5	32.9	15.0	7.0	7.5	5.7	2.3
	기타 종사자	(13)	76.9	7.7	0.0	7.7	0.0	0.0	7.7
직업	관리직	(49)	36.7	28.6	14.3	0.0	8.2	8.2	4.1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0)	35.0	42.5	7.5	5.0	7.5	2.5	0.0
	사무직	(242)	29.3	31.8	14.9	7.4	8.3	5.4	2.9
	서비스직	(23)	21.7	30.4	17.4	13.0	0.0	13.0	4.3
	판매직	(10)	30.0	30.0	20.0	10.0	10.0	0.0	0.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2)	36.4	40.9	18.2	4.5	0.0	0.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2)	0.0	50.0	50.0	0.0	0.0	0.0	0.0
단순 노무직	(11)	45.5	0.0	9.1	27.3	9.1	9.1	0.0	
출생 연도	20대	(39)	25.6	30.8	12.8	12.8	7.7	2.6	7.7
	30대	(113)	28.3	31.0	15.0	3.5	9.7	10.6	1.8
	40대	(154)	31.8	33.8	15.6	9.1	5.2	2.6	1.9
	50대 이상	(93)	35.5	31.2	12.9	5.4	7.5	5.4	2.2
성별	남성	(239)	27.2	34.3	14.6	8.8	7.5	5.0	2.5
	여성	(160)	36.9	28.8	14.4	4.4	6.9	6.3	2.5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8)	36.8	31.6	15.8	7.9	2.6	5.3	0.0
	대졸	(312)	30.4	30.4	15.4	6.4	8.3	6.4	2.6
	대학원 이상	(49)	30.6	42.9	8.2	10.2	4.1	0.0	4.1
결혼 유무	미혼	(125)	36.0	29.6	12.0	8.0	7.2	4.0	3.2
	기혼	(265)	29.1	33.2	15.5	6.4	7.5	6.0	2.3
	비혼	(9)	22.2	33.3	22.2	11.1	0.0	11.1	0.0
가구원 수	1명	(48)	39.6	33.3	4.2	10.4	6.3	0.0	6.3
	2명	(58)	41.4	25.9	10.3	5.2	5.2	8.6	3.4
	3명	(127)	26.0	38.6	15.0	6.3	7.1	5.5	1.6
	4명	(137)	27.7	32.1	18.2	6.6	8.0	5.8	1.5
	5명 이상	(29)	34.5	13.8	20.7	10.3	10.3	6.9	3.4
거주 지역	서울	(126)	31.0	27.0	15.1	7.1	8.7	6.3	4.8
	인천/경기	(140)	33.6	32.9	11.4	7.9	6.4	5.7	2.1
	대전/세종/충청	(28)	28.6	28.6	17.9	10.7	10.7	3.6	0.0
	광주/전라	(20)	35.0	40.0	10.0	5.0	5.0	5.0	0.0
	대구/경북	(28)	17.9	39.3	25.0	0.0	10.7	3.6	3.6
	부산/울산/경남	(50)	30.0	34.0	18.0	8.0	4.0	6.0	0.0
	강원/제주	(7)	42.9	57.1	0.0	0.0	0.0	0.0	0.0

7.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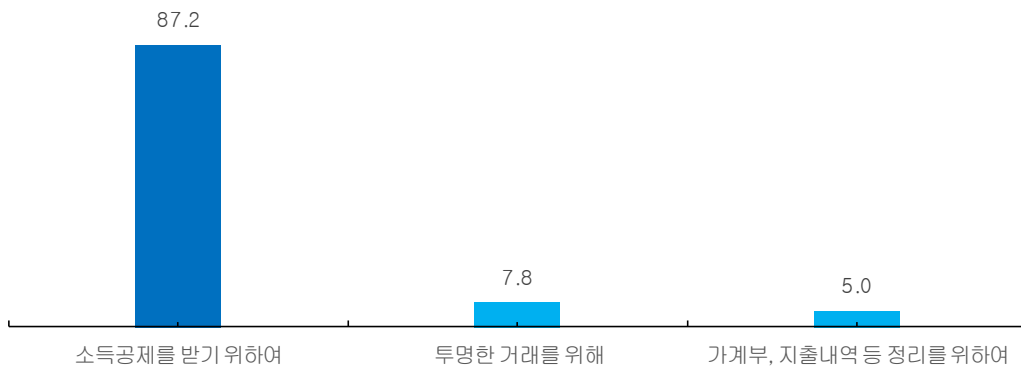
Q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87.2%

-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가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

(Base: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n: 399,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n: 39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투명한 거래를 위해	가계부, 지출내역 등 정리를 위하여
전체		(399)	87.2	7.8	5.0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386)	87.3	7.5	5.2
	기타 종사자	(13)	84.6	15.4	0.0
직업	관리직	(49)	89.8	4.1	6.1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0)	82.5	15.0	2.5
	사무직	(242)	88.0	7.0	5.0
	서비스직	(23)	87.0	8.7	4.3
	판매직	(10)	90.0	0.0	10.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2)	81.8	13.6	4.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2)	100.0	0.0	0.0
	단순 노무직	(11)	81.8	9.1	9.1
출생 연도	20대	(39)	87.2	5.1	7.7
	30대	(113)	90.3	3.5	6.2
	40대	(154)	89.0	5.8	5.2
	50대 이상	(93)	80.6	17.2	2.2
성별	남성	(239)	90.0	7.5	2.5
	여성	(160)	83.1	8.1	8.8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8)	86.8	2.6	10.5
	대졸	(312)	87.5	8.0	4.5
	대학원 이상	(49)	85.7	10.2	4.1
결혼 유무	미혼	(125)	87.2	5.6	7.2
	기혼	(265)	87.5	9.1	3.4
	비혼	(9)	77.8	0.0	22.2
가구원 수	1명	(48)	89.6	4.2	6.3
	2명	(58)	96.6	3.4	0.0
	3명	(127)	83.5	10.2	6.3
	4명	(137)	86.9	8.8	4.4
	5명 이상	(29)	82.8	6.9	10.3
거주 지역	서울	(126)	85.7	8.7	5.6
	인천/경기	(140)	90.0	6.4	3.6
	대전/세종/충청	(28)	82.1	7.1	10.7
	광주/전라	(20)	85.0	10.0	5.0
	대구/경북	(28)	89.3	3.6	7.1
	부산/울산/경남	(50)	84.0	12.0	4.0
	강원/제주	(7)	100.0	0.0	0.0

8. 현금영수증 미발급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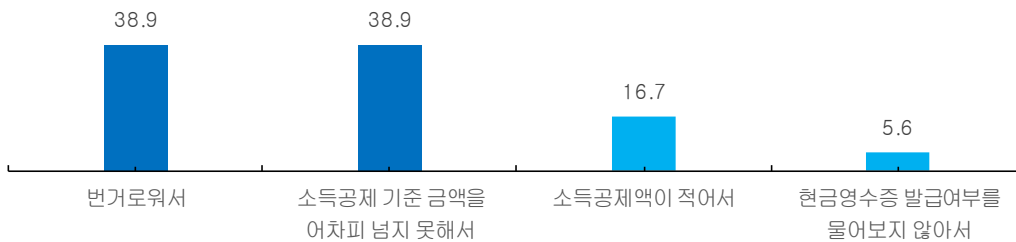
Q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거로워서 38.9% ≡ 소득공제 기준 금액을 어차피 넘지 못해서 38.9%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번거로워서가 38.9%, 소득공제 기준 금액을 어차피 넘지 못해서 38.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득공제액이 적어서 16.7%,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어보지 않아서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미발급 이유]

(Base: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 n: 54,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 n: 54,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소득공제 기준 금액을 넘지 못해서	번거로워서	소득공제액이 적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몰아보지않아서
전체		(54)	38.9	38.9	16.7	5.6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50)	42.0	36.0	16.0	6.0
	기타 종사자	(4)	0.0	75.0	25.0	0.0
직업	관리직	(4)	25.0	25.0	50.0	0.0
	전문가 및 관련 직종	(5)	40.0	40.0	0.0	20.0
	사무직	(23)	47.8	26.1	21.7	4.3
	서비스직	(2)	50.0	50.0	0.0	0.0
	판매직	(7)	28.6	57.1	14.3	0.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	0.0	100.0	0.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	0.0	100.0	0.0	0.0
단순 노무직	(10)	40.0	40.0	10.0	10.0	
출생 연도	20대	(5)	20.0	60.0	20.0	0.0
	30대	(13)	46.2	30.8	15.4	7.7
	40대	(12)	50.0	8.3	33.3	8.3
	50대 이상	(24)	33.3	54.2	8.3	4.2
성별	남성	(45)	40.0	40.0	13.3	6.7
	여성	(9)	33.3	33.3	33.3	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9)	44.4	33.3	22.2	0.0
	대졸	(41)	36.6	39.0	17.1	7.3
	대학원 이상	(4)	50.0	50.0	0.0	0.0
결혼 유무	미혼	(23)	43.5	39.1	13.0	4.3
	기혼	(28)	35.7	39.3	17.9	7.1
	비혼	(3)	33.3	33.3	33.3	0.0
가구원 수	1명	(10)	50.0	40.0	10.0	0.0
	2명	(11)	54.5	27.3	18.2	0.0
	3명	(14)	35.7	57.1	0.0	7.1
	4명	(16)	31.3	31.3	25.0	12.5
	5명 이상	(3)	0.0	33.3	66.7	0.0
거주 지역	서울	(16)	43.8	25.0	25.0	6.3
	인천/경기	(17)	47.1	41.2	5.9	5.9
	대전/세종/충청	(8)	12.5	50.0	37.5	0.0
	광주/전라	(1)	100.0	0.0	0.0	0.0
	대구/경북	(3)	33.3	66.7	0.0	0.0
	부산/울산/경남	(8)	25.0	50.0	12.5	12.5
	강원/제주	(1)	100.0	0.0	0.0	0.0

9.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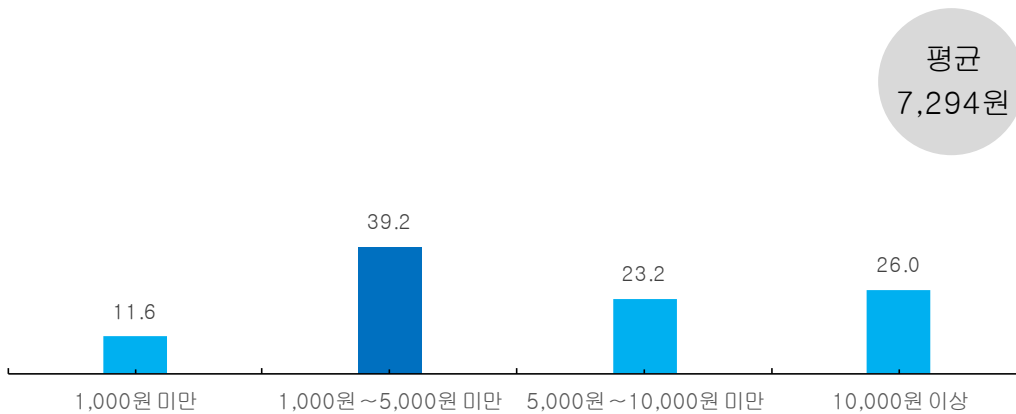
- Q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최소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500원이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겠다면, 500원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1,000원~5,000원 미만 39.2%, 평균 발급 최소금액 7,294원

-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 금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00원~5,000원 미만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000원 이상 26.0%, 5,000원~10,000원 미만 23.2%, 1,000원 미만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 금액]

(Base: 전체, n: 500,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50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000원 미만	1,000원 ~5,000원 미만	5,000원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평균(원)
전체		(500)	11.6	39.2	23.2	26.0	7,294.70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82)	11.6	39.2	23.7	25.5	7,332.68
	기타 종사자	(18)	11.1	38.9	11.1	38.9	6,277.78
직업	관리직	(57)	7.0	36.8	29.8	26.3	6,096.49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9)	6.1	40.8	24.5	28.6	11,757.14
	사무직	(291)	13.4	41.2	21.6	23.7	6,482.27
	서비스직	(28)	10.7	42.9	21.4	25.0	13,875.00
	판매직	(21)	4.8	33.3	33.3	28.6	5,052.38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6)	23.1	26.9	30.8	19.2	4,677.3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5)	0.0	60.0	0.0	40.0	5,120.00
	단순 노무직	(23)	8.7	26.1	13.0	52.2	8,504.35
출생 연도	20대	(48)	14.6	47.9	10.4	27.1	6,068.75
	30대	(145)	15.2	42.1	22.8	20.0	4,407.10
	40대	(183)	13.7	38.3	24.0	24.0	9,133.93
	50대 이상	(124)	3.2	33.9	27.4	35.5	8,431.53
성별	남성	(313)	8.9	36.4	24.6	30.0	9,032.68
	여성	(187)	16.0	43.9	20.9	19.3	4,385.67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5)	14.5	34.5	21.8	29.1	4,896.91
	대졸	(389)	11.6	40.4	23.7	24.4	7,059.95
	대학원 이상	(56)	8.9	35.7	21.4	33.9	11,280.36
결혼 유무	미혼	(171)	15.2	39.2	21.1	24.6	6,166.14
	기혼	(315)	9.5	38.7	24.4	27.3	8,091.87
	비혼	(14)	14.3	50.0	21.4	14.3	3,142.86
가구원 수	1명	(67)	13.4	31.3	22.4	32.8	8,365.82
	2명	(74)	10.8	33.8	27.0	28.4	5,009.59
	3명	(154)	10.4	42.2	22.1	25.3	6,489.74
	4명	(172)	12.2	40.1	23.8	23.8	8,128.55
	5명 이상	(33)	12.1	48.5	18.2	21.2	9,654.55
거주 지역	서울	(157)	13.4	38.9	22.9	24.8	6,315.41
	인천/경기	(170)	12.9	34.7	24.1	28.2	8,610.12
	대전/세종/충청	(40)	5.0	50.0	20.0	25.0	4,587.50
	광주/전라	(24)	12.5	41.7	12.5	33.3	11,212.50
	대구/경북	(35)	8.6	37.1	25.7	28.6	4,923.14
	부산/울산/경남	(64)	10.9	42.2	29.7	17.2	5,315.63
	강원/제주	(10)	0.0	60.0	0.0	40.0	22,700.00

10.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처벌 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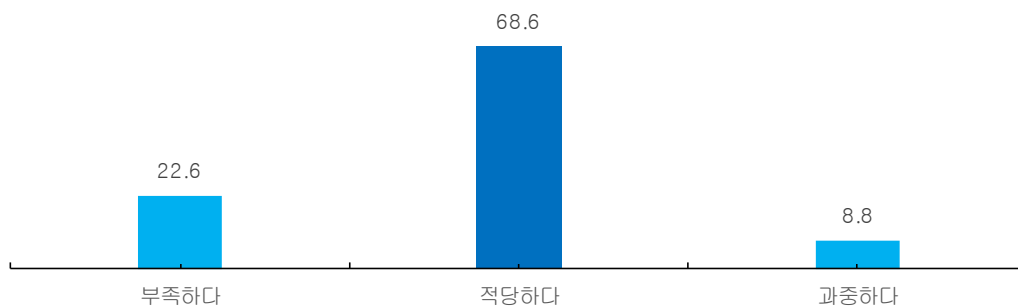
Q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소득세에 부과됩니다. 단,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상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 68.6% > 부족하다 22.6%

-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적당하다가 68.6%, 부족하다 22.6%, 과중하다 8.8%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처벌 수위]

(Base: 전체, n: 500,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50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족하다	적당하다	과중하다
전체		(500)	22.6	68.6	8.8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82)	22.4	68.9	8.7
	기타 종사자	(18)	27.8	61.1	11.1
직업	관리직	(57)	22.8	66.7	10.5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9)	16.3	75.5	8.2
	사무직	(291)	21.3	71.1	7.6
	서비스직	(28)	32.1	60.7	7.1
	판매직	(21)	9.5	71.4	19.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6)	42.3	46.2	11.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5)	20.0	80.0	0.0
	단순 노무직	(23)	30.4	56.5	13.0
출생 연도	20대	(48)	20.8	72.9	6.3
	30대	(145)	26.9	63.4	9.7
	40대	(183)	21.9	68.9	9.3
	50대 이상	(124)	19.4	72.6	8.1
성별	남성	(313)	25.2	64.5	10.2
	여성	(187)	18.2	75.4	6.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5)	29.1	60.0	10.9
	대졸	(389)	21.3	69.9	8.7
	대학원 이상	(56)	25.0	67.9	7.1
결혼 유무	미혼	(171)	25.7	67.8	6.4
	기혼	(315)	20.3	69.2	10.5
	비혼	(14)	35.7	64.3	0.0
가구원 수	1명	(67)	34.3	59.7	6.0
	2명	(74)	27.0	62.2	10.8
	3명	(154)	20.8	72.7	6.5
	4명	(172)	18.6	72.7	8.7
	5명 이상	(33)	18.2	60.6	21.2
거주 지역	서울	(157)	22.3	69.4	8.3
	인천/경기	(170)	24.1	65.3	10.6
	대전/세종/충청	(40)	17.5	67.5	15.0
	광주/전라	(24)	16.7	75.0	8.3
	대구/경북	(35)	20.0	77.1	2.9
	부산/울산/경남	(64)	25.0	70.3	4.7
	강원/제주	(10)	30.0	60.0	10.0

11. 적당한 가산세율(가산세 부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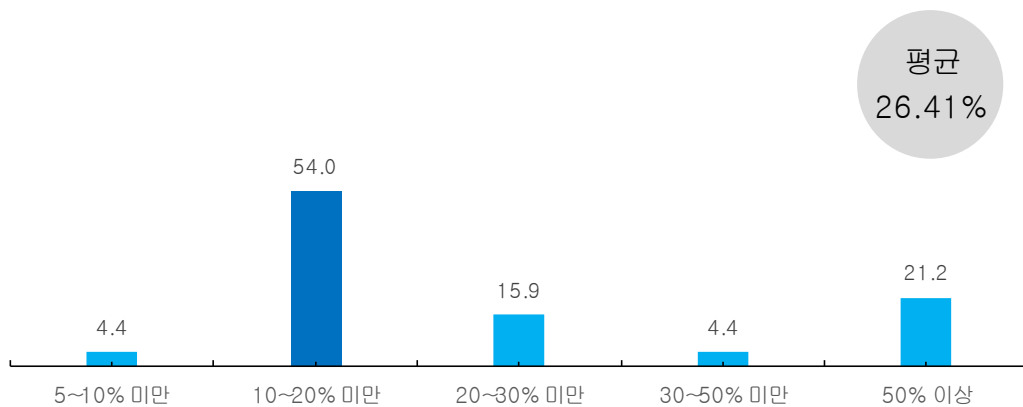
Q 부족하다면 적당한 수준의 가산세율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0~20% 미만 54.0%, 평균 가산세율 26.41%

- 가산세 부족할 때 적당한 가산세율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20% 미만이 5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 이상 21.2%, 20~30% 미만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26.41%로 나타남

[적당한 가산세율 (가산세 부족시)]

(Base: 현금영수증 가산세의 처벌 수위가 부족하다는 응답자, n: 113,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현금영수증 가산세의 처벌 수위가 부족하다는 응답자, n: 113,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50% 미만	50% 이상	평균(%)
전체		(113)	4.4	54.0	15.9	4.4	21.2	26.41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108)	4.6	54.6	14.8	4.6	21.3	26.15
	기타 종사자	(5)	0.0	40.0	40.0	0.0	20.0	32.00
직업	관리직	(13)	0.0	53.8	30.8	0.0	15.4	23.46
	전문가 및 관련 직종	(8)	12.5	62.5	0.0	12.5	12.5	17.00
	사무직	(62)	3.2	62.9	11.3	3.2	19.4	23.77
	서비스직	(9)	11.1	22.2	22.2	0.0	44.4	40.89
	판매직	(2)	0.0	0.0	50.0	0.0	50.0	60.0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1)	0.0	36.4	27.3	9.1	27.3	35.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	100.0	0.0	0.0	0.0	0.0	6.00
	단순 노무직	(7)	0.0	57.1	14.3	14.3	14.3	27.14
출생 연도	20대	(10)	10.0	30.0	30.0	0.0	30.0	24.70
	30대	(39)	7.7	61.5	12.8	2.6	15.4	20.77
	40대	(40)	2.5	57.5	12.5	2.5	25.0	29.30
	50대 이상	(24)	0.0	45.8	20.8	12.5	20.8	31.46
성별	남성	(79)	5.1	48.1	19.0	5.1	22.8	28.38
	여성	(34)	2.9	67.6	8.8	2.9	17.6	21.8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6)	6.3	43.8	12.5	6.3	31.3	34.88
	대졸	(83)	3.6	54.2	16.9	3.6	21.7	26.63
	대학원 이상	(14)	7.1	64.3	14.3	7.1	7.1	15.43
결혼 유무	미혼	(44)	4.5	63.6	11.4	0.0	20.5	21.55
	기혼	(64)	3.1	45.3	20.3	7.8	23.4	31.06
	비혼	(5)	20.0	80.0	0.0	0.0	0.0	9.60
가구원 수	1명	(23)	0.0	56.5	21.7	0.0	21.7	25.22
	2명	(20)	5.0	65.0	10.0	5.0	15.0	22.80
	3명	(32)	3.1	62.5	12.5	6.3	15.6	20.69
	4명	(32)	6.3	40.6	21.9	6.3	25.0	30.00
	5명 이상	(6)	16.7	33.3	0.0	0.0	50.0	54.33
거주 지역	서울	(35)	0.0	62.9	11.4	2.9	22.9	29.71
	인천/경기	(41)	7.3	46.3	19.5	2.4	24.4	25.76
	대전/세종/충청	(7)	14.3	42.9	28.6	0.0	14.3	25.29
	광주/전라	(4)	0.0	100.0	0.0	0.0	0.0	10.00
	대구/경북	(7)	0.0	57.1	14.3	14.3	14.3	21.43
	부산/울산/경남	(16)	0.0	50.0	18.8	12.5	18.8	28.44
	강원/제주	(3)	33.3	33.3	0.0	0.0	33.3	22.00

12. 적당한 가산금액(가산세 부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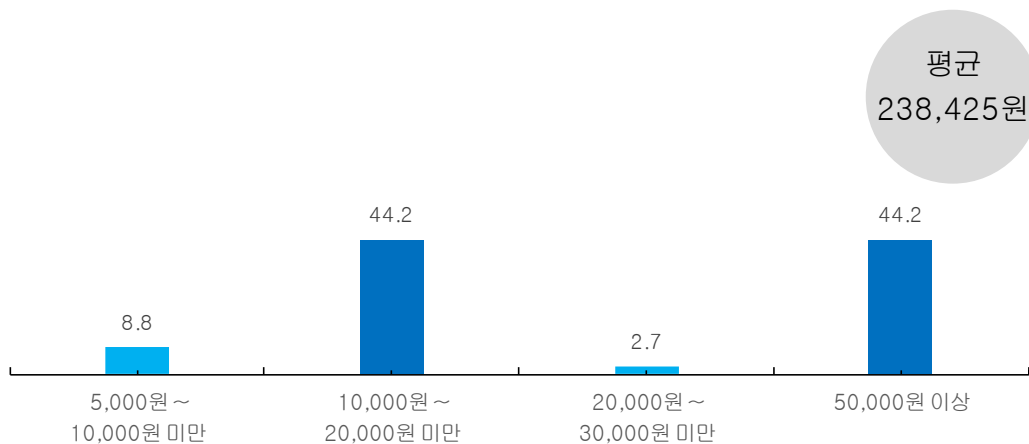
Q 부족하다면 적당한 수준의 가산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0원~20,000원 미만, 50,000원 이상 44.2%,
평균 가산금액 238,425원**

- 가산세 부족할 때 적당한 가산세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000원~20,000원 미만, 50,000원이 44.2%로 나타났고, 평균 금액은 238,425원으로 나타남

[적당한 가산세액 (가산세 부족시)]

(Base: 현금영수증 가산세의 처벌 수위가 부족하다는 응답자, n: 113, 단위: %, 원)





응답자 특성

(Base: 현금영수증 가산세의 처벌 수위가 부족하다는 응답자, n: 113, 단위: 명, %, 원)

구분		사례수	5,000원 ~10,000원 미만	10,000원 ~20,000원 미만	20,000원 ~30,000원 미만	50,000원 이상	평균(원)
전체		(113)	8.8	44.2	2.7	44.2	238,424.78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108)	8.3	45.4	2.8	43.5	247,000.00
	기타 종사자	(5)	20.0	20.0	0.0	60.0	53,200.00
직업	관리직	(13)	7.7	46.2	7.7	38.5	180,153.85
	전문가 및 관련 직종	(8)	12.5	37.5	0.0	50.0	42,000.00
	사무직	(62)	6.5	46.8	3.2	43.5	222,024.19
	서비스직	(9)	33.3	33.3	0.0	33.3	405,277.78
	판매직	(2)	0.0	50.0	0.0	50.0	505,000.0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1)	0.0	36.4	0.0	63.6	499,545.4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1)	100.0	0.0	0.0	0.0	6,000.00
	단순 노무직	(7)	0.0	57.1	0.0	42.9	48,571.43
출생 연도	20대	(10)	20.0	50.0	10.0	20.0	48,150.00
	30대	(39)	7.7	38.5	2.6	51.3	378,153.85
	40대	(40)	5.0	47.5	0.0	47.5	271,450.00
	50대 이상	(24)	12.5	45.8	4.2	37.5	35,604.17
성별	남성	(79)	7.6	48.1	3.8	40.5	232,177.22
	여성	(34)	11.8	35.3	0.0	52.9	252,941.18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6)	25.0	31.3	0.0	43.8	35,968.75
	대졸	(83)	6.0	43.4	2.4	48.2	218,620.48
	대학원 이상	(14)	7.1	64.3	7.1	21.4	587,214.29
결혼 유무	미혼	(44)	6.8	47.7	4.5	40.9	217,556.82
	기혼	(64)	9.4	42.2	1.6	46.9	268,648.44
	비혼	(5)	20.0	40.0	0.0	40.0	35,200.00
가구원 수	1명	(23)	4.3	39.1	4.3	52.2	155,043.48
	2명	(20)	15.0	55.0	5.0	25.0	27,675.00
	3명	(32)	6.3	28.1	0.0	65.6	340,750.00
	4명	(32)	6.3	59.4	3.1	31.3	365,203.13
	5명 이상	(6)	33.3	33.3	0.0	33.3	38,666.67
거주 지역	서울	(35)	2.9	40.0	2.9	54.3	209,171.43
	인천/경기	(41)	12.2	41.5	4.9	41.5	230,500.00
	대전/세종/충청	(7)	14.3	71.4	0.0	14.3	36,571.43
	광주/전라	(4)	0.0	100.0	0.0	0.0	10,000.00
	대구/경북	(7)	14.3	42.9	0.0	42.9	741,142.86
	부산/울산/경남	(16)	6.3	31.3	0.0	62.5	291,281.25
	강원/제주	(3)	33.3	66.7	0.0	0.0	8,666.67

13. 적당한 가산세율(가산세 과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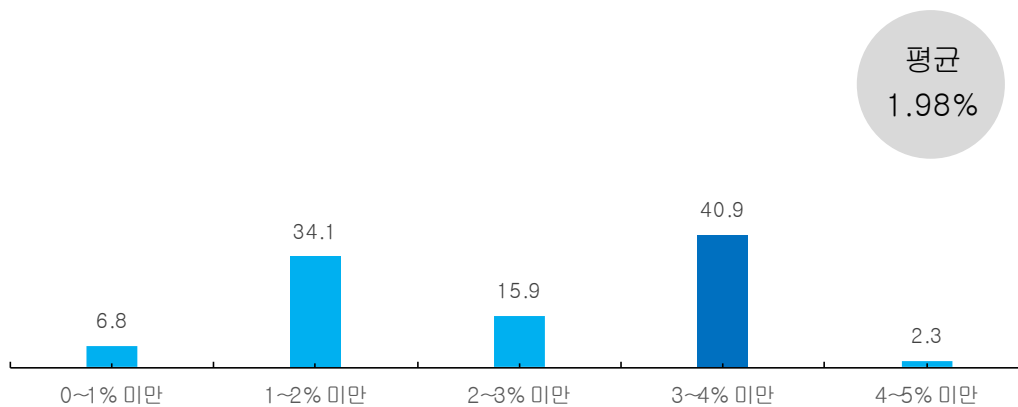
Q 과중하다면 적당한 수준의 가산세율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3~4% 미만 40.9%, 평균 가산세율 1.98%

- 가산세 과중할 때 적당한 가산세율에 대해 알아본 결과, 3~4% 미만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 34.1%로 나타났고, 평균 세율은 1.98%로 나타남

[적당한 가산세율(가산세 과중시)]

(Base: 현금영수증 가산세의 처벌 수위가 과중하다는 응답자, n: 44,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현금영수증 가산세의 처벌 수위가 과중하다는 응답자, n: 44,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평균(%)
전체		(44)	6.8	34.1	15.9	40.9	2.3	1.98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2)	7.1	33.3	16.7	40.5	2.4	1.98
	기타 종사자	(2)	0.0	50.0	0.0	50.0	0.0	2.00
직업	관리직	(6)	0.0	66.7	16.7	16.7	0.0	1.50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	0.0	0.0	25.0	75.0	0.0	2.75
	사무직	(22)	9.1	36.4	13.6	36.4	4.5	1.91
	서비스직	(2)	0.0	0.0	0.0	100.0	0.0	3.00
	판매직	(4)	0.0	25.0	25.0	50.0	0.0	2.25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3)	0.0	33.3	0.0	66.7	0.0	2.33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직	(0) (3)	0.0 33.3	0.0 33.3	0.0 33.3	0.0 0.0	0.0 0.0	. 1.07
출생 연도	20대	(3)	33.3	33.3	0.0	33.3	0.0	1.33
	30대	(14)	7.1	35.7	7.1	50.0	0.0	2.00
	40대	(17)	0.0	35.3	23.5	41.2	0.0	2.06
	50대 이상	(10)	10.0	30.0	20.0	30.0	10.0	2.02
성별	남성	(32)	6.3	37.5	15.6	37.5	3.1	1.94
	여성	(12)	8.3	25.0	16.7	50.0	0.0	2.08
교육 수준	고졸 이하	(6)	16.7	0.0	16.7	66.7	0.0	2.37
	대졸	(34)	5.9	41.2	17.6	32.4	2.9	1.85
	대학원 이상	(4)	0.0	25.0	0.0	75.0	0.0	2.50
결혼 유무	미혼	(11)	18.2	27.3	27.3	27.3	0.0	1.64
	기혼	(33)	3.0	36.4	12.1	45.5	3.0	2.10
	비혼	(0)	0.0	0.0	0.0	0.0	0.0	.
가구원 수	1명	(4)	25.0	50.0	0.0	25.0	0.0	1.30
	2명	(8)	0.0	37.5	37.5	25.0	0.0	1.88
	3명	(10)	20.0	30.0	10.0	30.0	10.0	1.80
	4명	(15)	0.0	40.0	6.7	53.3	0.0	2.13
	5명 이상	(7)	0.0	14.3	28.6	57.1	0.0	2.43
거주 지역	서울	(13)	7.7	61.5	0.0	30.8	0.0	1.54
	인천/경기	(18)	11.1	16.7	16.7	55.6	0.0	2.18
	대전/세종/충청	(6)	0.0	50.0	33.3	16.7	0.0	1.67
	광주/전라	(2)	0.0	0.0	50.0	50.0	0.0	2.50
	대구/경북	(1)	0.0	0.0	0.0	100.0	0.0	3.00
	부산/울산/경남	(3)	0.0	33.3	33.3	33.3	0.0	2.00
	강원/제주	(1)	0.0	0.0	0.0	0.0	100.0	4.00

14. 적당한 가산금액(가산세 과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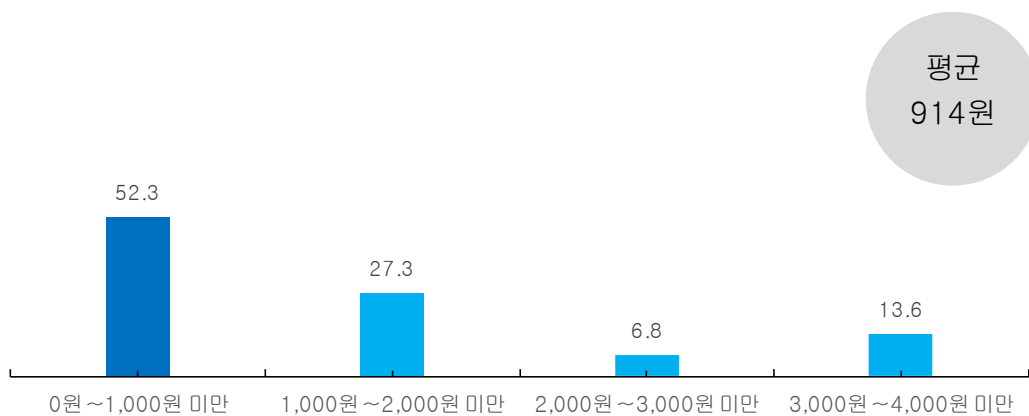
Q 과중하다면 적당한 수준의 가산세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0원~1,000원 미만 52.3%, 평균 가산금액 914원

- 가산세 과중할 때 적당한 가산세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0원~1,000원 미만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00원~2,000원 미만 27.3%, 3,000원~4,000원 미만 13.6% 등으로 나타났고, 평균 세액은 914원으로 나타남

[적당한 가산세액(가산세 과중시)]

(Base: 현금영수증 가산세의 처벌 수위가 과중하다는 응답자, n: 44, 단위: %, 원)





응답자 특성

(Base: 현금영수증 가산세의 처벌 수위가 과중하다는 응답자, n: 44, 단위: %, 원)

구분		사례수	0원 ~1,000원 미만	1,000원 ~2,000원 미만	2,000원 ~3,000원 미만	3,000원 ~4,000원 미만	평균(원)
전체		(44)	52.3	27.3	6.8	13.6	914.09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2)	54.8	26.2	4.8	14.3	886.19
	기타 종사자	(2)	0.0	50.0	50.0	0.0	1,500.00
직업	관리직	(6)	50.0	16.7	16.7	16.7	1,035.00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	50.0	0.0	0.0	50.0	1,650.00
	사무직	(22)	59.1	31.8	0.0	9.1	695.91
	서비스직	(2)	50.0	50.0	0.0	0.0	650.00
	판매직	(4)	50.0	25.0	25.0	0.0	825.0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3)	0.0	33.3	33.3	33.3	2,000.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직	(0) (3)	0.0 66.7	0.0 33.3	0.0 0.0	0.0 0.0	. 500.00
출생 연도	20대	(3)	66.7	0.0	33.3	0.0	700.00
	30대	(14)	64.3	21.4	0.0	14.3	779.29
	40대	(17)	47.1	29.4	5.9	17.6	1,015.29
	50대 이상	(10)	40.0	40.0	10.0	10.0	995.00
성별	남성	(32)	53.1	25.0	9.4	12.5	922.19
	여성	(12)	50.0	33.3	0.0	16.7	892.5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6)	33.3	16.7	16.7	33.3	1,583.33
	대졸	(34)	55.9	32.4	5.9	5.9	717.94
	대학원 이상	(4)	50.0	0.0	0.0	50.0	1,577.50
결혼 유무	미혼	(11)	63.6	36.4	0.0	0.0	500.00
	기혼	(33)	48.5	24.2	9.1	18.2	1,052.12
	비혼	(0)	0.0	0.0	0.0	0.0	.
가구원 수	1명	(4)	75.0	25.0	0.0	0.0	525.00
	2명	(8)	62.5	12.5	25.0	0.0	687.50
	3명	(10)	40.0	30.0	0.0	30.0	1,245.00
	4명	(15)	53.3	26.7	6.7	13.3	884.67
	5명 이상	(7)	42.9	42.9	0.0	14.3	985.71
거주 지역	서울	(13)	53.8	30.8	0.0	15.4	855.38
	인천/경기	(18)	38.9	22.2	16.7	22.2	1,302.78
	대전/세종/충청	(6)	66.7	33.3	0.0	0.0	416.67
	광주/전라	(2)	50.0	50.0	0.0	0.0	500.00
	대구/경북	(1)	100.0	0.0	0.0	0.0	500.00
	부산/울산/경남	(3)	66.7	33.3	0.0	0.0	500.00
	강원/제주	(1)	100.0	0.0	0.0	0.0	150.00

15. 월평균 세후 개인소득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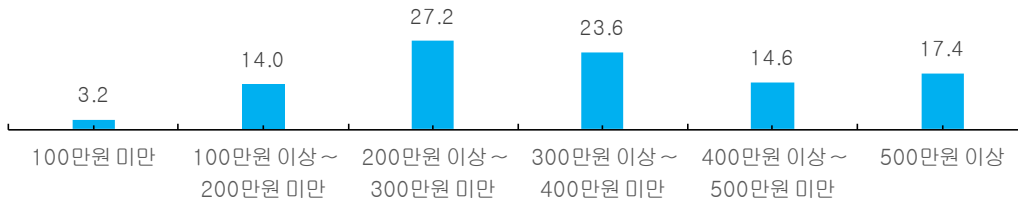
Q 다음 중 귀하 개인의 한달 소득 금액(월평균 세후 개인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00만원~300만원 미만 27.2% ≒ 300만원~400만원 미만 23.6%

- 월평균 세후 개인소득 구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7.2%, 300만원~400만원 미만 23.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 17.4%, 400만원~500만원 미만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월평균 세후 개인소득 구간]

(Base: 전체, n: 500,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500, 단위: %)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체		(500)	3.2	14.0	27.2	23.6	14.6	17.4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82)	1.9	13.9	27.8	24.5	14.3	17.6
	기타 종사자	(18)	38.9	16.7	11.1	0.0	22.2	11.1
직업	관리직	(57)	1.8	1.8	14.0	17.5	15.8	49.1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9)	6.1	12.2	16.3	26.5	12.2	26.5
	사무직	(291)	0.3	12.7	29.2	26.5	17.2	14.1
	서비스직	(28)	10.7	21.4	32.1	10.7	10.7	14.3
	판매직	(21)	14.3	28.6	23.8	19.0	9.5	4.8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6)	3.8	15.4	38.5	30.8	11.5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5)	20.0	20.0	40.0	20.0	0.0	0.0
	단순 노무직	(23)	13.0	39.1	39.1	8.7	0.0	0.0
출생 연도	20대	(48)	8.3	18.8	43.8	22.9	6.3	0.0
	30대	(145)	3.4	15.9	37.2	24.1	10.3	9.0
	40대	(183)	2.2	9.8	23.0	28.4	19.7	16.9
	50대 이상	(124)	2.4	16.1	15.3	16.1	15.3	34.7
성별	남성	(313)	2.2	8.3	23.6	24.9	19.8	21.1
	여성	(187)	4.8	23.5	33.2	21.4	5.9	11.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5)	3.6	25.5	40.0	20.0	7.3	3.6
	대졸	(389)	3.3	13.6	27.2	24.4	14.4	17.0
	대학원 이상	(56)	1.8	5.4	14.3	21.4	23.2	33.9
결혼 유무	미혼	(171)	6.4	18.7	38.6	21.6	7.0	7.6
	기혼	(315)	1.3	10.8	20.3	25.1	19.0	23.5
	비혼	(14)	7.1	28.6	42.9	14.3	7.1	0.0
가구원 수	1명	(67)	6.0	16.4	35.8	23.9	10.4	7.5
	2명	(74)	2.7	16.2	32.4	23.0	13.5	12.2
	3명	(154)	1.9	20.8	21.4	24.0	14.3	17.5
	4명	(172)	3.5	7.6	25.6	24.4	18.0	20.9
	5명 이상	(33)	3.0	6.1	33.3	18.2	9.1	30.3
거주 지역	서울	(157)	2.5	14.0	22.9	21.0	17.2	22.3
	인천/경기	(170)	2.4	9.4	32.9	22.4	13.5	19.4
	대전/세종/충청	(40)	5.0	17.5	22.5	25.0	22.5	7.5
	광주/전라	(24)	4.2	20.8	29.2	41.7	4.2	0.0
	대구/경북	(35)	5.7	22.9	25.7	25.7	8.6	11.4
	부산/울산/경남	(64)	4.7	17.2	25.0	25.0	12.5	15.6
	강원/제주	(10)	0.0	10.0	30.0	20.0	20.0	20.0

16. 개인 한달 소비금액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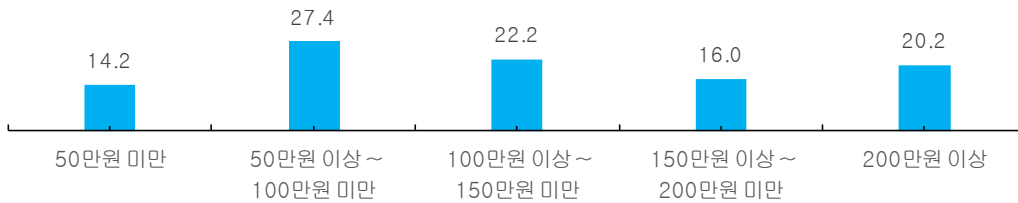
Q 다음 중 귀하 개인의 한달 소비(지출)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50만원~100만원 미만 소비 27.4% ≒ 100만원~150만원
미만 소비 22.2%

- 개인 한달 소비금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50만원~100만원 미만이 27.4%, 100만원~150만원 미만 22.2%, 200만원 이상 20.2% 등으로 나타남

[개인 한달 소비금액 구간]

(Base: 전체, n: 500,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500, 단위: %)

구분		사례수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체		(500)	14.2	27.4	22.2	16.0	20.2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82)	13.5	27.2	22.8	16.2	20.3
	기타 종사자	(18)	33.3	33.3	5.6	11.1	16.7
직업	관리직	(57)	19.3	12.3	15.8	17.5	35.1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9)	18.4	18.4	18.4	14.3	30.6
	사무직	(291)	10.3	28.2	26.1	16.5	18.9
	서비스직	(28)	25.0	32.1	17.9	10.7	14.3
	판매직	(21)	19.0	38.1	19.0	19.0	4.8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6)	7.7	38.5	11.5	26.9	15.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직	(5) (23)	20.0 30.4	60.0 39.1	20.0 17.4	0.0 4.3	0.0 8.7
출생 연도	20대	(48)	12.5	43.8	33.3	10.4	0.0
	30대	(145)	14.5	29.0	28.3	17.9	10.3
	40대	(183)	14.8	24.6	17.5	16.4	26.8
	50대 이상	(124)	13.7	23.4	17.7	15.3	29.8
성별	남성	(313)	13.1	24.3	19.8	18.5	24.3
	여성	(187)	16.0	32.6	26.2	11.8	13.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5)	25.5	34.5	18.2	12.7	9.1
	대졸	(389)	13.4	28.0	22.4	16.2	20.1
	대학원 이상	(56)	8.9	16.1	25.0	17.9	32.1
결혼 유무	미혼	(171)	17.0	35.7	31.0	8.8	7.6
	기혼	(315)	13.3	21.9	18.1	19.4	27.3
	비혼	(14)	0.0	50.0	7.1	28.6	14.3
가구원 수	1명	(67)	13.4	31.3	31.3	16.4	7.5
	2명	(74)	12.2	33.8	18.9	20.3	14.9
	3명	(154)	13.6	24.7	27.9	11.0	22.7
	4명	(172)	16.3	26.7	16.3	18.6	22.1
	5명 이상	(33)	12.1	21.2	15.2	15.2	36.4
거주 지역	서울	(157)	9.6	28.7	20.4	19.7	21.7
	인천/경기	(170)	12.9	25.3	22.9	14.7	24.1
	대전/세종/충청	(40)	5.0	45.0	15.0	12.5	22.5
	광주/전라	(24)	25.0	16.7	37.5	12.5	8.3
	대구/경북	(35)	25.7	34.3	14.3	22.9	2.9
	부산/울산/경남	(64)	25.0	18.8	26.6	10.9	18.8
	강원/제주	(10)	10.0	30.0	30.0	10.0	20.0

17. 소비 중 현금 차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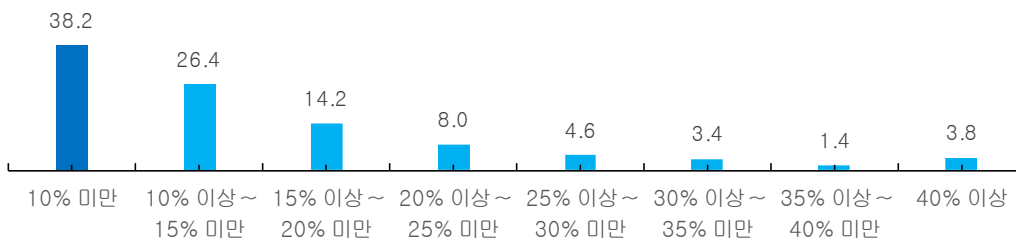
Q 귀하의 소비 중 현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10% 미만 현금 소비 38.2% > 10%~15% 미만 현금 소비 26.4%

- 개인 한달 소비금액 중 현금 차지 비율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 미만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15% 미만 26.4%, 15%~20% 미만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소비 중 현금 차지 비율]

(Base: 전체, n: 500, 단위: %)





응답자 특성

(Base: 전체, n: 500, 단위: %)

구분		사례수	10% 미만	10% 이상 ~ 15% 미만	15%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25% 미만	25%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35% 미만	35% 이상 ~ 40% 미만	40% 이상
전체		(500)	38.2	26.4	14.2	8.0	4.6	3.4	1.4	3.8
활동 상태	임금 근로자	(482)	37.1	26.8	14.7	8.3	4.8	3.5	1.2	3.5
	기타 종사자	(18)	66.7	16.7	0.0	0.0	0.0	0.0	5.6	11.1
직업	관리직	(57)	42.1	28.1	12.3	5.3	0.0	8.8	1.8	1.8
	전문가 및 관련 직종	(49)	42.9	32.7	12.2	2.0	4.1	0.0	2.0	4.1
	사무직	(291)	34.4	27.5	14.4	9.3	5.5	3.4	1.4	4.1
	서비스직	(28)	39.3	25.0	10.7	7.1	7.1	7.1	0.0	3.6
	판매직	(21)	52.4	19.0	14.3	9.5	0.0	0.0	0.0	4.8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6)	34.6	19.2	19.2	15.4	7.7	0.0	0.0	3.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5)	60.0	0.0	20.0	0.0	20.0	0.0	0.0	0.0
단순 노무직	(23)	52.2	17.4	17.4	4.3	0.0	0.0	4.3	4.3	
출생 연도	20대	(48)	35.4	25.0	20.8	10.4	6.3	0.0	0.0	2.1
	30대	(145)	37.2	26.9	9.0	13.1	3.4	6.9	0.7	2.8
	40대	(183)	38.3	25.1	15.8	6.0	6.0	1.6	2.2	4.9
	50대 이상	(124)	40.3	28.2	15.3	4.0	3.2	3.2	1.6	4.0
성별	남성	(313)	40.3	23.6	15.3	7.3	4.8	2.9	1.6	4.2
	여성	(187)	34.8	31.0	12.3	9.1	4.3	4.3	1.1	3.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5)	41.8	27.3	10.9	3.6	5.5	3.6	0.0	7.3
	대졸	(389)	38.3	25.2	14.9	8.5	4.9	3.6	1.5	3.1
	대학원 이상	(56)	33.9	33.9	12.5	8.9	1.8	1.8	1.8	5.4
결혼 유무	미혼	(171)	42.7	24.6	14.0	8.8	4.1	1.8	1.2	2.9
	기혼	(315)	35.2	27.9	14.6	7.6	4.8	4.4	1.6	3.8
	비혼	(14)	50.0	14.3	7.1	7.1	7.1	0.0	0.0	14.3
가구원 수	1명	(67)	43.3	25.4	10.4	9.0	6.0	1.5	1.5	3.0
	2명	(74)	52.7	27.0	8.1	5.4	5.4	0.0	0.0	1.4
	3명	(154)	30.5	28.6	19.5	6.5	5.2	4.5	1.9	3.2
	4명	(172)	39.5	26.2	11.6	7.6	3.5	3.5	1.7	6.4
	5명 이상	(33)	24.2	18.2	24.2	21.2	3.0	9.1	0.0	0.0
거주 지역	서울	(157)	39.5	29.3	14.0	7.0	3.2	3.8	1.9	1.3
	인천/경기	(170)	40.0	28.8	13.5	7.1	3.5	2.9	0.6	3.5
	대전/세종/충청	(40)	42.5	17.5	10.0	15.0	5.0	2.5	0.0	7.5
	광주/전라	(24)	29.2	29.2	8.3	20.8	4.2	0.0	0.0	8.3
	대구/경북	(35)	28.6	25.7	17.1	0.0	14.3	8.6	2.9	2.9
	부산/울산/경남	(64)	31.3	20.3	18.8	9.4	6.3	3.1	3.1	7.8
	강원/제주	(10)	70.0	10.0	20.0	0.0	0.0	0.0	0.0	0.0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심층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제5장 사업자 조사결과

1. 기업 유형

Q 귀사의 기업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기업 50.0%, 중견기업 50.0%

- 기업 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기업이 50%, 중견기업이 50%로 나타남

[기업 유형]

(Base: 전체, n: 10, 단위: %)



2. 주식회사 상장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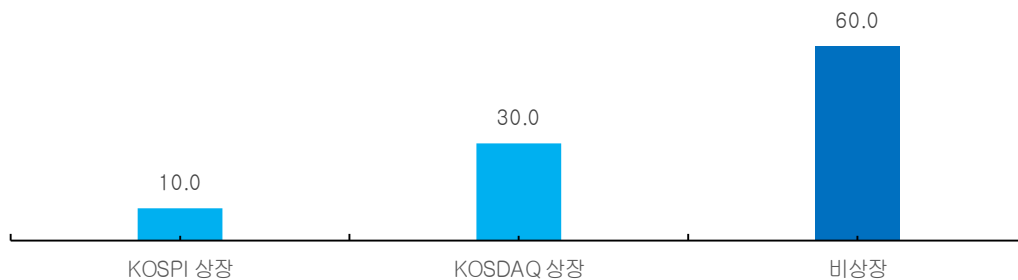
Q 귀사의 주식회사 상장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비상장 60.0% > KOSDAQ 상장 30.0%

- 주식회사 상장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비상장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KOSDAQ 상장 30.0%, KOSPI 상장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식회사 상장유형]

(Base: 전체, n: 10, 단위: %)



3. 산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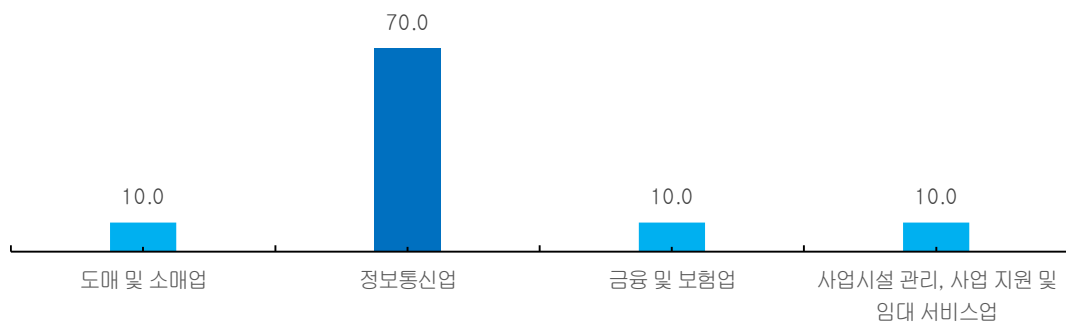
Q 귀사의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십니까?

정보통신업 70.0%

- 산업분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정보통신업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산업분류]

(Base: 전체, n: 10, 단위: %)



4. 기업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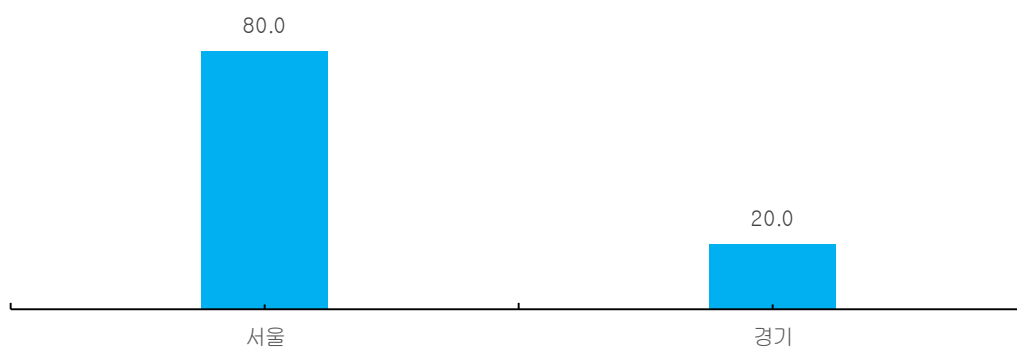
Q 귀사의 기업소재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 80.0% > 경기 20.0%

- 기업소재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서울이 80.0%, 경기가 20.0%로 나타남

[기업소재지]

(Base: 전체, n: 10, 단위: %)



5.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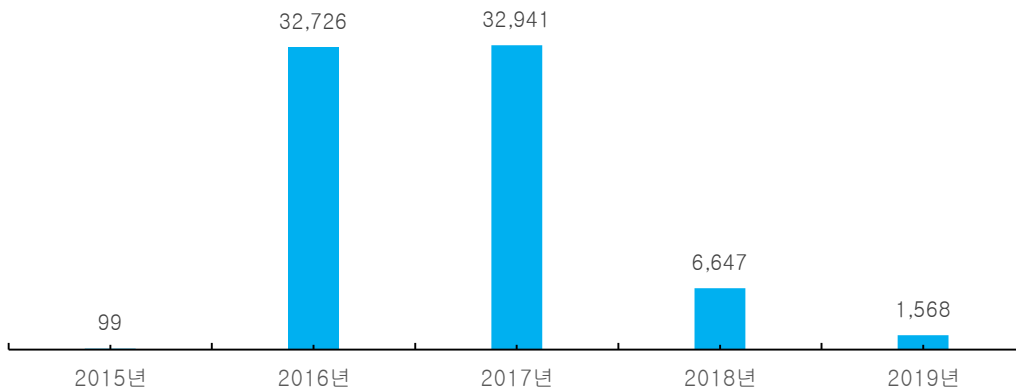
Q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귀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와 발급장치를 통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2017년 평균 32,941건, 2016년 평균 32,726건

-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의 평균 건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15년 평균 99건, 2016년 32,726건, 2017년 32,941건, 2018년 6,647건, 2019년 1,568건으로 나타남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Base: 전체, n: 10, 단위: 건)



(Base: 전체, n: 7,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99	32,726	32,941	6,647	1,568	
직업	(주)지에스리테일	100	103	104	106	110
	엔디에스	89	97	1,750	4,356	4,467
	(주)케이에스넷	-	130,601	129,803	22,032	-
	(주)KG이니시스	-	-	-	-	-
	(주)에스피씨네트웍스	-	-	-	-	-
	코레일네트웍스(주)	109	102	105	93	128
	KIS정보통신 주식회사	-	-	-	-	-

6. 5년간 종이 발급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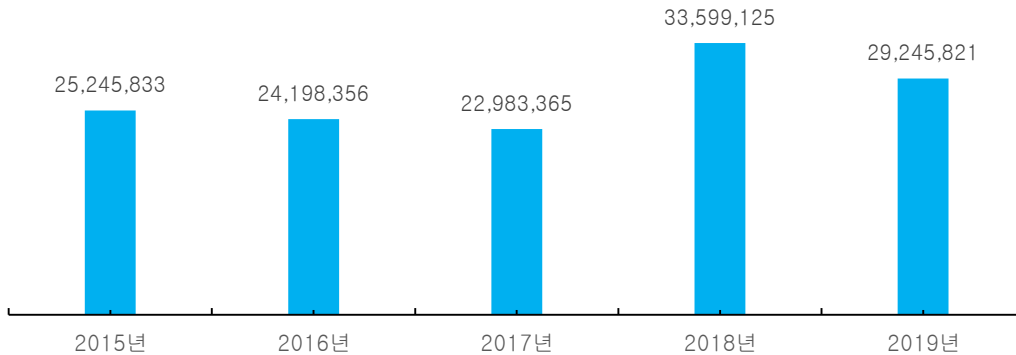
Q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귀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와 발급장치를 통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2018년 평균 33,599,125건, 2019년 평균 29,245,821건

- 5년간 종이 발급 현금영수증 결제 평균 건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15년 평균 25,245,833건, 2016년 24,198,356건, 2017년 22,983,365건, 2018년 33,599,125건, 2019년 29,245,821건으로 나타남

[5년간 종이 발급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Base: 전체, n: 10, 단위: 건)



(Base: 전체, n: 7,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25,245,833	24,198,356	22,983,365	33,599,125	29,245,821	
직업	(주)지에스리테일	2,700,000	2,500,000	2,500,000	2,800,000	2,600,000
	엔디에스	2,069,877	2,023,118	1,906,571	1,771,373	1,549,575
	(주)케이에스넷	-	-	-	97,113,834	102,995,100
	(주)KG이니시스	-	-	-	-	84,861
	(주)에스피씨네트웍스	33,640,144	31,739,422	29,764,551	28,911,771	31,174,303
	코레일네트웍스(주)	9,817	8,614	8,095	3,558	2
	KIS정보통신 주식회사	87,809,325	84,720,626	80,737,610	70,994,211	66,316,907

7. 5년간 종이 미발급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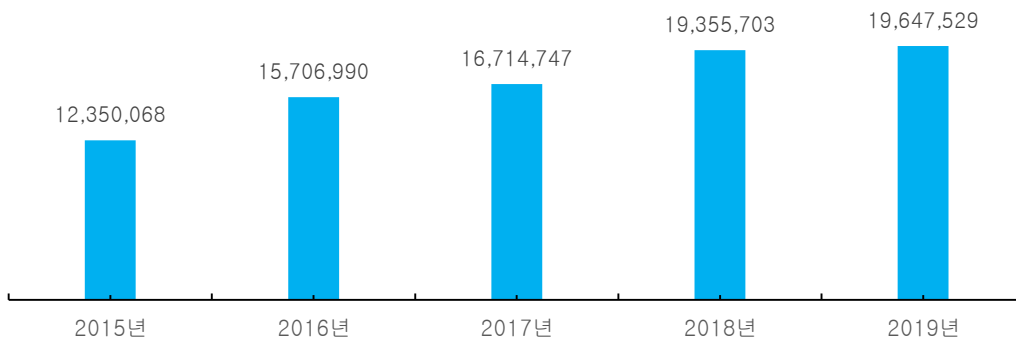
Q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귀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와 발급장치를 통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2019년 평균 19,647,529건, 2019년 평균 19,355,703건

- 5년간 종이 미발급 현금영수증 결제 평균 건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15년 평균 12,350,068건, 2016년 15,706,990건, 2017년 16,714,747건, 2018년 19,355,703건, 2019년 19,647,529건으로 나타남

[5년간 종이 미발급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Base: 전체, n: 10, 단위: 건)



(Base: 전체, n: 7,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2,350,068	15,706,990	16,714,747	19,355,703	19,647,529	
직업	(주)지에스리테일	6,700,000	6,400,000	6,400,000	6,500,000	6,000,000
	엔디에스	2,682,722	2,745,777	5,273,611	11,320,328	12,411,394
	(주)케이에스넷	-	-	-	27,947,458	32,294,797
	(주)KG이니시스	20,230,442	20,493,404	25,308,632	19,504,372	19,310,499
	(주)에스피씨네트웍스	2,101,119	3,877,460	5,271,395	4,142,050	4,073,125
	코레일네트웍스(주)	1,522,901	1,638,914	964,573	452,489	189,309
	KIS정보통신 주식회사	40,863,221	59,086,385	57,070,269	65,623,223	63,253,581

8.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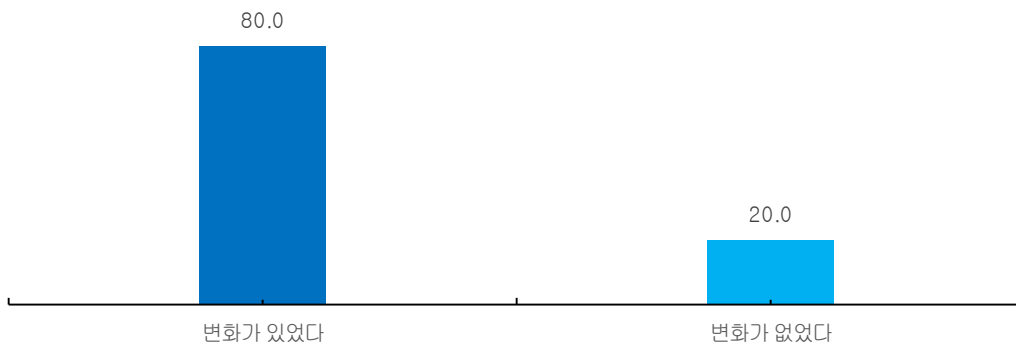
Q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귀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있음 80.0% > 변화 없음 20.0%

-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유무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변화가 있었다가 80.0%로 변화가 없었다 20.0%보다 높게 나타남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유무]

(Base: 전체, n: 10, 단위: %)



9. 세액공제 규모 변화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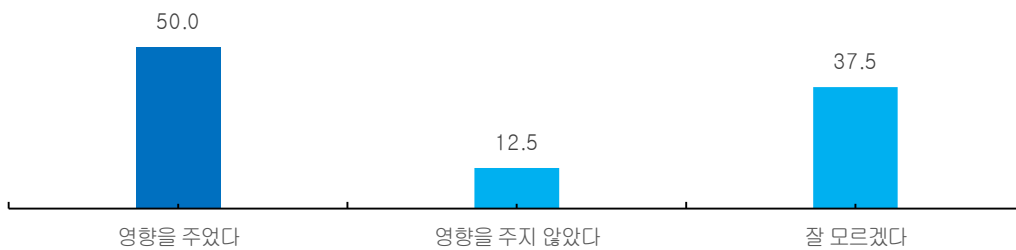
Q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의 변화에 세액공제 규모의 변화가 영향을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세액공제 규모 변화 영향을 주었다 50.0% > 경기 12.5%

- 세액공제 규모의 변화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영향을 주었다가 50.0%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12.5%보다 높게 나타났고, 잘모르겠다는 의견은 37.5%로 나타남

[세액공제 규모 변화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변화 여부]

(Base: 전체, n: 10, 단위: %)



10. 지난 3년간 전체 매출 중 현금영수증 사업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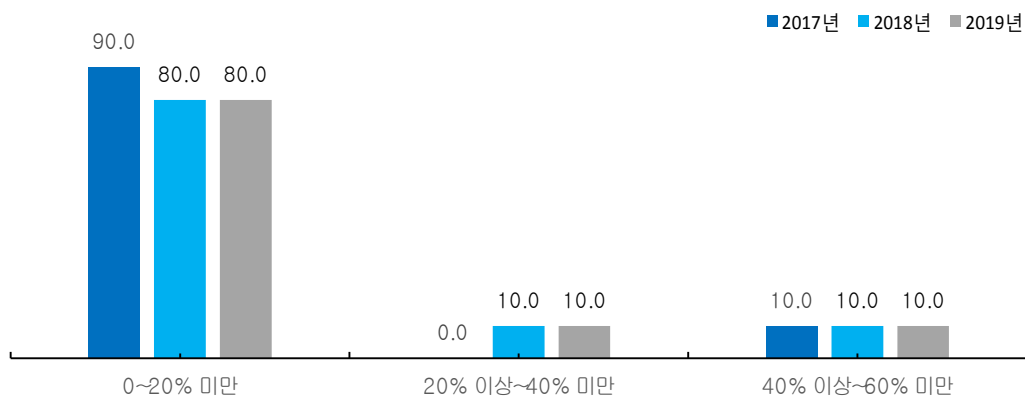
Q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각 연도 전체 매출 중 현금영수증 사업 관련 매출 비중은 얼마입니까?

0~20% 미만 2017년 90.0%, 2018년 80.0%, 2019년 80.0%

- 지난 3년간 전체 매출 중 현금영수증 사업 매출 비중에 대해 알아본 결과, 0~2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90.0%, 2018년은 80.0%, 2019년 80.0%로 나타남

[지난 3년간 전체 매출 중 현금영수증 사업 매출 비중]

(Base: 전체, n: 10, 단위: %)



11.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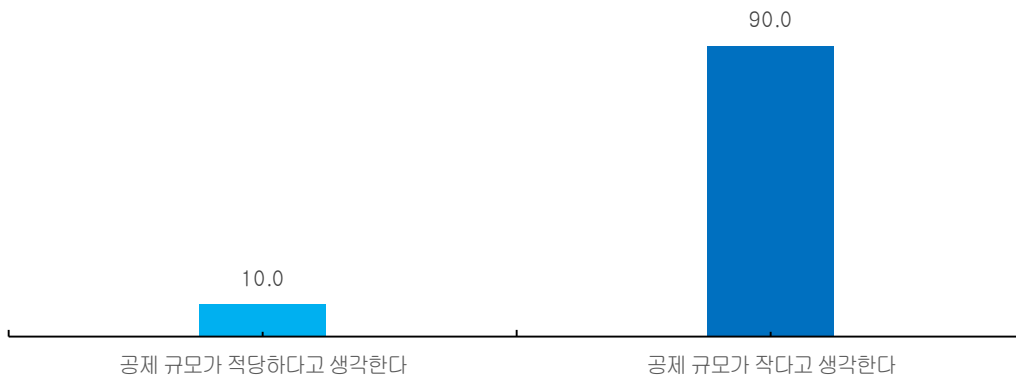
Q 현재 공제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액공제 규모가 작다 90.0% > 규모가 적당하다 10.0%

- 세액공제 규모에 대해 알아본 결과, 공제 규모가 작다고 생각한다가 90.0%로 공제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가 10.0%보다 높게 나타남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n: 10, 단위: %)



12. 세액공제 규모 축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영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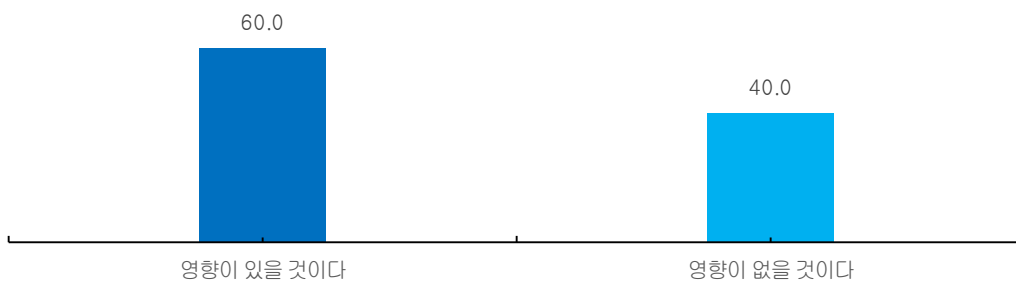
Q 만약 현행보다 공제 규모가 작아진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액공제 규모 축소시 영향이 있을 것 60.0% >
영향 없을 것 40.0%

- 세액공제 규모 축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 영향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영향이 있을 것이다가 60.0%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40.0%보다 높게 나타남

[세액공제 규모 축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영향 여부]

(Base: 전체, n: 10, 단위: %)



13. 현금영수증 사업 영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적절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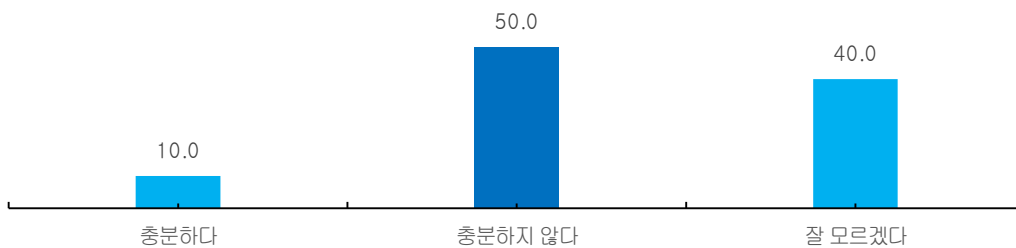
Q 현재 세액 공제 규모는 현금영수증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액공제 규모 충분하지 않다 50.0% > 충분하다 10.0%

- 현금영수증 사업 영위에 있어서 세액공제의 비용을 보전할 만큼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충분하지 않다가 50.0%로 충분하다 10.0%보다 높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40.0%로 나타남

[현금영수증 사업 영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적절성 여부]

(Base: 전체, n: 10, 단위: %)



14. 종이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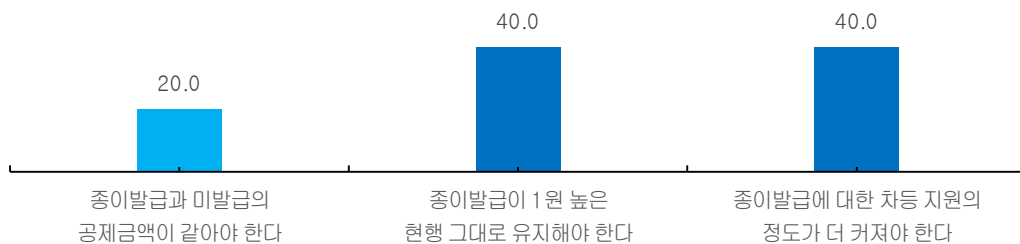
Q 종이발급과 미발급의 차등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이발급이 1원 높은 현행대로 40.0% ≒ 차등지원 더 커져야 40.0%

- 종이발급과 미발급의 차등 지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종이발급이 1원 높은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40.0%, 종이발급에 대한 차등 지원의 정도가 더 커져야 한다 40.0%로 종이발급에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종이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의견]

(Base: 전체, n: 10, 단위: %)



15.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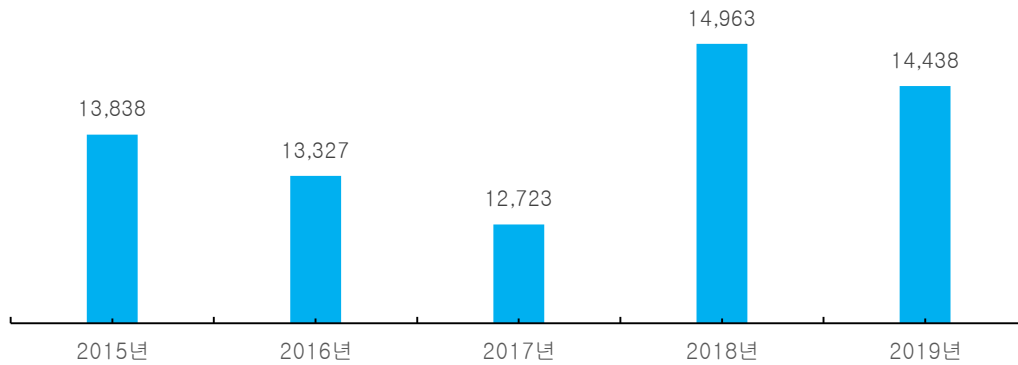
Q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귀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입해 주십시오.

2018년 평균 14,963백만원, 2019년 평균 14,438백만원

-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규모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15년 평균 13,838백만원, 2016년 13,327백만원, 2017년 12,723백만원, 2018년 14,963백만원, 2019년 14,438백만원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규모]

(Base: 전체, n: 8, 단위: 백만원)



(Base: 전체, n: 8,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3,838	13,327	12,723	14,963	14,438	
직업	(주)지에스리테일	18,000	18,000	18,000	23,000	26,000
	엔디에스	3,516	3,343	3,306	4,435	5,244
	(주)케이에스넷	320	6,819	7,739	11,393	12,414
	(주)KG이니시스	25,718	27,192	38,152	42,903	41,760
	(주)에스피씨네트웍스	773	456	862	1,196	1,658
	에스케이플래닛(주)	58,159	46,282	32,060	27,574	17,313
	코레일네트웍스(주)	5,459	5,479	601	6,564	7,066
	KIS정보통신 주식회사	-1,241	-955	1,067	2,642	4,046

16.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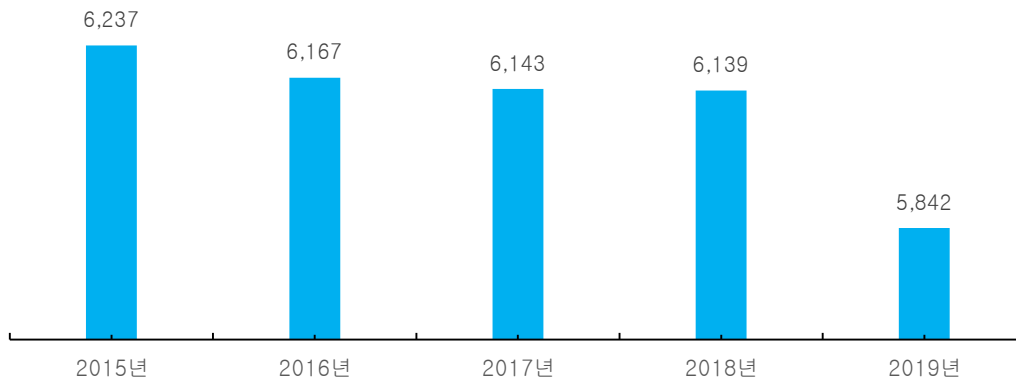
Q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귀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입해 주십시오.

2015년 평균 6,237백만원, 2016년 평균 6,167백만원

- 5년간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15년 평균 6,237백만원, 2016년 6,167백만원, 2017년 6,143백만원, 2018년 6,139백만원, 2019년 5,842백만원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

(Base: 전체, n: 8, 단위: 백만원)



(Base: 전체, n: 8,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6,237	6,167	6,143	6,139	5,842	
직업	(주)지에스리테일	17,000	17,000	17,000	20,000	23,000
	엔디에스	74	74	104	172	155
	(주)케이에스넷	20,936	15,271	13,305	11,825	9,686
	(주)KGI니시스	267	271	289	224	143
	(주)에스피씨네트웍스	648	636	626	437	376
	에스케이플래닛(주)	646	613	571	429	344
	코레일네트웍스(주)	20	22	11	5	2
	KIS정보통신 주식회사	10,308	15,446	17,236	16,022	13,026

17. 지난 5년간 본 제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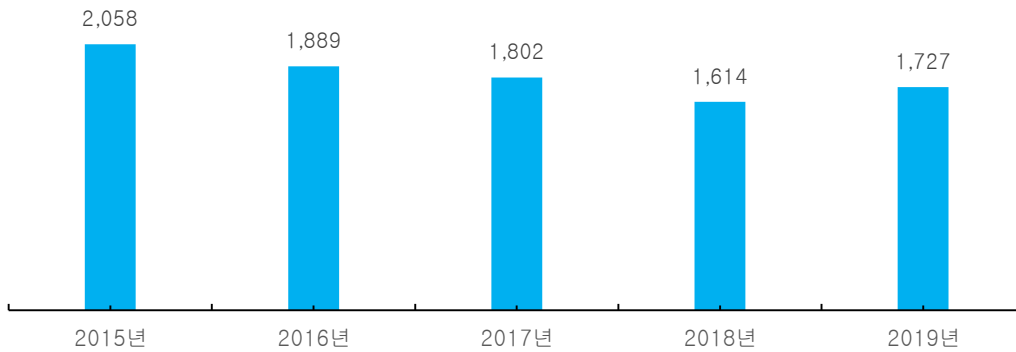
Q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귀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입해 주십시오.

2015년 평균 2,058백만원, 2016년 평균 1,889백만원

- 5년간 본 제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총 공제세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15년 평균 2,058백만원, 2016년 1,889백만원, 2017년 1,802백만원, 2018년 1,614백만원, 2019년 1,727백만원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 본 제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Base: 전체, n: 8, 단위: 백만원)



(Base: 전체, n: 8,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2,058	1,889	1,802	1,614	1,727	
직업	(주)지에스리테일	8,000	7,000	8,000	8,000	10,000
	앤디에스	74	74	104	172	155
	(주)케이에스넷	4,632	4,127	2,703	1,887	1,412
	(주)KG이니시스	267	275	289	224	173
	(주)에스피씨네트웍스	646	636	607	437	375
	에스케이플래닛(주)	646	613	571	429	344
	코레일네트웍스(주)	20	22	1	5	2
	KIS정보통신 주식회사	2,178	2,364	2,144	1,759	1,357

18. 재무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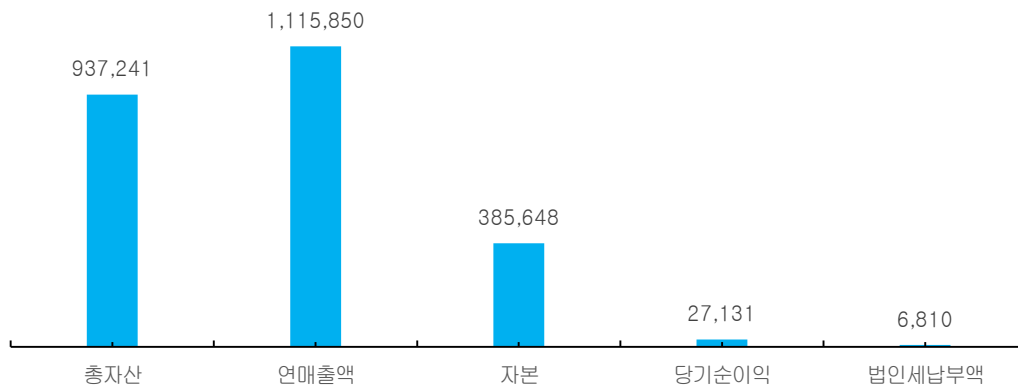
Q 귀사의 재무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총자산 937,241백만원, 연매출액 1,115,850백만원,
자본 385,648백만원, 당기순이익 27,131백만원, 법인세납부액 6,810백만원**

- 재무정보의 평균에 대해 알아본 결과, 평균 총자산은 937,241백만원, 연매출액 1,115,850백만원, 자본 385,648백만원, 당기순이익 27,131백만원, 법인세납부액 6,810백만원으로 나타남

[재무정보]

(Base: 전체, n: 10, 단위: 백만원)



(Base: 전체, n: 10, 단위: 백만원)

구분	총자산	연매출액	자본	당기순이익	법인세 납부액	
전체	937,241	1,115,850	385,648	27,131	6,810	
직업	(주)지에스리테일	7,054,848	9,006,929	2,550,841	143,624	38,339
	엔디에스	74,904	114,631	37,357	6,706	1,897
	(주)케이에스넷	160,329	156,656	100,277	18,955	2,345
	(주)KG이니시스	551,916	481,270	201,800	40,602	6,326
	(주)에스피씨네트웍스	73,112	75,749	54,925	1,199	618
	에스케이플래닛(주)	595,837	275,543	317,400	1,213	0
	코레일네트웍스(주)	38,187	96,652	17,195	2,454	171
	한국정보통신(주)	353,432	494,677	202,334	22,725	9,409
	KIS정보통신 주식회사	184,444	238,718	151,782	9,899	2,514
	나이스정보통신	285,398	217,676	222,565	23,928	6,479